

# 시보

선 람	기관의 장

all ways INCHEON

제1720호

2019년 1월 14일 월요일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 고 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호(효성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3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5호(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 1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9호(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30
-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11호(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 4-2단계) 사업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 31

## 공 고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8호(도시계획시설(도로 : 중로1류327호선) 공사완료공고) ..... 3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호(건축허가 제한 공고·열람) ..... 3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7호(도시계획시설(도로명 : 광로1류1호선) 공사완료공고) ..... 35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8호(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 36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1호(2019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기업(공산품) 모집 공고) 3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3호(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 40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7호(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 4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8호(201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 42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0호(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44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3호(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 47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4호(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53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5호(2019년 『시민 공원 사진가』모집 공고) ..... 71
-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60호(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수정) 공고) ..... 79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16호(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 85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17호(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안내 및 징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87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7호(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88

##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 제466호(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정) ..... 96

회 람								
--------	--	--	--	--	--	--	--	--



###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1호(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98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호(인천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01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호(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3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4호(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0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호(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17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호(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입법예고) ..... 12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호(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3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5호(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 ..... 143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6호(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입법예고) 174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7호(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85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5호(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 훈령(안)  
입법예고) ..... 198
-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8호(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전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 207

### 기 타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9-1호(공고문) ..... 264
-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9-2호(공고문) ..... 265
- 인천중산초등학교공고 제2019-1호(관인등록 공고) ..... 266
- 인천중산초등학교공고 제2019-2호(관인등록 공고) ..... 267
- 인천교통공사공고 제2019-003호(역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 ..... 268

## 고 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4호

## 효성1 재개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호(2009.1.12.), 인천광역시 계양구고시 제2010-177호(2010.6.21.), 인천광역시 계양구고시 제2015-51호(2015.7.24.)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계양구 효성동 254-14번지 일원의 효성1 재개발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지정 결정(변경)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 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이해 관계인은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032-440-3472) 및 계양구 건축과(032-450-6794)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 . 1 . 14 .

### 인 천 광 역 시 장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

#####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 효성1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 기정: 효성1 주택재개발정비사업
- 변경: 효성1 재개발정비사업

#####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 정비구역 결정(변경)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효성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계양구 효성동 254-14번지 일원	73,30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부 개정(시행: 2018.2.09.)에 따른 사업의 구분 및 구역 명칭 변경
변경	재개발 정비사업	효성1 재개발 정비구역	계양구 효성동 254-14번지 일원	73,301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지구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계		73,301	-	73,301	100.0	
주거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73,301	-	73,301	100.0	

나. 토지이용계획(변경)

구 분	토지이용		면 적(㎡)	비율(%)	비 고
	기정	변경			
합계			73,301	100.0	
획지	공동주택	공동주택	51,457	70.2	
도시계획 시설	소계		21,844	29.8	
	도로	도로	6,437	8.8	
	공원	공원	6,273	8.6	어린이공원 2개소
	완충녹지	완충녹지	4,564	6.2	
	주차장	주차장	448	0.6	
	도서관	문화시설	2,257	3.1	대지교환 및 무상귀속
	문화시설	청소년수련시설	1,865	2.5	부지 무상귀속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1) 교통시설

① 도로(변경없음)

○ 도로 결정조서

구 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51	15~20	집산도로	3,363 [305]	대2-36	중1-37 (계산택지)	일반 도로	-	건고546호 (71.09.13)	[ ] 안은 구역내
기정	중로	1	373	20	국지도로	240	소1-9	중2-51	일반 도로	-	81.09.08	
기정	중로	2	636	15~16	국지도로	225	중1-30	중2-51	일반 도로	-	81.09.08	
기정	중로	2	637	16	국지도로	16	중1-373	효성동 665-48	일반 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기정	소로	3	65	6	특수도로	83	소1-9	효성동 72-18	보행자 전용도로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주) 구역 외 효성동 74-5, 72-16번지를 도로조성 후 기부채납, 도로면적 : 6,437㎡ 무상귀속

② 주차장(변경없음)

○ 주차장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효성동 665-48일대	448	-	448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무상귀속

2) 공간시설

① 공원(변경없음)

○ 공원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공원	어린이공원	효성동 72-9일대	4,741	-	4,741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무상귀속
기정	②	공원	어린이공원	효성동 268-9일대	1,532	-	1,532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무상귀속

② 녹지(변경없음)

○ 녹지 결정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녹지	완충녹지	봉오대로변	4,564	-	4,564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무상귀속

3) 공공·문화체육시설

① 도서관(변경)

○ 도서관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 면 표 시 번 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도서관	효성동 665-11일대	2,257	감) 2,257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대지교환 및 무상귀속

○ 도서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도서관	○도서관 폐지	○도시·군계획시설(도서관)이 폐지되어 문화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문화시설로 변경하기 위해 폐지하고자 함

② 문화시설(변경)

○ 문화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문화시설	효성동 665-11일대	-	증) 2,257	2,257	-	대지교환 및 무상귀속

○ 문화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문화시설	○문화시설 신설	○도시·군계획시설(도서관)이 폐지되어 문화시설에 편입됨에 따라 기존 도서관을 문화시설로 변경하고자 신설함

③ 사회복지시설(변경)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폐지	-	사회복지시설	효성동 266-9일대	1,865	감) 1,865	-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호 (2009.1.12)	부지만 무상귀속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사회복지 시설	○사회복지시설 폐지	○대상지 내 시급히 필요한 청소년수련시설 확보를 위해 사회복지시설을 폐지하고자 함

④ 청소년수련시설(변경)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신설	①	청소년 수련시설	청소년 문화의집	효성동 266-9일대	-	증) 1,865	1,865	-	부지 무상귀속

○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청소년 수련시설	○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신설	○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문화·예술 중심의 수련시설이 계양구에 부족하여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을 신설하고자 함

라.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신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참조

마.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결 정 구분	구 역 구 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합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효성1 재개발정비구역	73,301	효성동 254-14일원	89	1	-	88	-	

※ 존치건축물 : 효성도서관(준공 : 2008년07월14일)

바. 세입자 주거대책(신설)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여 세입자의 입주 유도
- 관련법규에 따라 주거이전비,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하며, 사업시행계획서 작성 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1항제4호 규정에 따라 세입자의 주거 및 이주대책 수립

사.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기정)

시설구분	법정기준			면 적(㎡)		비 고	
				기 준	계 획		
관리사무소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제28조	87.40㎡ 이상	190.16㎡	-	
근린생활시설		- 세대당 6㎡이하 단, 500㎡미만의 경우 500㎡가능	제50조	9,580.0㎡ 이하	2,704.15㎡	-	
주민공 동 시 설		어린이놀이터	-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제55조의2	1,794.0㎡ 이상	1,850.00㎡	-
		경로당			184.4㎡ 이상	221.07㎡	-
		보육시설			171.6㎡ 이상	532.94㎡	-
		문고			33.0㎡ 이상	170.70㎡	-
		주민공동시설			179.4㎡ 이상	1,683.06㎡	-
휴게소	3.19개소 이상	4개소	-				
주민운동시설	940.5㎡ 이상	1,012.00㎡	-				

○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시설구분	법정기준			면 적(㎡)		비 고	
				기 준	계 획		
관리사무소	주택 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름	- 50세대 이상 - 10㎡ + (세대수 - 50) × 0.05㎡ 이상	제28조	89.80㎡ 이상	150.82㎡	-	
근린생활시설		-	제50조	-	1,942.68㎡	-	
주민공 동 시 설		어린이놀이터	- 1,000세대 이상 500㎡ + (세대수 × 2㎡ 이상) - 500세대 이상 : 경로당, 어린이놀이터, 어린이집, 주민운동시설, 작은도서관 포함	제55조의2	3,792.0㎡ 이상	1,456.02㎡	-
		경로당			186.10㎡	-	
		어린이집			531.78㎡	-	
		작은도서관			183.06㎡	-	
		주민공동시설			1,189.82㎡	-	
주민휴게시설	4개소	-					
주민운동시설	726.67㎡	-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등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기정	효성1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73,301	획지①	51,4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4% 이하	274.9% 이하	97m 이하	-			
			획지⑤	448	주차장	50% 이하	250% 이하	-	-			
			획지⑥	2,257	도서관	50% 이하	250% 이하	-	-			
			획지⑦	1,865	사회복지시설	50% 이하	250% 이하	-	-			
			지정용도	획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li> </ul>							
				획지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li> </ul>							
				획지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ul>							
불허용도	획지①,⑤,⑥,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li> <li>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li> </ul>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계획			구분	위 치		계획목표		비 고				
			건축선	획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1-373, 중2-51 변 : 폭 10m지정</li> <li>중2-636 변 : 폭 6m지정</li> <li>인접대지경계선 : 폭 3m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li> </ul>		공동주택용지			
				획지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1-373 변 : 폭 3m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li> </ul>		도서관			
				획지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중1-373 변 : 폭 3m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li> </ul>		사회복지시설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세대수의 5% 이상</li> <li>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을 주거전용면적 40㎡ 이하 규모로 건설</li> </ul>									
기준완화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률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가능용적률: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87.6% + 지하주차장 10% = 307.6%</li> <li>- 계획용적률 : 274.90% 이하</li> </ul> </li> </ul>									

○ 변경

결정 구분	지구 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주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변경	효성1 재개발 정비구역	73,301	획지①	51,457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6.4% 이하	274.9% 이하	97m 이하	-
			획지⑤	448	주차장	50% 이하	250% 이하	-	-
			획지⑥	2,257	문화시설	50% 이하	250% 이하	30m 이하	-
			획지⑦	1,865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50% 이하	250% 이하	30m 이하	-
			지정용도	획지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li> </ul>				
			지정용도	획지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0호에 의한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주차전용건축물</li> </ul>				
지정용도	획지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에 의한 교육연구시설 중 도서관</li> </ul>							
지정용도	획지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에 의한 수련시설 중 청소년문화의집</li> </ul>							
지정용도	불허용도	획지①,⑤, ⑥,⑦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정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택건설 85㎡이하 : 전체세대수의 80% 이상</li> <li>주택건설 85㎡초과 : 전체세대수의 20% 미만</li> </ul>						
기준완화적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률 인센티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개발가능용적률: 기준용적률 210%+공공시설부지제공 87.6% + 지하주차장 10% = 307.6%</li> <li>- 계획용적률 : 274.90% 이하</li> </ul> </li> </ul>						

자. 임대주택의 건설에 관한 계획(신설)

구분	규모	세대수	비율 (%)	법적 기준
총 세대수		1,646	100.0	
임대주택	전용면적 36.96㎡	83	5.0	○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

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8조에 따른 정비구역의 분할에 관한 계획(해당사항 없음)

## 카.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 1) 경관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내용	비 고
경관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스카이라인은 주변지역과 부조화되지 않도록 계획하며, 조망 확보 및 시각통로 확보를 위해 충분한 개방공간을 설치하고 주동은 탐상형, 관상형 및 혼합형으로 조화롭게 계획</li> <li>단지내 공동이용시설(경로당,보육시설 등)을 단지중심부에 배치하여 커뮤니티 공간을 형성하고, 보행동선을 통하여 시설간에 유기적인 연결이 되도록 계획.</li> </ul>	

### 2) 환경보전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토양 및 지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양포장 최소화방안</li> <li>- 포장이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투수성 포장재료를 사용</li> <li>- 조경지역의 점진적인 확보를 통해 녹지공간을 최대한 조성</li> </ul>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li> <li>- 공사장내 살수, 세륜·세차시설 설치</li> <li>- 가설방진망설치</li> <li>운영시</li> <li>- 대기질의 쾌적한 상태를 유지하기 위하여 녹지지역을 확보토록 계획</li> </ul>	
소 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환경친화적 방음림 및 녹지대 조성.</li> <li>소음환경기준을 만족하기 위하여 건축물 전층에 방음창 설치.</li> </ul>	

### 3)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수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토사유출 방지를 위한 침사지 설치</li> <li>- 오수·우수 분류식으로 충분한 용량 산정으로 계획</li> </ul>	
화 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해시 전 세대에 소방차량 접근이 가능하도록 내부동선 체계 구축</li> <li>- 건축법의 방화에 관한 규정 및 관련법규 준수</li> </ul>	
교통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진출입시 가감속차선설치, 안전시설 확보로 교통사고 예방</li> <li>- 보차분리를 통한 보행자 안전 도모</li> <li>- 지하 주차장램프 끝단부에 경고등 설치</li> <li>- 시거불량지점에 반사경 설치</li> <li>- 과속방지턱 및 험프식 횡단보도 설치</li> </ul>	

### 타.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공사시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공사장 소음관리요령”(2003.9, 환경부)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li> <li>공사차량의 주거지역 통과시 적정속도(20km/h이하) 준수 및 불법 주정차 금지</li> <li>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li> <li>가설방음판넬 및 가설관넬 설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설방음판넬 : 높이 5.0m, 길이 260~320m</li> <li>- 가설관넬 : 높이 3.0m, 길이 720m</li> </ul> </li> </ul>	
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 인근 학교는 남동측에 위치하고 있어 일조에 대한 영향은 없는것으로 예측됨</li> </ul>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남동측 어린이공원과 연계된 단지내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li> <li>통학로의 안전확보를 위하여 어린이 보호구역설정 및 속도제한 표시판, 아스팔트적색포장, 안전펜스등을 설치.</li> </ul>	

### 파. 정비사업의 예정시기(변경없음)

- 정비구역지정 고시일로부터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 하. 정비사업의 시행방법(변경 없음)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의한 재개발사업으로 법 제74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함
------------	--

### 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계획(신설)

- “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변경),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카. 도시경관과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2서. 기타 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참조

### 너.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위 치		계획목표	비 고	
				기정	변경
건축선	획지 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1-373, 중2-51 번 : 폭 10m지정</li> <li>• 중2-636 번 : 폭 6m지정</li> <li>• 인접대지경계선 : 폭 3m지정</li> </ul>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공동주택용지	공동주택용지
	획지 ⑥	• 중1-373 번 : 폭 3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도서관	문화시설
	획지 ⑦	• 중1-373 번 : 폭 3m지정	•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더.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 ○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세대수	비고
효성1구역	재개발	73,301.0	16.4 이하	274.9 이하	97m 이하	1,646	

#### ○ 주변지역 주택수급계획

구역명	개발방식	면적(㎡)	건폐율(%)	용적률(%)	높이	계획세대수	진행현황
계양1 재개발구역	재개발	122,432.5	15.98	274.21	99.8m	2,371	관리처분계획인가
작전현대 아파트 재개발구역	재개발	64,004.9	13.87	274.87	110.1m	1,370	사업시행인가
작전태림연립 재건축구역	재건축	10,085.1	24.45	237.29	65m 이하	280	착공
계산한우리 아파트 재건축구역	재건축	14,042.7	24.96	222.87	39.1m	369	착공
서운 재개발구역	재개발	88,810	16.36	261.50	89.85m	1,669	관리처분계획인가

### 리.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분	내용
교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감속 차로확보, 지상부 차없는 공간 등을 조성하여 교통사고발생 최소화</li> <li>소방도로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li> </ul>
화재 및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시행시 건축법 관련법규정을 준수</li> </ul>
홍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단지내 신설되는 광장, 도로, 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 등에 대해서는 우수가 침투 가능한 투수성 포장재를 이용</li> </ul>

### 머.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구분	가구번호	면적(m <sup>2</sup> )	획지			비고	
			획지번호	위치	면적(m <sup>2</sup> )	기정	변경
획지①	-	66,864	1	효성동 254-14 일원	51,457	공동주택	공동주택
획지②	-		2	효성동 72-9 일원	4,741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획지③	-		3	효성동 268-9 일원	1,532	어린이공원	어린이공원
획지④	-		4	봉오대로변	4,564	완충녹지	완충녹지
획지⑤	-		5	효성동 665-48 일원	448	주차장	주차장
획지⑥	-		6	효성동 665-11 일원	2,257	도서관	문화시설
획지⑦	-		7	효성동 266-9 일원	1,865	사회복지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청소년문화의집)

※ 도로는 별도로 가구 또는 획지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함

### 버. 기존 수목의 보전·이식 등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녹지보전 및 녹화추진에 관한 조례 제30조에 따라 수립한 나무은행 운영계획(신설)

연번	수종	직경	본수	활용계획	비고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기존 수목현황이 미미한 상황으로 향후 활용 가능한 수목은 이식하고 조경계획에 따라 식재하겠음</li> </ul>	-

## 서. 기타사항에 관한 계획(변경)

### ○ 기정

- 대상지내 도서관 및 사회복지시설 변 동측도로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	• 대상구역 도서관 및 사회복지 시설 변 동측도로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출입구 통합에 따른 차량출입불허 구간 지정	-

- ※ 효성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서부교육청의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분담
- ※ 사업지와 연계하여 대신아파트앞 미확장구간인 약 1m의 보행통행 공간에 보도조성
- ※ 획일적인 주동의 형태 및 건물배치 지양에 관하여는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

### ○ 변경

- 대상지내 문화시설 및 청소년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변 동측도로에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도면번호	위치	계 획 내 용	비고
-	• 대상구역 문화시설 및 청소년 수련시설(청소년문화의집) 변 동측도로	• 차량출입불허구간 지정 - 출입구 통합에 따른 차량출입불허 구간 지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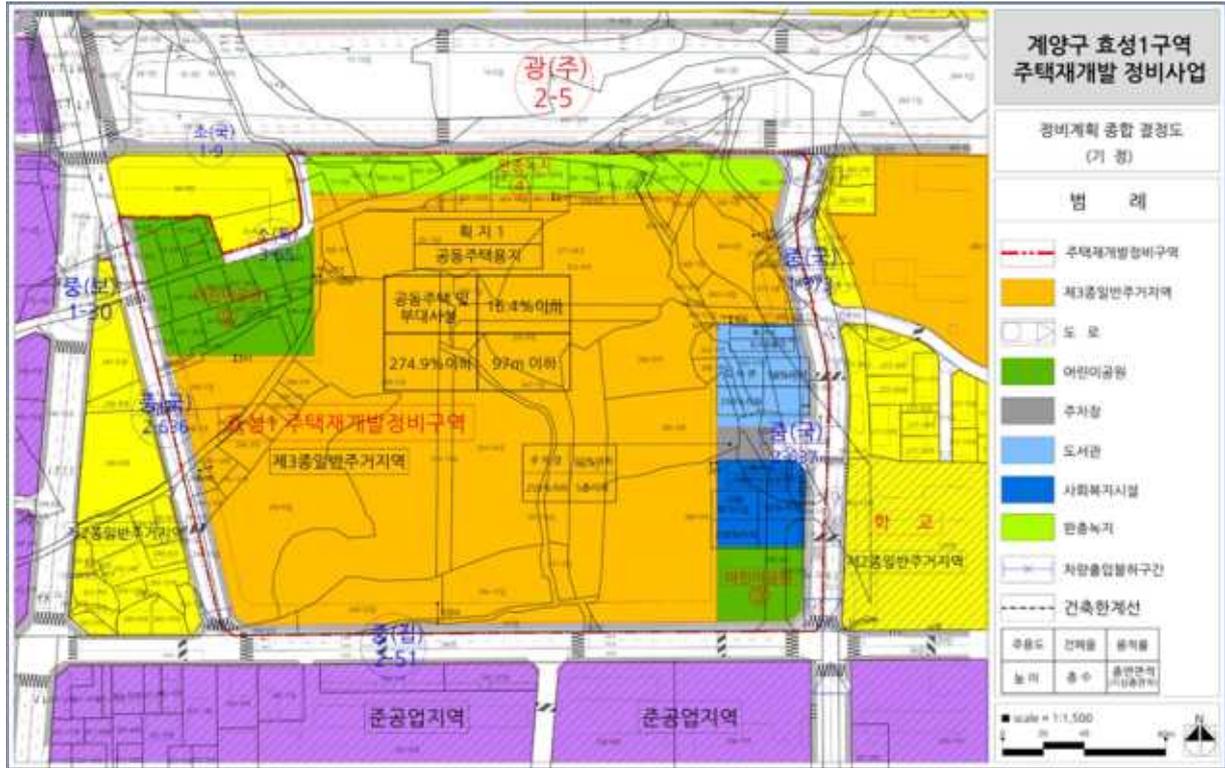
- ※ 효성1주택재개발정비사업 인근지역의 개발로 인한 학생수 증가에 따른 학교 신·증설이 필요한 경우, 서부교육청의 학교 신·증설계획에 맞춰 학교용지 확보 및 시설설치 등에 필요한 제반비용을 서부교육청과 협의하여 분담
- ※ 사업지와 연계하여 대신아파트앞 미확장구간인 약 1m의 보행통행 공간에 보도조성
- ※ 획일적인 주동의 형태 및 건물배치 지양에 관하여는 추후 사업시행인가를 위한 건축위원회 심의시 반영

## 어. 관련서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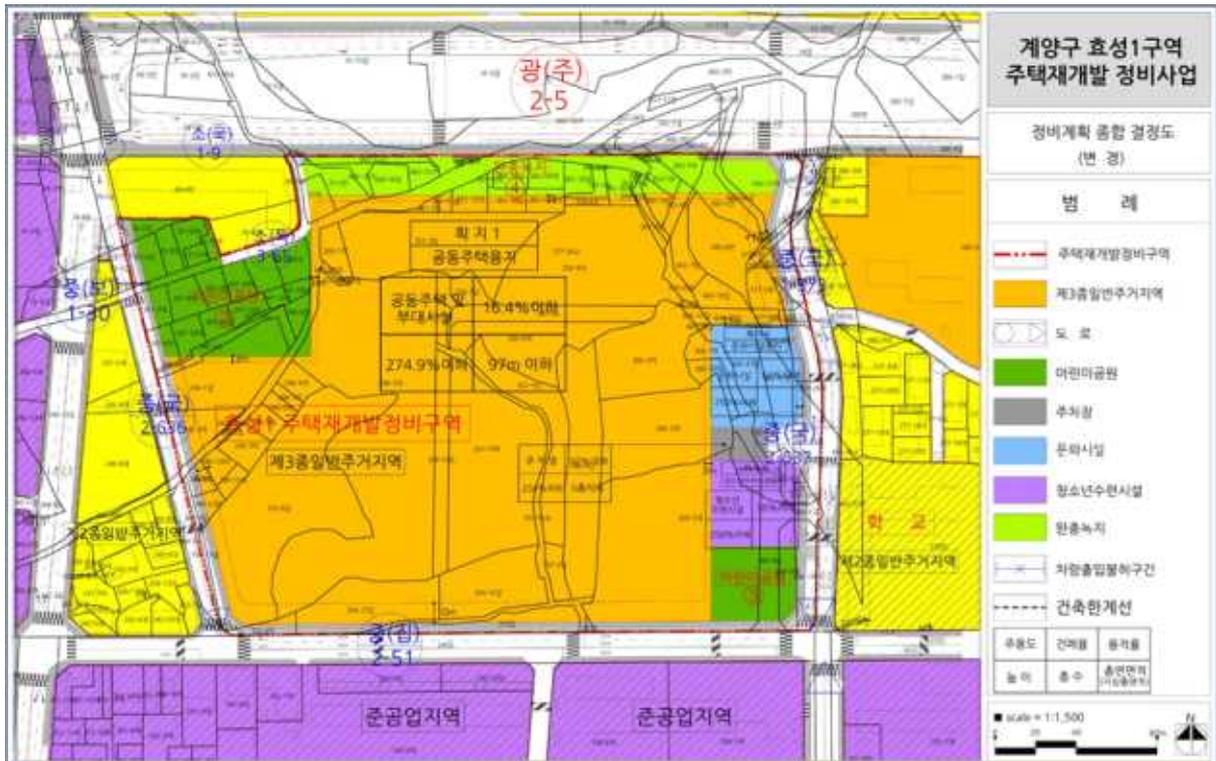
-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계양구청 건축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끝.

붙임 : 정비계획결정도

○ 기정



○ 변경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5호

## 십정3 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변경)과 지형도면 고시

인천광역시고시 제2008-219호(2008. 10. 13.),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129호(2009. 4. 20.), 인천광역시고시 제2009-243호(2009. 8. 3.), 부평구 고시 제2013-40호(2013. 8. 26.)로 결정(변경)한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 일원 십정3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라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을 변경하고, 같은 법 제16조제2항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14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

1. 정비사업의 명칭(변경 없음): 십정3 재개발 정비사업

2. 정비구역 및 면적(변경 없음)

○ 정비구역 결정 조서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m <sup>2</sup> )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기정	십정3 재개발 정비구역	인천광역시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	34,552.1	-	34,552.1	-

3. 정비계획(변경)

가. 용도지역 변경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 용도지역 결정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주거 지역	제3종일반주거지역	34,552.1	-	34,552.1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교통시설

가) 도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2	1	15	국지 도로	156	소1-1	중2-246	일반 도로		인고2008-219 (2008.10.13)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중로	2	2	15~ 18	국지 도로	415	소2-14	소1-1	일반 도로	-	인고2008-219 (2008.10.13)	조성 후 무상귀속
변경	중로	3	가	12	국지 도로	415	소2-14	소1-1	일반 도로	-	인고2008-219 (2008.10.13)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중로	2	3	15	국지 도로	136	이규보로 42 [십정동 427-3]	중2-2	일반 도로	-	인고2008-219 (2008.10.13)	조성 후 무상귀속
변경	소로	1	가	10	국지 도로	133	이규보로 42 [십정동 432-3]	소2-가	일반 도로	-	인고2008-219 (2008.10.13)	조성 후 무상귀속
기정	소로	3	6	6	국지 도로	280 (40)	소2-7	중2-1	일반 도로	-	-	조성 후 무상귀속

※ ( )안은 구역 내 결정사항임

○ 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중로 2-2	중로 3-가	• 도로폭원 축소 - B=15~18m → 12m	• 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시설 재정비 • 주변 현황도로(8~10m)와 연계성 고려
중로 2-3	소로 1-가	• 도로폭원 축소 및 노선연장 - B=15m → 10m - L=136m → 133m	

**나) 주차장**

○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①	주차장	노외주차장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90번지 일원	309.6	감) 309.6	-	인고2008-219 (2008.10.13)	

○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사유
①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 폐지</li> <li>면적: 309.6㎡→0㎡ 감)309.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광역시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2013.5.27.)에 따른 주차장 폐지</li> </ul>

**2) 공간시설**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 명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 후		
폐지	①	공원	소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7-2번지 일원	2,674.2	감)2,674.2	-	인고2008-219 (2008.10.13)	
폐지	②	공원	소공원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436-2번지 일원	840.3	감) 840.3	-	인고2008-219 (2008.10.13)	

○ 공원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번호	공원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지</li> <li>면적 : 2,674.2㎡→0㎡ 감)2,674.2㎡</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대상지 인근 공원 신설에 따라 설치 필요성 감소</li> <li>원활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기반 시설 재정비</li> </ul>
②	소공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폐지</li> <li>면적 : 840.3㎡→0㎡ 감)840.3㎡</li> </ul>	

3) 공공문화체육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의 세분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①	공공문화·사회복지 시설	인천광역시 부평구 십정동 390-1번지 일원	1,193.4	증)456.6	1,650.0	인고2008-219 (2008.10.13)	건축물 기부채납 (연면적600㎡)
변경		사회복지 시설						

○ 사회복지시설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①	사회복지 시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변경</li> <li>•시설명 변경 : 공공문화·사회복지시설 → 사회복지시설</li> <li>•면적:1,193.4㎡→1,650.0㎡ 증)456.6㎡</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반영하고자 시설명 변경</li> <li>• 기반시설 재정비 및 적정 기부채납 확보, 보육아동과 국공립 어린이집 수요 등을 고려하여 사회복지시설 면적 변경</li> </ul>

다.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

○ 기정

구분	시설의 종류	면 적(㎡)	비 고
		기준	
기정	관리사무소	34.70 이상 계획	
	경 로 당	79.40 이상 계획	
	보 육 시 설	171.60 이상 계획	
	경 비 실	-	
	주민공동시설	74.40 이상 계획	
	작은도서관	300세대 이상 설치	
	어린이놀이터	744.00 이상 계획	
	주민운동시설	450.00 이상 계획	
	휴게시설	2개소 계획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변 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법정 기준을 준수하여 계획	

**라. 건축물의 주용도 · 건폐율 · 용적률 · 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구역구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건 축 시 설 계 획					
	명칭	면적 (㎡)	명칭	면적 (㎡)	주된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층수	연면적 (㎡)
기정	십정3 재개발 정비 구역	34,552.1	획지1-1	22,225.9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16.38	274.93	115	36	96,720
			획지2-1	1,193.4	공공·문화 체육시설	50.0	300.0	24	6	3,580
			획지2-2	309.6	노외주차장	50.0	300.0	24	6	929
변경	십정3 재개발 정비 구역	34,552.1	획지1-1	27,571.7	공동주택 및 부대복지시설	25.2	270.7	124	-	-
			획지2-1	1,650.0	사회복지시설	50.0	300.0	24	-	-
건축물용도			허 용 용 도	기 정	획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지시설</li> </ul>				
					획지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07조 공공·문화체육시설</li> </ul>				
					획지 2-2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차장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li> </ul>				
			변 경	획지 1-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2호에 의한 공동주택 중 아파트</li> <li>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조에 해당하는 시설 중 부대시설, 복지시설</li> </ul>					
				획지 2-1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1호에 의한 노유자시설 중 아동 관련 시설</li> </ul>					
			불허 용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허용용도 이외의 용도</li> </ul>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80% 이상을 85㎡ 이하로 건설</li> </ul>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 세대수의 17%,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 30%이상 또는 전체세대수의 5%이상 계획 (영구임대주택포함 : 총세대수의 2.5%이상 확보)</li> </ul>								
완화기준 적용	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률 완화 (인센티브)</li> <li>- 공공시설부지제공111.1% + 공공시설부지확보5.6% + 지하주차장 10% + 탑상형아파트 건립 5.0%</li> </ul>								
	변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용적률 완화 (인센티브)</li> <li>- 공공시설부지제공53.8% + 지하주차장 10%</li> <li>※ 사회복지시설(국공립어린이집) 건축물 기부채납(600㎡포함) 건축물 기부채납에 따른 부지 환산면적(874㎡)을 공공시설부지제공에 포함</li> </ul>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구분	항목	환 경 성 예 측	저 감 방 안								
자연환경	기상·기후 및 에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 기상대 최근 10년간 기상상태: 평균 기온 12.53℃, 강수량 1,280.02mm, 상대습도 67.5%, 주풍향은 N(북) 계열</li> <li>전력사용 예측</li> </ul> <table border="1"> <tr> <td>계</td> <td>주거용</td> <td>판매시설</td> <td>지하주차장</td> </tr> <tr> <td>1,394KVA</td> <td>818KVA</td> <td>39KVA</td> <td>537KVA</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청정연료인 LNG계획:801천Nm<sup>3</sup>/년소요예상</li> </ul>	계	주거용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1,394KVA	818KVA	39KVA	537KVA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에너지 사용계획 수립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LNG) 공급계획을 반영</li> <li>건축법상의 건축선 이격 규정을 준수</li> <li>합리적인 가로망 계획 수립</li> </ul>
	계	주거용	판매시설	지하주차장							
	1,394KVA	818KVA	39KVA	537KVA							
	지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지는 기 조성된 개발지로 표고가 대부분 30m 미만이며, 경사는 대부분의 지역이 10° 미만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음</li> <li>사업대상지를 환경부의 사전환경성검토 검토기준과 비교시 평탄지로 나타나 지형적으로 개발이 제한되는 지역은 아닌 것으로 나타남</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절·성토 균형을 고려한 토공계획을 수립하여 토량 발생을 줄이고 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사면을 유지하도록 계획, 기존 개발지의 지형을 최대한 활용</li> <li>추후 공사계획 수립시 사업대상지의 부지 조성에 필요한 소요토량은 기 개발된 토석채취원에서 구매확보 토록 하여 신규 개발로 인한 2차적인 환경피해 요인을 차단하였음</li> </ul>								
녹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대상지는 건축물이 밀집한 시가화 지역(단독 및 공동주택지)으로 부지내 공원 및 녹지밀집공간은 전무한 실정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원·녹지율 확보(10.4%) -공원면적 3,572㎡</li> </ul>									
경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지 주변의 자연적인 경관자원은 분포하지 않고, 도심경관을 형성하고 있음</li> <li>사업대상지 내부는 노후된 건물들, 좁은 도로, 형태 등이 일정치 않은 건물의 산만한 분포 등으로 낮은 경관질을 보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경관성을 고려한 개발계획수립(경관의 특성화 유도, 변화있는 스카이라인 형성, 질서있고 변화있는 가로경관 형성)</li> <li>건축물 외관, 색채, 옥외광고물 등 부지내 입지할 시설의 경관성 배려</li> </ul>									

구분	항목	환경성예측	저감방안
생활환경	휴양및여가공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인천시내 공원시설은 총 531개소(어린이공원 361개소, 근린공원 135개소, 도시자연공원 23개소, 묘지공원 2개소, 체육공원 10개소)가 위치하며, 총면적은 58,694천㎡임</li> <li>사업시행에 따라 대상지구내에 입주하게 될 거주민 또는 방문객에 대하여 휴식공간 확보 및 이용을 고려한 공원, 녹지 등 수요 필요</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본 사업시행시 사업대상지내 주거시설 외에 소공원(3,572㎡)을 수립하여 대상지내 거주민의 휴식공간 및 놀이공간을 확보토록 하며 주거 환경의 경관성 제고 및 지역주민의 쾌적성과 안정성 확보를 도모함</li> </ul>
	대기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부지정지시 비산먼지 및 건설 장비투입에 따른 배기가스 발생 예상</li> <li>운영시 연료사용에 따른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PM-10 : 42.851~42.902µg/㎡</li> <li>- NO2 : 0.0201~0.0230ppm</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비산먼지 저감대책 수립(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방진망 설치)</li> <li>운영시 청정연료인 LNG 사용 및 합리적인 가로 및 교통체계 수립으로 차량 배기가스 발생 최소화</li> </ul>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오수(17.9㎡/일)</li> <li>부지정지 공사시 강우로 인한 수용수계 오염부하 증가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우수유출량 : 0.76㎡/sec</li> <li>- 토사유출량 : 7.46ton/일</li> <li>- SS 가중농도 : 113.61mg/L</li> </ul> </li> <li>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급수: 748㎡/일, 오수: 644㎡/일 발생</li> </ul> </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현장사무소내 화장실이용(기존 시가지)</li> <li>부지정지시 강우로 인한 오탁수 처리를 위하여 침사지 설치(예상용량 : 59.71㎡)</li> <li>운영시 급수소요량은 인천광역시 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가좌배수지에서 배수함</li> <li>운영시 발생하는 오수는 인천광역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적정하게 연계처리함.</li> </ul>
	폐기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예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활폐기물 발생량 : 97.9kg/일</li> <li>- 분뇨 발생량 : 110.01L/일</li> </ul> </li> <li>공사투입장비에 의한 폐유발생 (20.66L/일, 1회 오일교환시)</li> <li>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 발생 (2,118.03kg/일)</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투입인부에 의한 폐기물 및 분뇨는 전문 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li> <li>지장물 철거 건설폐기물은 시내 처리업체를 선정하여 수거 및 재활용되도록 함</li> <li>건설장비 폐유는 공사현장내 임시수거장소를 설치하여 수거후 위탁처리</li> <li>운영시 수용인구에 의한 생활폐기물은 인천광역시 폐기물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수거 및 최종처리</li> </ul>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 투입장비에 의한 건설소음은 공사구간으로부터 104m이내의 정온시설에서는 65dB(A)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li> <li>운영시 주변 가로 교통소음으로 인한 영향은 환경기준치 이내로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사업대상지 외곽으로 가설방음판넬 설치(H = 6m)</li> <li>운영시 경인선으로 인한 철도소음 저감을 위한 완충녹지 조성</li> </ul>

구분	항목	계 획	비 고
재난방지	수해 (홍수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개발중 홍수유출량은 개발전에 비해 감소하나 부지정지를 위해 절·성토 공사시 발생하는 토사는 우수와 함께 유하되어 하류부에 토사가 퇴적됨으로 인해 기존 우수관로의 통수능 저하에 따른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유역내에 임시 침사지 3개소를 설치하여 개발중의 토사유출량을 저감토록 계획</li> <li>개발전과 개발후의 홍수량 및 토사유출량의 증가는 발생하지 않으나 공원 및 휴게시설 등을 우수침투시설로 설치하여 집중호우로 발생할 수 있는 홍수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함</li> <li>또한 현재 설치되어 있는 우수관망의 수리능력검토를 통해 원활한 우수배재계획을 수립</li> </ul>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대상 지구에는 현재까지 지진으로 인한 재산 및 인명피해는 적은 것으로 조사 되었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진도 5.0이상의 지진이 한반도에 발생함에 따른 내진설계 필요 할 것으로 판단</li> </ul>	
	교통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차분리, 가감속차로 확보, 지상부 차량동선의 최소화 및 체계적인 교통 체계구상으로 교통사고발생을 최소화</li> <li>재해시 소방도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진입동선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발생시 응급차 등의 교통접근이 용이할 수 있도록 계획</li> </ul>	

○ 변경

구분	항목	계 획	비 고
환경보전계획	지형·지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현재 지형형태를 유지하는 단지계획을 수립하여 지형변화를 최소화</li> </ul>	
	동·식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사업에 의해 훼손되는 수목에 대해 이식을 계획, 적절한 녹지계획</li> <li>포유류 및 조류의 번식기에는 소음에 민감하므로 야간작업을 금지</li> </ul>	
	수질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건설폐기물은 건설폐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에 준하여 처리</li> <li>성상별 분리수거 및 음식물은 부평구 처리계획에 의거하여 처리</li> </ul>	
	소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공사시 가설방음판넬 설치, 공사차량 감속주행 및 주간작업을 통한 소음발생시간의 통제</li> <li>저소음 건설장비 선정</li> </ul>	
재난방지계획	수해 (홍수해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수해방지 응급장비를 완비하여 우발적인 홍수재난에 대비함</li> <li>정비구역내 가능한 한 투수성 포장재를 사용하여 투수율을 제고함</li> </ul>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시 가능한 한 내연성, 불연성 건축자재를 사용토록 함</li> <li>유류, 전기시설 및 위험물에 대한 상시 관리기능을 강화</li> </ul>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주 보행로 등에 가로등, 보안등을 설치하고 휴게공간 등에 CCTV모니터를 통한 개방성, 안정성 확보</li> </ul>	
	지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진시 발생할 충격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내진설계를 적용하여 지진에 대한 피해방지를강화</li> <li>지진에 대비하기 위한 주민홍보 교육을 주기적으로 실시</li> </ul>	

**바.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분야	저 감 방 안
소음·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장 소음·진동 관리지침서」에 준하여 공사를 시행</li> <li>· 가설방음판넬(6m) 설치</li> <li>· 저소음, 적정 용량의 건설기계를 선택하여 소음·진동 저감</li> </ul>
비산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사 시 살수,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가설방진망 등 설치</li> <li>· 대기오염 차단기능이 우수한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li> <li>· 청정연료인 LNG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li> </ul>
일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일조권고치 기준에 적합하게 건축계획 수립</li> </ul>
통학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대상지 내 충분한 보행자도로를 확보하여 단지 내 및 주변지역 학생들에게 최단거리의 안전한 통학로를 제공</li> </ul>

**사. 세입자 주거대책(변경)**

- 영업보상비 등을 지급할 예정
- 전체 세대수의 2.5% 이상을 영구임대주택으로 건설
- 구역 내 기존 세입자가 우선 입주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향후 인수자와 별도 협의 하도록 하겠음.
- 구역 외로 이주하고자 하는 세입자를 위해서는 해당기준에 따라 이주비용을 지급하고 알선 및 이주관리를 시행하겠음

**아.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변경 없음)**

구 분	내 용
기 정	· 구역지정(변경)고시가 있는 날부터 3년 이내의 범위 안에 사업시행인가

**자. 정비사업 시행방법(변경 없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주택재개발사업으로 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해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

**차.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없음)**

결정 구분	구역 구분		위 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	
기정	십정3재개발 정비구역	34,552.1	부평구 하정로 15번길 50	70	-	-	70	무허가 44동 포함

**카. 정비기반시설의 설치계획(변경 없음)**

- “나.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항목과 동일함

**타.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계 획 목 표		
건축 한계선	기 정	공동주택용지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인접 도로변 10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li>• 도로변 6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li> </ul>	
			인접대지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근린생활시설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인접대지경계부			
		공공문화 사회복지시설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인접대지경계부					
	주차장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변 경	공동주택용지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철도인접 도로변 10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li>• 도로변 3m 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축한계선 지정에 따른 개방감 확보 및 보행환경 개선</li> </ul>
			인접대지경계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근린생활시설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인접대지경계부						
사회복지시설		도로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3m이격하여 건축한계선 지정</li> </ul>			
		인접대지경계부				

**파. 홍수 등 재해에 대한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 결과(변경 없음)**

- “마.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참조

**하. 정비구역 및 주변지역의 주택수급에 관한 사항(신설)**

구역명	사업유형	구역면적 (㎡)	계획세대수	향후계획	비고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	192,401.7	5,678	착공	
십정3구역	재개발	34,552.1	808	정비계획(변경)	
십정4구역	재개발	45,139.5	856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	
백운2구역	재개발	57,749.3	1,436	보상협의 및 이주	

**저. 가구 또는 획지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가구 번호	가구 면적(㎡)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1	22,225.9	1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 (십정동 432번지)일원	22,225.9	공동주택용지
2	1,193.4	1	부평구 십정동 390-1번지 일원	1,193.4	공공문화·사회복 지시설용지
2	309.6	2	부평구 하정로 19번길 42 십정동 390번지) 일원	309.6	주차장용지

- 변경

가구 번호	가구면적 (㎡)	획 지			비 고
		획지 번호	위 치	면 적(㎡)	
1	27,571.7	1	부평구 하정로15번길 50 (십정동 432번지)일원	27,571.7	공동주택용지
2	1,650.0	1	부평구 십정동 390-1번지 일원	1,650.0	사회복지시설용지

## 너.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변경)

### ○ 기정

구 분	법 적 기 준
임 대 주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설 주택 전체 세대수의 17% 이상</li> <li>•임대주택의 30% 이상 또는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의 5% 이상을 전용면적 40㎡이하 규모로 건설</li> </ul>

### ○ 변경

구 분	법 적 기 준
임 대 주 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전체세대수의 5%, 전용면적 40㎡이하 주택이 임대주택 세대수의 30%이상 또는 전체 세대수 5%이상(영구임대주택포함 : 총세대수의 2.5%이상 확보)</li> </ul>

## 더. 기존수목의 현황 및 활용계획(변경 없음)

구 분	활 용 계 획	비 고	
이식처리 계획	대지내 조경에 활용 공원부지 나무 은행 등에 보전	45주	사업대상지내 기존 수목:45주
	임목폐기물업자에 위탁처리	-	

## 러. 기타 계획(변경)

### ○ 기정

구 분	계 획	비 고
진입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계획구역은 670세대(임대주택 포함)로 진입도로 12m이상 확보 의무화(2개의 진입도로 계획시 폭의 합계가 16m 이상 확보)</li> </ul>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차량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상부 차량공간 최소화</li> <li>- 지상부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순환차량 동선만 확보토록하고 보도형태의 비상차량 진·출입동선으로 계획</li> <li>• 진·출입은 중로2-2호선, 중로2-246호선으로 계획하여 접근성 확보</li> <li>• 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li> </ul>	
주차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법정 주차대수 : 547대</li> <li>• 계획 주차대수 : 704대(장애인주차 : 22대, 상가주차 4대 포함)</li> </ul>	법정주차의 128%계획

## ○ 변경

구 분	계 획	비 고
진입도로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계획구역은 808세대(임대주택 포함)로 진입도로 12m이상 확보 의무화(2개의 진입도로 계획시 폭의 합계가 16m 이상 확보)</li> </ul>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차량동선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부 차량공간 최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상부에는 지하주차장 진·출입을 위한 최소한의 순환차량 동선만 확보토록하고 보도형태의 비상차량 진·출입동선으로 계획</li> </ul> </li> <li>진·출입은 중로1-659호선, 소로1-가호선으로 계획하여 접근성 확보</li> <li>보차분리를 통해 안전한 보행공간 확보</li> </ul>	
주차장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법정 주차대수 : 669대</li> <li>계획 주차대수 : 1,180대(장애인주차 : 36대, 상가주차 4대 포함)</li> </ul>	법정주차의 176%계획

## 며. 관련서류

- 시민의 열람 편의를 위하여 인천광역시 주거재생과 및 부평구 주거환경정책과에 관계서류를 비치하고 열람하고 있습니다. (관련도면 게재 생략)

인천광역시고시 제2019-9호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공항시설법」 제7조 규정에 따른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관련 서울지방항공청 고시 제2018-45(2018. 4.13.)호로 결정 고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인천광역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에 대하여 같은 법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 시설계획과(☎032-440-1712), 인천광역시 중구청 도시개발과(☎032-760-7518)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 14.

## 인천광역시장

- 결정취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다목에 해당하는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는 사항임
- 위 치: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항) 결정(변경) 조서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공항	국제공항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2851번지 일원	52,731,520	증)426,161	53,157,681	건설부고시 제1992-841호 (1993. 1. 6.)	

### ○ 도시계획시설(공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	공항(국제공항)	• 면적 변경 52,731,520㎡ → 53,157,681㎡ (증 426,161㎡)	• 인천국제공항 국제업무지역 IBC-III 개발사업을 위한 변경

- 지형도면: 게재 생략(갖추어 둔 장소의 지형도면과 같음)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열람 가능

인천광역시고시 제2018-11호

##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 4-2단계) 사업 실시계획(최초) 인가 고시

도시계획시설(연희근린공원 4-2단계) 사업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7조에 따라 실시계획(최초) 인가하고 같은 법 제92조 및 시행령 제100조에 따라 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032-440-3653),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 ☎032-458-7184), 인천광역시 서구청(공원녹지과 ☎032-560-449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1. 14.

###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연희동 56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 명 칭 : 연희근린공원 4-2단계 조성사업

####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그간실시계 획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인 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연희 근린공원 4-2단계	공원	1,032,165.5	507,273.5	42,197.4	482,694.6	1970.07.20. (건고 제344호)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계양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계양구 경명대로 990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 12. 31일까지

6.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소유권과 소유권의 권리의 명세 및 그 소유자·권리자 성명·주소

- 따로붙임

7. 공공시설 등의 귀속 및 양도에 관한 사항

- 따로붙임

## 공 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28호

## 도시계획시설(도로: 중로1류327호선)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7-219(2017.9.18.)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 【도로명: 중로1류327호선, 사업명: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로1류327호선 도로개설공사】 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 14.

## 인 천 광 역 시 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 663-23번지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 도로(중로1류327호선)
  - 명칭: 경찰학교 이전부지 중로1류327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A=3,863㎡, L=162m, B=22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장, 인천교구천주교회유지재단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인천광역시 동구 박문로 1(송림동)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기간 : 2017. 9.18 ~ 2018. 12. 3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3호

## 건축허가 제한 공고·열람

“남항(내항 등) 주변지역 환경분쟁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 대책” 수립을 위하여 『건축법』 제18조에 따라 건축허가 제한 등을 하고자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9.

## 인 천 광 역 시 장

1. **제한목적:** 수도권제2외곽순환고속도로(2017. 3.) 개통과 항만지역 특수성 등에 따라 환경분쟁 저감을 위한 도시관리와 지역주민의 생활환경 보호 등을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결정 고시 할 때 까지 건축허가를 제한하고자 함

### 2. 제한내용

가. 제한기간: 공고일로부터 2년(단,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결정 고시하면 해제)

나. 제한대상 건축물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 단독주택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공동주택
- 3)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 나목 일반업무시설 중 오피스텔
- 4)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 가목 숙박시설중 생활숙박시설

다. 제한항목: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21조 착공신고

- 1) 기존 단독주택·공동주택의 증축, 개축, 재축 및 재건축은 허용

라. 제한대상 위치: 중구 신흥동 3가, 향동7가

마. 제한면적: 668천㎡

바. 제한대상 구역의 경계: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 3.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가.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나. 의견제출: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안에 의견서를 열람장소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열람장소: 인천광역시청 도시균형계획과(440-4622), 중구청 도시개발과(760-7516)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7호

##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1류1호선) 공사완료공고

인천광역시 고시 제2004-224(2004.12.8.)호로 실시계획인가를 득하여 공사 완료한 도시계획시설【도로명: 광로1류1호선, 사업명: 남항주변 광로1류1호선 도로개설공사】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2조 규정에 따라 공사완료 공고합니다.

2019. 1. 14.

## 인천광역시장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향동7가 105 일원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종류: 도시계획시설(도로: 광로1류1호선)
  - 명칭: 남항주변 광로1류1호선 도로개설공사
3. 사업의 면적 및 규모 : L=888m, B=50~100m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성명: 인천광역시 중구청장
  -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신포로27번길 80
5. 사업의 착수 및 준공기간 : 2004. 10. ~ 2007. 1.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38호

## 정보통신공사업 신규 등록 공고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2조에 의하여 정보통신공사업 등록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등록번호	상호 및 대표자	영업소재지
제320347호	주식회사 가람이앤씨 이 승 현	인천광역시 서구 봉수대로 183번길 12-1, 201호 (가좌동, (주)원광에스앤티)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1호

## 2019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국내전시회 - 개별참가기업(공산품) 모집 공고 -

인천광역시는 관내 품질우수제품의 판로개척 및 수출증진을 위해 『2019년 품질우수제품(공산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을 안내 하오니, 관내 중소기업은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1. 사업 개요

- 사업명 : 2019년 인천광역시 품질우수제품 국내전시회 개별참가 지원사업
- 대상전시회 : 2019년 국내 전시·박람회(1월~11월)
- 사업비 : 20백만원
- 모집규모 : 10개사 내·외(최대 180만원 범위 내)
- 지원내용 : 부스임차료 및 장치비

### 2. 참가신청 및 방법

- 신청기간 : 2019. 1. 14.(월) ~ 2. 1.(금) 18:00까지
- 신청자격
  - 인천광역시 지정 품질우수제품 및 우수기업(우선 지원), 일자리창출기업 등
  - 본사 또는 공장이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중소기업

## □ 신청방법

### ○ 온라인(인터넷)을 통한 신청서 접수

☞ BizOK(<http://bizok.incheon.go.kr>) 접속 → 로그인 → 온라인기업지원사업 신청 → 참여해당 사업 클릭 → 기업지원사업신청 → 기업정보등록(인증서 등록) → 참가신청서 등록 → 설문참여

### ○ 신청서 작성 시 제출서류

연번	서 식 명	제출여부	제출방법
①	참가신청서, 전시희망품목명세서,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공통 필수	* 인터넷에서 해당서식 다운로드하여 작성 후 문서파일 업로드
②	사업자등록증		* 해당파일 업로드
③	기술개발제품 인증	해당시	* 해당파일 업로드(유효기간 이내)
④	국내·외 규격		
⑤	시스템 인증		
⑥	국내 품질인증		
⑦	지식재산권(특허(전용실시권 포함), 실용신안, 디자인)		
⑧	녹색제품, 친환경제품		
⑨	품질분임조 및 품질개선 경진대회 참여기업		
⑩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		
⑪	INNO-BIZ, MAIN-BIZ, 벤처기업		
⑫	국가 R&D사업 성공기업(5년 이내)		
⑬	여성, 장애인, 가족친화, 사회적기업, 수출 유망중소기업(중기부)		

## 3. 추진계획

항목	내용	추진일정
신청기간	참가기업 모집	'19.1.14.(월) ~ 2.1.(금)
참가기업 선정	선정기업 통보	'19.2.15.(금)
사업시행	전시회 참가	'19.1월 ~ 11월
지원금 신청	전시회 참가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신청	'19.12.6.(금) 18:00까지

#### 4. 기타사항

##### □ 유의사항

- 선정기업 1개 전시회 참가비 지원(최대 180만원 실비)
- 회계연도 마감일(12.31) 집행 원칙에 따라 11월 전시회까지 신청 가능  
\* (지원금 지급절차) 지원금 신청(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 지원금 지급(14일 이내)
- 기업별 참가전시회 임의변경 불가(단 1회, 전시회 개최 30일전 변경 가능)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결과보고서 제출 및 지원금 신청\*  
\* 선정일 전에 전시회 참가한 경우 선정일 후 15일 이내 결과 보고 및 지원금 신청
- 선정일 이전 참가한 '19년 전시회는 소급 적용\*하여 지원  
\* (예시) 전시회 참가('19.1.20), 선정일('19.2.20)
- 전시회 개최 30일전에 사전 참가안내 실시(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 선정기업은 전시회 참가 후 사업의 성과분석 등을 위해 사후관리에 필요한 설문조사 및 요구사항에 적극 협조(참가기업)

##### □ 후순위 선정지원

- 선정기업의 중도포기 시 후순위 기업 지원  
\* 집행잔액 발생 시 후순위 기업 지원
- 후순위 기업이 신청한 전시회 기간이 지난 경우 소급 가능하며, 미참가 시 1회 한하여 변경 후 참가 가능(임의 참가는 지원불가)

##### □ 지원 제외대상

- 동일전시회로 유관기관과 중복지원 불가(중복지원 시 환수조치)
- 타 명의(국내에이전트, 대리점, 타사명의 등)로 참가한 경우

#### 5. 문의처

- 인천경제산업정보테크노파크 배정휘 주임(☎032-260-0635)

※ 상기 지원내용 및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43호

##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5조의2 제1항 및 「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를 같은 규칙 제16조 제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 인 천 광 역 시 장

#### [자동차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 지정 현황]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지정번호	검사업무 범위	지 정 일
삼일자동차 써비스(주)	김기남	인천광역시 중구 축항대로 290번길 120(신흥동3가)	제 종합2019-01호	○ 모든 자동차의 종합검사	2019.1.9.
			제사용2019-01호	○ 택시미터사용검정	

○ 연락 및 문의전화 : 교통관리과 담당자 유연식 (032)440-3933

인천광역시공고제2019-47호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측정대행업 등록말소(자진반납) 사항을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9일

인천광역시장

### 측정대행업 등록말소 공고

- 1) 업 체 명 : (재)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 2) 대 표 자 : 윤갑석
- 3) 영업소재지 : 인천광역시 연수구 갯벌로 145번길 8
- 4) 측정대행업의 종류 : 수질측정대행업
- 5) 등 록 번 호 : 수질 제 40호
- 6) 등록연월일 : 2018. 3. 21.
- 6) 취 소 사 유 : 자진반납
- 7) 취 소 일 자 : 2019. 1. 9.

인천광역시공고 2019-48호

## 2019년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시행 공고

인천광역시에서는 시민들의 사회단체활동을 지원하고 공익활동 증진을 위하여 「비영리 민간단체 지원법」 제7조제4항에 따라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9. 1. 15.

인천광역시장

### 1. 신청자격

- 우리 시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공고일 기준)

### 2. 지원사업 유형

- ① 협치소통 : 협치, 시민소통, 시민참여 사업 등
  - ② 민생경제 :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전통시장 지원, 농어민 지원 프로그램 등
  - ③ 맞춤형복지 : 따뜻한 공동체 인천 실현을 위한 사업(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사업, 저소득 가정의 아동·청소년 지원사업 등)
  - ④ 교통안전 : 교통사고 줄이기, 교통안전문화 실현을 위한 사업, 안전문화 교육·홍보,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사업 등
  - ⑤ 생활환경 : 미세먼지저감운동, 환경정화활동, 녹색생활운동 등
  - ⑥ 해양친수 : 서해평화, 해양문명도시 인천 실현, 아름다운 인천섬 알리기 사업 등
  - ⑦ 문화여가 : 문화도시 인천의 이미지 개선을 위한 사업, 지역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역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등)
  - ⑧ 시민의식 : 기초질서 지키기, 공동체 의식 함양 및 계층간 갈등 해소 등
  - ⑨ 남북교류 : 통일안보 체험·교육·캠페인, 남북 사회통합 교육활동 등
  - ⑩ 일자리창출 : 상생협력, 일자리 나눔행사 등 지원, 청년 창업 활성화 지원 등
  - ⑪ 도시재생 : 원도심 지역을 활용한 도시재생사업, 원도심 활성화 사업 등
- ※ 세부 예시는 인천광역시시민단체네트워크홈페이지(<http://ngo.incheon.go.kr>)의 공지사항에 게재

### 3. 지원범위

가. 단체 설립목적에 맞는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지원(운영비, 자본적 경비 제외)

나. 사업비 신청은 아래 사업비 중 1개 사업

신청액	계	5백만원	7백만원	1천만원	1.5천만원	2천만원	2.5천만원	3천만원
사업수	○○○개	○○개	○○개	○○개	○○개	○개	○개	○개

※ 단체 신청액에 대한 보조금 조정 없이 선정 또는 탈락 됨

### 4. 사업추진 및 보조금 지원기간 : 2019년 4월~12월

## 5. 신청사업 설명회 개최

- 가. 일시 및 장소 : 2019. 1. 30.(수) 15:00 인천광역시청 대회의실(2층)
- 나. 설명내용 : 신청방법, 사업유형, 심사.선정기준, 회계처리기준 등

## 6. 신청기간 및 장소

- 가. 신청기간 : 2019. 1. 30.(수) ~ 2018. 2. 15.(금) 오후 4시까지
- 나.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관(본관 3층 309호) ☎440-3438
- 다. 접수방법 : 방문접수 \* 인터넷접수, 우편접수 불가

## 7. 신청서류

- 가. 2019년 지원 신청서, 단체소개서, 최근 3년간 공익사업 추진실적 각 2부
  - 나. 2019년 비영리민간단체공익활동지원사업 사업계획서 2부
  - 다. 위 “가~나”의 신청서류를 작성한 USB 1매(방문제출시)
  - 라.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사본 및 고유(사업자)등록증 사본 각각 2부.
- \* 서식은 인천광역시시민단체네트워크홈페이지(<http://ngo.incheon.go.kr>)의 공지사항 게재

## 8. 지원사업 선정 및 통보

- 가. 선정 및 교부액 결정 : 인천광역시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에서 심의.선정
  - ※ 동일(유사)사업으로 우리시 또는 타 기관(군.구)에 중복 제출한 경우 심사 제외
- 나. 선정기준 : 사업단체의 역량, 사업내용의 추진방법, 사업예산, 전년도 평가결과 등
- 다. 지원사업 통보 : 우리 시 시민단체네트워크 홈페이지 또는 선정 단체 개별 통지

## 9. 보조금 집행, 사업정산 및 평가

- 가.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 시기별로 나누어 보조금 교부 및 집행
- 나. 중간평가 및 종합평가 실시(필요시 현지조사 실시 등)
- 다. 사업완료시 사업실적 및 정산보고서 제출
  - ※ 보조금 교부 신청 : 2019. 4월 이후 담당부서에 신청

## 10. 기타사항

- 가. 사업신청시 자체부담예산은 확정된 보조금의 10%이상을 반드시 부담하여야 함.
- 나. 보조금 집행은 보조금결제전용카드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내역은 인천시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사용을 의무화하여야 함.
- 다. 사업계획서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불성실한 사업계획은 심의대상에서 제외함.
- 라.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단체는 보조금 환수 및 고발 조치함.
- 마.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중간평가와 종합평가(보조금정산 포함)를 실시하여 보조사업 목적외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부적정하게 집행한 부분은 전액 환수함.
- 바. 2019년 게시되는 서식을 반드시 사용하고 요건 부적합시에는 미접수 처리함.
- 사. 사업명칭이 군·구로 한정된 단체(군·구지회 등)는 해당 군·구의 보조금 활용
- 아.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인천광역시 시민단체 네트워크 홈페이지 (<http://ngo.incheon.go.kr>) 공지사항에 게재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지원안내』를 참고바람.

※ 기타 문의사항 : 인천광역시 민관협치담당관 시민협력팀(032-440-3438)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0호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 공고·열람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결정(변경)(안)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미리 주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14.

### 인천광역시장

#### 1.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 주요내용

- 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선학동 174번지 일원
- 결정(변경) 내용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			구성비 (%)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 후		
합 계	35,735	-	35,735	100.0	
제3종일반주거지역	-	증) 35,735	35,735	100.0	
보전녹지지역	35,735	감) 35,735	-	-	

#### ·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표시 번호	위 치	용도지역		면 적 (㎡)	용적률	결정(변경) 사유
		기 정	변 경			
-	연수구 선학동 174번지 일원	보전 녹지지역	제3종 일반주거 지역	35,735	300% 이하	○ 도시공원 개발행위 특례사업 추진에 따른 비공원시설부지 용도지역 변경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광로	2	6	50~88	주간선	6,200	관교동 대2-7	중로 1-295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319호 (1986.7.21)	
변경	광로	2	6	50~88 (53)	주간선	6,200 (156)	관교동 대2-7	중로 1-295	일반 도로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80	광로 2-6	소로 2-1	일반 도로		연수구고시 제2001-13호 (2001.8.13)	
변경	중로	1	가	23	국지 도로	157	광로 2-6	소로 2-1	일반 도로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656	소로 2-1	소로 2-1	일반 도로		인천직할시고시 제1990-23호 (1990.3.13)	
변경	소로	2	2	8~13	국지 도로	656 (171)	소로 2-1	소로 2-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2	가	8	국지 도로	73	소로 2-2	선학동 172-3	일반 도로			

※ ( )는 구역 내 폭원 및 연장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도로) 결정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 내용	변경 결정 사유
광로2-6	광로2-6	○ 도로 폭원 일부 확폭 - 폭원(B)=3m - 연장(L)=156m	○ 경원대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일부 확폭
소로1-1	중로1-가	○ 도로 폭원 확폭 - 폭원(B)=10m → 23m(증13m) - 연장(L) = 180m → 157m(감23m)	○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진입도로 활용을 위한 도로 확폭
소로2-2	소로2-2	○ 도로 폭원 일부확폭 - 폭원(B)=8m → 8~13m(증5m) - 연장(L)=171m	○ 비공원시설(공동주택)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로 폭원 확장
-	소로2-가	○ 도로신설 - 폭원(B)=8m - 연장(L)=73m	○ 비공원시설(공동주택) 및 인접지 역의 원활한 교통처리를 위한 도 로 신설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류	위치	면적(㎡)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	선학 공원	근린 공원	연수구 선학동 202-7번지 일원	19,504	감) 182	19,322	인천광역시고시 제2015-226호 (2015.9.7)	

## ·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공원) 결정 사유서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변경 내용	변경 결정 사유
-	선학 공원	○ 면적감소 - 19,504㎡→19,322㎡(감182㎡)	○ 경원대로 가감속차로 설치에 따른 공원부지 일부 제척

## 2. 열람 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기간: 공고일로부터 14일간

○ 의견제출

-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열람 장소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3. 열람 장소

○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032-440-3658, 남동구 정각로 29)

○ 인천광역시 연수구청(도시계획과, 032-749-8652, 연수구 원인재로 115)

## 4. 관계도서: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갖추어 둠)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3호

##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19 년 1 월 10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 2019. 1. 10.(목) ~ 2019. 1. 17.(목)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규 모	추 정 감정가액	의뢰부서	선정 수
1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전, 종후자산 평가	○ 위치: 미추홀구 송의동 109-119 일원 ○ 감정평가대상 - 계획세대수: 1,705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4,800억원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2개업자
2	「우정아파트1동 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 종후 자산 평가	○ 위치: 남동구 구월동 341-12 일원 ○ 감정평가대상 - 계획세대수 122세대, 오피스텔 38세대, 상가 등	470억원	남동구 (공동주택과)	1개업자
3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수용재결 평가	○ 위치: 부평구 십정동 186-423일원 ○ 감정평가대상 - 토지 122필, 지장물 146건 영업권 32건	394억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2개업자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취소 등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음.

※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감정평가보수 수수료의 80%요율 적용

※ 해당사업 참여제한(기(既)참여 등) 감정평가업자

- 「우정아파트 1동, 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 종후자산 평가: 『하나』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차」 수용재결 평가: 『나라』, 『태평양』, 『에이원』

## 나. 신청자격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 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다. 신청기간 : 2019. 1. 10. ~ 2019. 1. 17.(18:00)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시청 내 IDC건물 1층)

## 마.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1)
  - ② 법인등기·인가증(공고일 기준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서
  - ③ 업무제안서(서식 2)
  -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 시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실적)**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 기타 유의사항

-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발주부서 개별통지)
- 나. 책임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유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 하여 각각 2매 이내 구체적 작성
-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마.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가 선정업자로 결정
-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19. 1. 17.(목) 18: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 함
-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임
-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880-4482)
  -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남동구 공동주택과(☎453-6422)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440-3763)
-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 032-440-45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 참여 사업 :

□ 감정평가업자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협회: 법인소속확인서)</li> <li>○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협회: 경력증명서)</li> <li>○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작성 예시 참조)</li> <li>※ 협회: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대체 가능</li> <li>○ 보험 등 가입여부(협회: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li> <li>○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주의, 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li> <li>○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b>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b></li> </ul>		
감정평가 수행계획	○ 참여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일정 등 : <b>별지 2장 이내 구체적 작성</b>		
기타 의견	※ <b>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b>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년 월)	
1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2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3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4호

##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한 서류 열람 공고

도시계획시설(장미근린공원 3단계) 실시계획(최초)인가를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0조 규정에 의거 관계서류를 열람 공고 하오니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을 경우, 열람 기간 내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도서는 인천광역시청(공원녹지과 ☎ 032-440-3653),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032-440-5953), 인천광역시 연수구청(공원녹지과 ☎ 032-739 -8722~3)에 갖추어 놓았습니다.

2019. 01. 14.

인 천 광 역 시 장

### 1. 사업시행지의 위치

○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산62번지 일원

### 2. 사업의 종류 및 명칭

- 1) 종 류 : 도시계획시설사업 (근린공원)
- 2) 명 칭 : 장미근린공원 조성사업 (3단계)

### 3. 면적 및 규모

구분	시 설 명	시설의 세 분	면적 (㎡)	그간실시계획 인가면적(㎡)	금회실시계획 인가면적(㎡)	향후실시계획 인가면적(㎡)	최 초 결정일
최초	장미 근린공원 3단계	공원	102,443	70,153	32,290	-	1944.01.08. (고시 제3호)

### 4.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사업시행자 :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장
- 주 소 : 인천광역시 중구 월미로 329(북성동 1가)

### 5. 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정일

- 실시계획인가일로부터 2023. 12. 31일까지

### 6. 사용 또는 수용할 토지 또는 건물의 조서와 지번 및 지목과 소유권이외 권리의 명세서 : 별첨

### 7. 열람기간 및 장소

- 열람기간 : 공고일로부터 14일간(09:00~18:00)
- 열람장소 :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 인천광역시 월미공원사업소,  
인천광역시 연수구 공원녹지과

붙임 : 토지 조서 및 지장물조서 각 1부

토 지 조 서 (총괄)

구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계	19필지			56,776	32,290							
1	연수구 연수동	136	답	654	654	장00	미추홀구 송의동					
2	연수구 연수동	136-1	답	311	311	이00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3	연수구 연수동	136-2	전	95	95	권00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 홀로					
4	연수구 연수동	136-6	임	1,243	1,243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5	연수구 연수동	136-7	전	919	919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6	연수구 연수동	137-2	임	364	364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7/26				
						우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26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1/26				
						우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연수동	4/26				
7	연수구 연수동	137-16	대	314	314	재단법인기00	서울 중구 태평로1가					

구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 종류	
8	연수구 연수동	138-1	답	22	22	장00	인천 미추홀구 석정로					
9	연수구 연수동	471-2	도	36	36	인천광역시 연수구						
10	연수구 연수동	471-3	잡	2,727	2,727	인천광역시						
11	연수구 연수동	471-4	도	363	363	인천광역시 연수구						
12	연수구 연수동	471-5	잡	3,474	2,106	인천광역시						
13	연수구 연수동	640-15	도	1,339	236	인천광역시 연수구						
14	연수구 연수동	산60	임	8,330	2,383	박00	인천 연수구 동춘동					
15	연수구 연수동	산61-19	임	9,521	9,521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6	연수구 연수동	산62	임	2,757	2,757	인천광역시		500/2757				
						박00	인천 동구 송현동	878.5/2757				
						인천광역시		500/2757				
						박00	인천 주안동	878.5/2757				
17	연수구 연수동	산64-2	임	5,256	5,256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구분	소재지		지목	전체면적	편입면적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종류	
18	연수구 연수동	산64-3	임	902	902	김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9	연수구 연수동	산65	임	18,149	2,081	산림청						

물건조서 (총괄)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1		연수동	136-1	소나무-1, 벗나무-2, 뽕나무-3, 살구나무-1 감나무-2, 매실나무-1					주	이00	인천시 미추홀구 도화동	1/1				
2	1	연수동	136-2	창고	목재/샌드 위치판넬	3.0*3.0, H3.0	-	9.00	m <sup>2</sup>	권00	인천광역시	1/1				
	2	연수동	136-2	울타리	목재/샌드 위치판넬	웬스 (H=1.3), L=14.2M	-	-	-							
	3	연수동	136-2	울타리	철망웬스	웬스 (H=1.6), L=17.6M	-	-	-							
3	4	연수동	136-6	창고	목조	CAD 구적	-	10.89	m <sup>2</sup>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				
		연수동	136-6	보도포 장	보도블럭	-	-	9.27	m <sup>2</sup>							
		연수동	136-6	호두나무-1, 매실나무-3, 소나무-1, 감나무-2, 배나무-2					주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 종류	
4	5	연수동	136-7	창고 (비닐하우스)	파이프/ 비닐	15*5.1, H2.8	-	76.50	m <sup>2</sup>	이00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1/1				
	6	연수동	136-7	기타 (게이트)	철재	W.6*H2.0, 1EA	-	-	-							
	7	연수동	136-7	울타리	목재/ 그물망	웬스 (H=1.0), L=2.6M	-	-	-							
		연수동	136-7	사과나무-3, 앵두나무-1, 살구나무-2, 소나무-2 포도-8, 매실나무-1									주			
5	8	연수동	137-16	주거지	세멘블럭조	((8.3+6.4)*2.9/2) +(12.5*8.3), H2.5	172.7 8	125.07	m <sup>2</sup>	만000	연수동	1/1				
	9	연수동	137-16	교육실	세멘블럭조	6.7*6.8, H2.5		45.56	m <sup>2</sup>							
	10	연수동	137-16	창고	샌드위치 판넬 /PE골판지	(2.6*2.7)+(3.1*4. 3),H2.2	-	20.35	m <sup>2</sup>							
	11	연수동	137-16	차양	PE골판지 /철재	1.5*2.4	-	3.60	m <sup>2</sup>							
	12	연수동	137-16	옹벽	콘크리트	W0.4 H=0.8, L=9.8M	-	3.92	m <sup>2</sup>							
	13	연수동	137-16	차양	PE골판지/ 목재	CAD 구적	-	16.20	m <sup>2</sup>							
		연수동	137-16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51.52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14	연수동	산61-19	게이트	콘트리트/ 철재	W0.4*L4.0,H5.6	-	-	-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15	연수동	산61-19	화장실	목재/슬레 이트	1.9*6.3, H2.3	-	11.97	m <sup>2</sup>							
	16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2.6*4.6, H3.1	-	11.96	m <sup>2</sup>							
	17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4.0*4.4, H1.7	-	17.60	m <sup>2</sup>							
	18	연수동	산61-19	예배당	벽돌	CAD 구적	-	575.30	m <sup>2</sup>							
	19	연수동	산61-19	비가림 차양	파이프,비 닐/슬레이 트	2.8*3.0, H2.3	-	8.40	m <sup>2</sup>							
	20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콘크리트	W0.5*L3.6, H0.5	-	1.80	m <sup>2</sup>							
	21	연수동	산61-19	계단 (교회주 진입)	콘크리트	4.5*9.7, H0.2	-	43.65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 종류				
6	22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기둥	콘크리트	0.35*0.35, H0.5(6EA)	-	0.74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23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철재	봉 Φ0.05, L9.7, H0.9	-	-	-										
	24	연수동	산61-19	계단 난간	철재	봉 Φ0.05, L9.7, H0.5	-	-	-										
	25	연수동	산61-19	전기둥	철재	Φ0.05, H3.1(2EA)	-	-	-										
	26	연수동	산61-19	십자가 받침대	콘크리트	1.7*1.7, H0.3	-	2.89	m <sup>2</sup>										
	27	연수동	산61-19	십자가	철재	0.3*0.4, H16.0	-	0.12	-										
	28	연수동	산61-19	십자가 바닥구 조물	벽돌쌓기, CON'C 포장	(4.4*2.1)-(1.7*1. 7), L5.9	-	6.35	m <sup>2</sup>										
	29	연수동	산61-19	창고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3.0*4.6, H2.2	-	13.80	m <sup>2</sup>										
	30	연수동	산61-19	경사로 난간	스틸	봉 Φ0.05, L22.0, H0.85	-	-	-										
	31	연수동	산61-19	볼라드	석재	0.3*0.6, H0.15(2EA)	-	0.36	m <sup>2</sup>										
	32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철재	W0.2*L4.8, H0.5	-	0.96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 종류	
6	33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철재	W0.2*L3.25, H0.5	-	0.65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34	연수동	산61-19	평의자	목재	W0.25*L3.6, H0.55	-	0.90	m <sup>2</sup>							
	35	연수동	산61-19	평상	목재	2.45*3.0, H0.25	-	1.35	m <sup>2</sup>							
	36	연수동	산61-19	돌평상	석재	1.5*1.5, H0.4	-	2.25	m <sup>2</sup>							
	37	연수동	산61-19	원형평상	목재	D1.4, H0.45	-	1.54	m <sup>2</sup>							
	38	연수동	산61-19	농구대	철재	H4.0(2EA)	-	-	-							
	39	연수동	산61-19	족구 지주대	철재	Φ0.1, H2.4	-	-	-							
	40	연수동	산61-19	창고 (비닐 하우스)	철재/목재/ 천막	8.3*6.0, H3.3	-	49.80	m <sup>2</sup>							
	41	연수동	산61-19	부속 건물	세멘블럭조 /슬레이트	2.9*1.2 , H2.0	-	3.48	m <sup>2</sup>							
	42	연수동	산61-19	건물 (교육실)	콘크리트/ 슬레이트	7.9*14.1, H1.2~2.5	-	111.39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43	연수동	산61-19	파고라	철재	3.0*6.5, H2.5	-	19.50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44	연수동	산61-19	원형 의자	목재	10EA	-	-	-							
	45	연수동	산61-19	평상	철재/목재 /PE골판지	2.5*5.0, H2.8	-	12.50	m <sup>2</sup>							
	46	연수동	산61-19	식당	샌드위치판 넬/판넬	CAD구적	-	166.07	m <sup>2</sup>							
	47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2.9*4.3, H2.2	-	12.47	m <sup>2</sup>							
	48	연수동	산61-19	배수로 (수로, 우수관)	석축, PE관	W0.6, L=16.4m(관 Ø400)	-	9.84	m <sup>2</sup>							
	49	연수동	산61-19	차양	PE골판지	2.4*7.0, H2.2	-	16.80	m <sup>2</sup>							
	50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1.8*2.3, H2.2	-	4.14	m <sup>2</sup>							
	51	연수동	산61-19	화장실	콘크리트 /PE골판지 /슬레이트	2.2*3.8, H2.2	-	8.36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6	52	연수동	산61-19	담장	철재웬스	웬스 (H=1.9), L=4.5m	-	-	-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53	연수동	산61-19	담장	철재웬스	웬스 (H=1.2), L=41.9m	-	-	-								
	54	연수동	산61-19	게이트 (아치형)	철재	2.0*0.5, H2.5	-	1.00	m <sup>2</sup>								
	55	연수동	산61-19	난간	ST	H0.55, L=6.7m	-	-	-								
	56	연수동	산61-19	계단	콘크리트	1.3*6.6*13단	-	8.58	m <sup>2</sup>								
	57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천막/ 슬레이트	5.5*3.4, H2.5	-	18.70	m <sup>2</sup>								
	58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슬레 이트	2.6*8.5, H2.2	-	22.10	m <sup>2</sup>								
	59	연수동	산61-19	창고	콘크리트/ 슬레이트	5.3*3.4, H2.1	-	18.02	m <sup>2</sup>								
60	연수동	산61-19	건물(교 육실)	콘크리트/ 슬레이트	(5.9*7.4)+(4.6*2 5.5), H2.5	-	160.96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 종류	
6	61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 /PE골판지	0.9*1.7, H2.3	-	1.53	m <sup>2</sup>	만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62	연수동	산61-19	창고	목재/ 슬레이트	2.7*3.8, H2.5	-	10.26	m <sup>2</sup>							
	63	연수동	산61-19	창고 (비닐 하우스)	철재/목재/ 천막	11.5*7.0, H3.8	-	80.50	m <sup>2</sup>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84.87	m <sup>2</sup>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블록포장	CAD 구적	-	879.50	m <sup>2</sup>							
		연수동	산61-19	바닥 포장	화강석판석 포장	CAD 구적	-	10.97	m <sup>2</sup>							
	연수동	산61-19	은행나무-4, 잣나무-66, 오동나무-5, 호두나무-2, 살구나무-5, 매실나무-2, 고욤나무-5, 벗나무-35, 라일락-6, 향나무-22, 앵두나무-10, 사철나무-22 진달래-1, 회양목-143, 철죽-1,539, 눈향나무-21, 주목-24, 동백나무-7, 측백나무-48, 쥐똥나무-1, 눈주목-1, 단풍나무-34, 보리수나무-5, 조팝나무-2 비자나무-19, 깨암나무-2, 장미-15, 가문비나무-1, 꽃사과나무-4, 대추나무-9, 목련-1, 참나무-1, 매화나무-4, 무궁화-10, 뽕나무-5, 감나무-11, 박테기나무-1, 메타세콰이어-15, 명자나무-5, 중국단풍-12, 참느릅나무-4, 사과나무-1, 배롱나무-2, 산수유나무-1, 능소화-1, 등나무-3, 복숭아나무-1, 모과나무-1, 느티나무-4, 소나무-3, 밤나무-3, 아카시아-1,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 종류	
7	64	연수동	산62	화장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3.16*3.45, H2.0	-	10.90	m <sup>2</sup>	대0000	연수구 연수동	1/1				
	65	연수동	산62	주거지	샌드위치판 넬/판넬	4.7*9.7, H2.3 (3번보일러실)	-	39.73	m <sup>2</sup>							
	66	연수동	산62	보일러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1.5*1.7, H2.3	-	5.87	m <sup>2</sup>							
	67	연수동	산62	부속 예배당	샌드위치 판넬/판넬	6.6*8.4, H2.3	-	55.44	m <sup>2</sup>							
	68	연수동	산62	연결 건물	목재	2.4*1.0, H2.3	-	2.40	m <sup>2</sup>							
	69	연수동	산62	화장실+ 보일러실	샌드위치 판넬/판넬	3.93*3.9, H2.3	-	15.33	m <sup>2</sup>							
	70	연수동	산62	창고	샌드위치 판넬/천막	8.06*5.64, H2.2	-	45.46	m <sup>2</sup>							
	71	연수동	산62	교회 예배당	샌드위치판 넬/천막	7.2*10.95, H2.3	-	78.84	m <sup>2</sup>							
	72	연수동	산62	창고	목재	2.0*1.0, H0.8	-	2.00	m <sup>2</sup>							
	73	연수동	산62	보일러실	목재,벽돌/ 천막	1.25*1.76, H2.3	-	2.20	m <sup>2</sup>							
	74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철골재, 천막	9.3*6.0+2.1*3.9, H2.3	-	63.99	m <sup>2</sup>							
	75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컨테이너	5.63*3.0, H2.3	-	16.89	m <sup>2</sup>							
76	연수동	산62	실외보 일러실	목재/샌드 위치판넬	2.1*1.5, H2.3	-	3.15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관리 종류	
7	77	연수동	산62	담장	샌드위치 판넬	담장 (H=1.5), L=7.1M	-	-	-	대0000	연수구 연수동	1/1				
	78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샌드위치 판넬/천막	8.53*6.0, H2.3	-	51.18	m <sup>2</sup>							
	79	연수동	산62	출입문	샌드위치 판넬	문 (H=1.6), L=4.0M	-	-	-							
	80	연수동	산62	담장	메쉬웬스	웬스 (H=1.6), L=91.62M	-	-	-							
	81	연수동	산62	차고	샌드위치 판넬/판넬	5.0*3.7	-	18.50	m <sup>2</sup>							
	82	연수동	산62	집 정문	샌드위치 판넬	문 (H=1.8), L=1.0M	-	-	-							
	83	연수동	산62	담장	샌드위치 판넬	담장 (H=1.8), L=5.63M	-	-	-							
	84	연수동	산62	축사	목재	1.5*4.3 + 0.5*1.0, H1.2	-	6.95	m <sup>2</sup>							
	85	연수동	산62	건사	샌드위치판 넬/판넬	1.2*2.0, H1.0	-	2.40	m <sup>2</sup>							
	86	연수동	산62	건사경 계	메쉬웬스	웬스 (H=1.2), L=5.5M	-	-	-							
87	연수동	산62	부속생 활실	컨테이너	3.4*3.0, H2.5	-	10.20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7	88	연수동	산62	보일러 실	샌드위치판 넬	3.25*0.7	-	2.28	m <sup>2</sup>	대0000	연수구 연수동	1/1				
	89	연수동	산62	부속 생활실	샌드위치판 넬/판넬	4.0*3.0, H2.5	-	12.00	m <sup>2</sup>							
	90	연수동	산62	창고	샌드위치 판넬	3.0*2.5, H1.5	-	7.50	m <sup>2</sup>							
	91	연수동	산62	십자가 철탑	철탑	2.0*2.0, H8.0	-	4.00	m <sup>2</sup>							
	92	연수동	산62	담장	함석웬스	담장 (H=1.6), L=7.3M	-	-	-							
	93	연수동	산62	울타리	메쉬웬스	웬스 (H=1.2M), L=37.88M	-	-	-							
	94	연수동	산62	차양 (통로)	목재, 플라 스틱골판	CAD 구적, H2.3	-	60.85	m <sup>2</sup>							
	95	연수동	산62	차양 (건물 입구)	목재, 플라 스틱골판	5.63*1.2, H2.3	-	6.76	m <sup>2</sup>							
		연수동	산62	바닥	CON'C 포장	CAD 구적	-	198.05	m <sup>2</sup>							
		연수동	산62	바닥	블럭포장	CAD 구적	-	56.57	m <sup>2</sup>							
		연수동	산62	건사 바닥	블럭포장	CAD 구적	-	11.34	m <sup>2</sup>							
	연수동	산62	살구나무-1, 고욤나무-2, 개나리-16, 목련나무-1, 매화나무-20, 수국나무-1, 사철나무-1, 복숭아나무-1, 모과나무-1, 뽕나무-2, 사찰나무-1, 매실나무-7, 사과나무-1, 포도나무-4, 배나무1, 뽕나무-52, 은행나무-2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8	96	연수동	산64-2	창고	파이프/천 막	6.0*5.8, H2.0	-	34.80	m <sup>2</sup>	대00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97	연수동	산64-2	창고	파이프, 철망 /슬레이트	4.8*4.8, H1.7	-	23.04	m <sup>2</sup>							
	98	연수동	산64-2	울타리	철재	웬스 (H=1.1~1.3), L=-40.0M	-	-	-							
		연수동	산64-2	바닥 포장	CON'C포 장	CAD 구적	-	77.63	m <sup>2</sup>							
		연수동	산64-2	바닥 포장	블록포장	CAD 구적	-	146.84	m <sup>2</sup>							
		연수동	산64-2	은행나무-9, 두릅나무-20, 사철나무-4, 소나무-25, 눈주목-14, 빛나무-26, 단풍나무-14, 감나무-7, 향나무-2, 살구나무-3, 목련나무-4, 가중나무-2 두충나무-1, 함박꽃나무-1, 앵두나무-1, 개나리-28, 회양목-9, 라일락나무-1, 자두나무-1, 복숭아나무-4, 뽕나무-1, 메타세콰이어-5, 매실나무-41												
9	99	연수동	산64-3	주거지 및 사찰	목재 /슬레이트	CAD 구적	-	164.29	m <sup>2</sup>	김00	인천 연수구 연수동	1/1				
	100	연수동	산64-3	건물외 벽체	목재	L=6.9	-	-	-							
	101	연수동	산64-3	차양	목재 /슬레이트	3.0*6.9, H2.2	-	20.70	m <sup>2</sup>							
	102	연수동	산64-3	창고문	ST	Φ0.025, L2.5, H1.3	-	-	-							
	103	연수동	산64-3	화장실	시멘트블럭 /슬레이트	2.0*2.2, H2.3	-	4.40	m <sup>2</sup>							

일련 번호	물건 번호	소재지		물건			수량 (면적)		단위	소유자			이해관계인			비고
		동	지번	종류	구조	규격	공부	편입		성명	송달주소	지분	성명	주소	권리 종류	
9	104	연수동	산64-3	석등	석재	0.6*0.6, H1.8	-	-	-	김00	인천시 연수구 연수동	1/1				
	105	연수동	산64-3	계단 (문수압 입구)	화강석 및 블럭포장	W1.5, L30.0, H0.5M	-	45.00	m <sup>2</sup>							
	106	연수동	산64-3	입구표 지석	화강석	1.2*1.3, H3.0	-	1.56	m <sup>2</sup>							
	107	연수동	산64-3	계단 (표지석 앞)	화강석 및 블럭포장	W3.0*L1.8. H0.5M	-	5.40	m <sup>2</sup>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블럭포장	CAD 구적	-	125.80	m <sup>2</sup>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화강석판석 포장	CAD 구적	-	3.70	m <sup>2</sup>							
		연수동	산64-3	바닥 포장	CON'C 포장	CAD 구적	-	55.40	m <sup>2</sup>							
		연수동	산64-3	잣나무-43, 측백-22, 홍자단-3, 소나무-2, 두릅-10 동백나무-2, 사철나무-2, 모과나무-11, 뽕나무-3 앵두나무-1, 감나무-4, 블루베리-2, 칠죽나무-4 주목-1, 사철나무-232, 재피나무-1, 회양목-16, 장미-4, 황금사철-40, 엄나무-3, 뽕나무-4, 목련-4 보리수-1, 개나리-7, 나무수국-6, 살구나무-1, 단풍나무-3, 밤나무-3, 꽃사과나무-1					주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55호

## 2019년 『시민 공원 사진가』 모집 공고

우리 시에서는 공원 및 사진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시민을 대상으로 공원의 주요 풍경과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 등을 시민이 직접 사진으로 기록하고, 공원 내 각종 행사 등 시민 참여형 문화 행사에 인천시 명예 사진가로 활동하는 「시민 공원 사진가」를 모집·운영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19. 1. 15.

**인천광역시장**

### □ 「시민 공원 사진가」란?

- 공원과 사진에 관심과 재능이 많은 시민이 자원봉사 방식으로 자신의 재능을 기부하여 “시민 공원 사진가”로 활동하며 공원의 주요 풍경과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 등을 직접 사진으로 기록하여 공원의 아름다움을 널리 알리고,
- 공원 내 각종 시민 참여형 문화행사에 사진가로 활동하는 등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공원 문화 창출에 동참하는 시민 사진가를 말합니다.

## □ 모집 개요

- 모집 기간 : 2019. 1. 15. ~ 2019. 1. 29.(15일간)
- 모집 인원 : 00명
- 모집 대상
  - 인천시정과 시민 참여형 공원 문화 창출에 관심이 많으며, 사진에 열정이 높은 시민으로서, 월 1회 이상 사진 강좌와 정기 및 수시 사진 촬영 활동이 가능한 자

## □ 운영 방식 및 내용

- 운영방식: 재능 기부형 자원봉사
  -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전문 작가의 재능기부를 통한 사진 지도 교육
  - 공원별 주요 풍경 및 시설에 대하여 사계절 변화하는 모습과 각종 시민참여 행사 등 촬영
  - 권역별 기본 활동 공원을 지정 운영하고 공원의 변천하는 역사 등 기록



### ○ 운영내용(역할)

- 전망 좋은 곳, 견고 싶은 길 등 시민들이 즐겨 찾는 명소 발굴
- 월 1회 이상 정기출사 및 공원 내 행사 시 수시 출사 후 사진 제출
- “시민 공원 사진가” 전용 인터넷 카페 운영

※ 붙임 시민공원사진가 회칙 참조

**□ 지원 사항**

- 정기출사 시 전문 사진작가의 사진 지도
- 정기 출사 활동시간 자원봉사 실적 등록
- 사진작업 품평 및 간담회, 전시회 등을 위한 공간 제공

**□ 신청방법**

- 제출 서류
    1. 지원 신청서 1부
    2. 공원 및 사진 관련 활동 및 주요경력 증명서 사본(해당자만 제출)
  - 신청 방법 : 전자우편 접수(2019.1.29. 마감)
    - 주 소 : a9519003@korea.kr
  - 최종 선정자 발표 : 2019. 2. 8.(금) 17:00
    -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 분야별 정보 / 환경 / 공원녹지 / 공지  
(<http://field.incheon.go.kr/board/2999>)
    - 개별 통보(휴대폰 문자 알림)
- ※ 선정자 발표일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공원녹지과(전화 032-440-36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민공원사진가 회칙**

# 시민 공원 사진가 지원 신청서

## 1. 인적사항

성명		생년월일(성별)	(남, 여)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직업			
활동가능시간	<input type="checkbox"/> 주중 <input type="checkbox"/> 주말 <input type="checkbox"/> 상시		

## 2. 주요경력(관련분야 전공 및 공모전 수상 경력 등)

기 간	경 력	기 간	경 력

## 3. 사진 관련 교육이수 내용

교육기간	교육과정명	시행기관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4. 개인 SNS 활동(활동하시는 분만 기재)

SNS	URL	비고
블로그		
페이스북		
기타(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 5. 희망 활동 권역

권역명	대상공원	희망순위
인천대공원 권역	인천대공원, 중앙공원 등	
월미공원 권역	월미공원, 문학공원, 청량공원 등	
계양공원 권역	계양공원, 연희공원 등	
송도신도시 권역	송도 센트럴파크, 해돋이공원, 달빛공원 등	

## 6. 지원동기 (자유롭게 기술해 주세요)

2019. 1. .

인천광역시장 귀하

##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 회칙

2018.12.01제정

### 제1조 (명칭)

모임의 명칭은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 라 한다. (이하 모임)

### 제2조 (목적)

모임은 다음과 같은 목적을 갖는다.

- ① 인천광역시 관내에 조성된 공원의 역사(변천 과정)를 사진으로 기록하는 것을 주목적으로 한다.
- ② 사진가의 창의적이고 수준 높은 시각으로 공원을 촬영하여 사진기록물을 인천시에 기부한다.
- ③ 사진가는 많은 시민으로부터 공감과 찬사를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사진을 성심성의껏 담아 “대한민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전시회”를 열 수 있도록 작품 촬영에 임한다.

### 제3조 (모임의 구성)

모임의 구성은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로 등록된 사진가와 인천시로 구성된다.

### 제4조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와 인천시의 역할)

제2조 ①항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① 사진가는 인천시에서 관리하는 공원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출사, 또는 개인 출사를 하여 만든 파일 원본을 아무 조건 없이 시청에 제공한다.
- ② 사진가는 이 모임의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카페를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③ 사진가는 공원의 변화를 기록하고 사진 전시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임원진 및 이모임 회원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조한다.
- ④ 인천시는 사진가가 자유롭게 사진을 촬영할 수 있는 환경(장소, 강사, 시간 등)을 제공한다.
- ⑤ 인천시는 사진가가 촬영한 사진을 취합, 보존, 기록하고, 사진가의 자원봉사 실적으로 충실히 등록 관리 한다
- ⑥ 인천시는 취합된 사진을 연 1회 이상 전시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한다.

### 제5조(활동)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로 등록 후 다음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① 1년에 6회 이상 사진 자료를 원본 파일로 제출한다.
- ③ 월 1회 진행되는 정기 모임에 6회 이상 참여한다.

#### 제6조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의 자격 유지 및 상실)

- ① 사진가의 자격은 2년간 유지되며, 제5조의 활동 요건 중 한 가지 이상 충족하지 못할 시 그 자격은 상실된다.
- ③ 사진가 스스로 자격상실을 원하는 경우엔 즉시 이를 수용한다.
- ④ 등록 후 6개월간 원본 사진 제출 실적이 없거나 임원진에 그 이유를 소명하지 않으면 자격을 상실한다.
- ⑤ 자격 상실된 사진가는 발급받은 사진가 명찰을 즉시 우편 또는 방문 반납해야 한다.

#### 제7조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의 권리와 의무)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는 다음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① 모든 사진가는 정기모임에 참석하여 의견을 표현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 ② 사진가는 모임의 각종 직책에 선임될 수 있다.
- ④ 사진가는 모임에서 주최하는 작품 전시회에 우선으로 참여할 수 있다.
- ⑤ 사진가는 모임의 회칙을 준수하고, 이의사항은 정기모임시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8조 (임원)

이 모임은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두고 운영한다.

- ① 회장 1인과 총무 1인 선임 사진가 1인을 선발한다.
- ② 회장은 대외적으로 모임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원들의 결속을 다지는 구심점이 된다.
- ③ 총무는 모임의 사무 및 기타 주요 업무를 총괄하여 집행하고 회장 유고 시 회장의 임무를 대행한다.
- ④ 위 임원의 직책과 수는 모임의 규모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 ⑤ 회장의 피선거권은 등록사진가에게만 있으며 12월에 있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⑥ 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 ⑦ 선임 사진가는 이 모임에 참석한 회원 중 교육이 필요한 회원을 상대로 교육을 하며 사진 전시회 및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 활동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멘토링을 한다.
- ⑧ 모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 제10조 (징계)

- ① 모임 또는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 ②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하여 법적 처벌을 받은 경우
- ③ 정관 및 운영진의 의결사항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④ 사회 통념상 부적절한 내용을 카페에 올리거나 위화감을 조성하는 경우

- ⑤ 모임의 운영 및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의 정상적인 활동을 위해 하거나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
- ⑥ 모임에서 득한 개인정보를 유출, 영리로 사용하여, 그 정도가 사회적 규범의 범위를 넘어갈 경우 자격상실과 함께 민, 형사상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
- ⑦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는 정치에 관련한 의견, 비평, 참여를 할 수 없다.
- ⑧ 징계 절차는 경고, 제명으로 하되 운영진과 인천시청과의 회의로 결정한다.

#### 제11조 (정기모임)

정기모임은 다음과 같이 진행한다.

- ① 매월 첫 번째 토요일에 정기모임을 진행한다.
- ② 날짜, 시간, 장소는 시청과 임원진이 상의하여 카페 및 단독방에 알린다.
- ③ 위 사항은 계절과 기후 때문에 변경할 수 있다.

#### 제12조 (전시회와 사진 선별 기준)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의 활동 자료를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인천 예술회관과 시청 및 관내 공원에서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 전시회』를 개최한다.

- ① 1년 동안 받은 자료 중에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의 사진을 우선 선별해 전시한다.
- ② 전시회 사진의 선별은 사진 전문가와 인천 시청 관계자의 참여로 이뤄진다.
- ③ 전시회 사진을 제작할 시 도록을 함께 제작한다.
- ④ 전시회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인천시청과 인천 시민공원 사진가는 최선을 다한다.

#### 제13조 (자원봉사 실적)

이 모임의 사진가는 다음과 같이 자원봉사 실적을 인정받는다.

- ① 정기모임에 참석한 사진가에게 3시간의 시간을 인정한다.
- ② 관내 1개 공원에서 3장 이상 기록하여 제출한 사진가에게 자원봉사 시간을 3시간 인정한다.
- ③ 전시회 진행 시 자원봉사를 신청한 참여자는 실소요 시간을 인정한다.

#### 제14조 (부칙)

모임 정관의 수정, 변경은 운영진 회의를 거쳐 수정 보완을 하고 회칙이 개정되었을 경우 회원에게 이를 알린다.

인천광역시공고 제2019-60호

## 참여 감정평가업자 모집(수정) 공고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하여 공익사업 등의 시행에 따른 참여 감정평가업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수정) 공고 합니다.

2019 년 1 월 11 일

인 천 광 역 시 장

□ 공고기간 : 2019. 1. 11.(금) ~ 2019. 1. 17.(목)

□ 공고내용

가. 참여사업

연번	사업명	규 모	추 정 감정가액	의뢰부서	선정 수
1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종전, 종후자산 평가	○ 위치: 미추홀구 송의동 109-119 일원 ○ 감정평가대상 - 계획세대수: 1,705세대, 부대복리시설 등	4,800억원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2개업자
2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 종후자산 평가	○ 위치: 남동구 구월동 341-12 일원 ○ 감정평가대상 - 계획세대수 122세대, 오피스텔 38세대, 상가 등	470억 원	남동구 (공동주택과)	1개업자
3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수용재결 평가	○ 위치: 부평구 십정동 186-423일원 ○ 감정평가대상 - 토지 122필, 지장물 146건 영업권 32건	394억 원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	2개업자

※ 발주부서의 사정에 따라 참여사업 규모에 대한 변경(취소 등 포함)이 발생할 수 있음.

※ 해당사업 참여제한(기(既)참여 등) 감정평가업자

- 「우정아파트 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종전, 종후자산 평가: 『하나』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2차」 수용재결 평가: 『나라』, 『태평양』, 『에이원』

### 나. 신청자격

- ①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신고를 한 감정평가사와 같은 법 제29조에 따라 설립 인가를 받은 감정평가법인
- ②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적합한 감정평가업자
- ③ 공고일 현재 인천지역 소재 감정평가업자(주·분사무소 포함)
- ④ 소속 감정평가사 수 : 공고일 현재 3인 이상(심사자 포함 자격취득 이후 평가 실무경력 1년 이상 감정평가사)

다. 신청기간 : 2019. 1. 11. ~ 2019. 1. 17.(18:00)

라. 신청장소 :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시청 내 IDC건물 1층)

### 마. 제출서류

- ① 감정평가 참여 신청서(서식 1)
- ② 법인등기·인가증(공고일 기준 발급), 사업자등록증, 법인 설립인가서
- ③ 업무제안서(서식 2)
- ④ 업무제안서의 수행능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주의사항)**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계획 작성 시 해당 감정평가업자(감정평가사 이름 포함)를 표시하거나, 식별할 수 있는 글자, 기호, 표식, 문양 등 일체를 기재하지 않도록 주의 (기재 시 선정에서 배제되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업무실적)** 대상사업 1회 이상 참여 감정평가업자 중 감정평가사 협회에서 발행한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제출(\*목록은 별도 제출)
    -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 기타 유의사항

가. 감정평가업자 선정 :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 위원회」 심의 선정(발주부서 개별통지)

- 나. 책임 감정평가사는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공고일 현재 감정평가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업무제안서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사후업무지원 서비스와 감정평가 수행 계획 작성 시 주의사항 준용
  - 감정평가 수행계획서 및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계획은 구분 하여 각각 2매 이내 구체적 작성
- 라. 업무제안서 내용 및 제출 증빙자료가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불이익 처분을 받을 수 있음
- 마. 선정 후 계약체결 이전 부적격자 판명 또는 불가피한 사유(부도 등)로 인하여 사업을 이행할 수 없을 경우 다음 순위 자가 선정업자로 결정
- 바. 참여 신청접수(우편물 접수포함)는 2019. 1. 17.(목) 18:00까지 인천광역시청 토지정보과 접수 분에 한하여 유효 함
- 사.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서류에 허위사실 및 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감정평가업자의 책임 임
- 아. 감정평가 참여사업의 세부내용은 아래 발주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도관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 미추홀구 도시정비과 (☎880-4482)
  - 우정아파트1동2동 가로주택정비사업: 남동구 공동주택과(☎453-6422)
  - 백운2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2차): 인천광역시 건설심사과(☎440-3763)
- 자. 기타 사항은 인천광역시 토지정보과 부동산평가팀(☎ 032-440-459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서식 1]

## 감정평가업자 참여 신청서

□ 참여 사업 :

□ 감정평가업자 :

구 분	내 용	비 고
감정평가업자		
주 소		
대 표 자		
감정평가사 수		
전 화 / FAX		
설 립 일		
기 타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 상기 법인은 「인천광역시 감정평가업자 선정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성실과 신의로 감정평가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같은  
조례 제4조 규정에 의거 “참여 신청서”를 제출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감정평가법인(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서식 2)

## 업 무 제 안 서

□ 참여사업 :

감정평가업자		사무소 소재지	
감정평가사 수 (명)	개인		
	법인	주사무소	
		분사무소	
수행능력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속 감정평가사 현황(협회: 법인소속확인서)</li> <li>○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협회: 경력증명서)</li> <li>○ 평가실적 : 공고일 이전 최근 3년 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및 증빙자료(작성 예시 참조)</li> <li>※ 협회: 감정평가업무실적 보고 확인원 대체 가능</li> <li>○ 보험 등 가입여부(협회: 공제사업가입증명서, 보증보험증권 등)</li> <li>○ 행정처분(과태료, 과징금, 주의, 경고 등) 및 소속 감정평가사 징계여부 : 공고일 이전 최근 2년간(협회: 징계유무확인서 등)</li> <li>○ 사후 업무지원 서비스 등 : 별지 2장 이내로 구체적 작성</li> </ul>		
감정평가 수행계획	○ 참여사업에 대한 평가계획, 평가일정 등 : 별지 2장 이내 구체적 작성		
기타 의견	※ 소유자 추천 등 제외신청 사유 기재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이 작성하였으며, 사실과 다를 경우 인천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사업 및 민·형사상에 대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 할 것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 ○ 감정평가법인(인)

※ 본 양식에 의하여 작성이 곤란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 평가실적 (최근 3년간 1건당 100억 원 이상 감정평가금액)

연번	사 업 명	발주부서	감정평가서 제 출 일	감정평가금액	비 고
총계					
1					
2					
3					

※ 평가실적은 공고일 이전 최근 3년간 감정평가금액이 1건당 100억 원 이상 국가(공공기관 포함), 지방자치단체(지방공기업 포함)가 시행한 사업임.

※ 평가실적 합계는 상단 총계 란에 반드시 기재

## 참여 감정평가사 평균 실무경력(자격취득 이후)

연번	성 명	생년월일	자격취득일	감정평가 실무경력		비 고
				근무기관	기 간(년 월)	
1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2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3					~ (년 월)	소계 년 월
					~ (년 월)	
					~ (년 월)	
계	평균 실무경력 :    년    월					

※ 참여하는 감정평가사 전원을 기재하며, 평균 실무경력은 \*자격취득일 이후 참여 감정평가사의 실무경력을 합한 후 총 참여 감정평가사수로 나눈 값으로 한다.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16호

##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공고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위반차량 운전자에게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등)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 사전통지서를 발송 하였으나, 수취인불명, 주소불명, 이사감,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처리 되어 송달이 불능한바,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 및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장

1. 건 명 : 도로법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 반송분에 대한 공시송달
2. 근 거 :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지방세기본법 제33조
3. 공고대상 :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 2019.01.14. ~ 2019.01.28.(15일간)

#### 5. 공고내용

공시송달 대상자는 도로법 제77조 및 제11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전 사전통지 대상자임을 알려드립니다. 의견제출 기간이내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는 경우 질서행위규제법 제18조에 의거 부과금액의 20%를 감경 받을 수 있으며, 질서위반 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에 해당(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 3급 이상 장애인 및 상이유공자, 미성년자 중에 체납과태료가 없는 자에 한함) 되시면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관련자료를 제출하시어 부과금액의 50%를 감경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만약, 과태료 부과와 관련하여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제출 기한이내에 의견제출서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제출이 없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6. 납부안내

가. 자진납부기한 : 2019년 02월 25일

나. 납부방법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에서 고지서를 발부 받아 관내 시중은행, 전국 우체국, 전국 농협에 납부할 수 있고, 인터넷 납부방법은 인천광역시 전자고지 납부시스템(<http://etax.incheon.go.kr>)에 접속하시어 납부세외수입 선택 ⇒ 주민번호 입력조회 ⇒ 해당 과태료 클릭 ⇒ 가상계좌, 신용카드 선택하여 납부하시고, 납부자 전용 가상계좌(인터넷 뱅킹, 텔레뱅킹, CD/ATM기 등)에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7. 의견제출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기일까지 팩스(032-440-8818), 우편(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직접방문 등의 방법으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의견제출 기한 : 2019년 02월 25일

8. 기타 자세한 내용

- 주 소 : 인천 미추홀구 한나루로 607(도화동421-19)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 문의 전화 : 종합건설본부 도로운영팀 과태료 수납담당(032-440-5341)

붙임 도로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1부. 끝.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공시송달 대상

연번	과태료대상 번호	대상자	주민등록주소	우편물 송달주소	단속일자	단속장소	단속내용	단속차량	처분 과태료	반송사유	비고
1	000833	변**	인천광역시 서구 청라커널로 ***.***동 ***호 (청라동, 청라롯데캐슬)	과 동	2018.11.09. 10:41.	서구 연희동 봉수대로	폭0.15미터 초과 (폭2.65미터)	서울07나5906	300,000	반송 (폐문부제)	
2	000853	김**	인천광역시 서구 삼곡로 ****길 17. *동 ****호 (삼곡동, 동남아파트)	과 동	2018.11.27. 09:50.	중구 향동 인종로(향동 과적검문소)	축하중1.70톤 초과(3축하중11.70톤)	서울06하6465	500,000	반송 (폐문부제)	
3	000854	박**	경기도 김포시 걸포1로 **.***동 ****호 (걸포동, 오스타파라곤)	과 동	2018.12.1. 10:06.	서구 백석동 봉호대로	폭0.27미터 초과 (폭2.77미터)	부산95아6062	300,000	반송 (폐문부제)	
4	000856	윤**	경기도 양주시 옥정동로 ***. **동 ***호 (옥정동, 옥정천년나무8단지)	과 동	2018.12.04. 20:20.	중구 향동 인종로(향동 과적검문소)	폭0.69미터 초과 (폭3.19미터)	인천98자2505	1,000,000	반송 (폐문부제)	

인천광역시종합건설본부공고 제2019-17호

##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안내 및 징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공고 제2018-167호(2018.4.30.)로 환지처분 된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등기 우편)하였으나, 우편물 반송(폐문부재 등)으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장

1. 공 고 명: 오류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 청산금 교부 안내 및 징수고지서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19. 1. 14. ~ 2019. 1. 28.(15일간)
3. 공고방법: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및 인천광역시 시보
4. 공고대상

연번	청산금징수대상토지			이름	청산금징수액 (원)	주 소	우편물 수령여부	비 고
	동	종전지번	확정지번					
1	오류동	산35	오류동 1747-9	장성종	24,204,010	충남 아산시 도고면 도고면로 110번길 24(가곡리 265-14)	반송	폐문부재
2	오류동	348-1	오류동 1759-7	김성식	11,231,620	인천 서구 검단로167-16, B동 102호 (오류동, 오류빌라)	반송	폐문부재
3	오류동	348-1	오류동 1759-7	정은순	19,084,860	인천 서구 검단로167-16, B동 201호 (오류동, 오류빌라)	반송	폐문부재
4	오류동	348-1	오류동 1759-7	민화식	25,530,230	인천 서구 검단로167-16, C동 201호 (오류동, 오류빌라)	반송	폐문부재
5	오류동	348-1	오류동 1759-7	정은희	24,470,390	인천 서구 검단로167-16, C동 401호 (오류동, 오류빌라)	반송	폐문부재

5. 연 체 료: 징수청산금은 2019.1.31.까지 미납시 연체이자(연12~15%)를 가산하여 징수
6. 관련법규: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52조(청산금), 제68조(청산금), 인천광역시 오류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 시행조례
7. 문 의: 인천광역시 종합건설본부 토목부 지역개발팀(032-440-5318)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7호

##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공시송달 공고

아래의 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의 예정자로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를 우편 발송하였으나 주소불명 및 폐문부재로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당사자는 청문일자에 출석하거나 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한 과징금을 신청할 수 있으며, 과징금 부과와 관련된 사항은 해당법령에 따라 처리함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월 10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9년 1월 14일 ~ 2019년 1월 28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9년 1월 29일 ~ 2019년 2월 7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명칭)	(주)동서남글로벌 대표 정성호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천화전유치원과 ‘학교급식(수산물류) 구매’ 계약을 체결(2018.8.17.)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인천화전유치원 외 2교 계약 미이행)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화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8490
	일 시	2019. 2. 11.(월) 11:00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복지재정과 앞 112호 예산협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복지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성 명		원 숙 연, 이 정 효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9년 1월 14일 ~ 2019년 1월 28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9년 1월 29일 ~ 2019년 2월 7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명(명칭)	㈜아라맛 대표 송누리				
	주소	인천광역시 중구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천구월유치원과 ‘학교급식(수산물류) 구매’ 계약을 체결(2018.8.28.)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인천구월유치원 외 2교 계약 미이행)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화수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8490
	일시	2019. 2. 11.(월) 13:00				
	장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복지재정과 앞 112호 예산협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복지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성명		원숙연, 이정효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9년 1월 14일 ~ 2019년 1월 28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9년 1월 29일 ~ 2019년 2월 7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명칭)	바다드림 대표 이은지				
	주 소	인천광역시 중구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인천고잔고등학교와 ‘학교급식(수산물류) 구매’ 계약을 체결(2018.9.18.)한 이후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아니함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화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8490
	일 시	2019. 2. 11.(월) 14:00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복지재정과 앞 112호 예산협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복지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성 명		원 속 연, 이 정 효				

## 인천광역시교육감

- 공고 기간 : 2019년 1월 14일 ~ 2019년 1월 28일(14일)
- 의견 준비기간 : 2019년 1월 29일 ~ 2019년 2월 7일(10일)
- 처분사전통지(청문실시통지) 내용

1. 예정된 처분의 제 목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2. 당사자	성 명(명칭)	임도빈				
	주 소	인천광역시 서구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부개고등학교 '공유재산(자판기) 사용·수익허가' 입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낙찰(개찰: 2018.10.31.)된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함					
4. 처분 하고자 하는 내용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일로부터 1개월 이상 2년 이하)					
5.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2]					
6. 청문실시	기관명	인천광역시교육청	부서명	복지재정과	담당자	김화수
	주 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구월동 1137)			전화번호	032-420-8490
	일 시	2019. 2. 11.(월) 15:00				
	장 소	인천광역시교육청 본관1층 복지재정과 앞 112호 예산협의실				
	주재자	소속 및 직위	복지재정과 경리담당사무관, 재산관리담당사무관			
성 명		원 숙 연, 이 정 효				

인천광역시교육감

## 〈청문시 유의사항〉

1. 귀하는 청문일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할 수 있으며, 참고인·감정인 등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만일,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귀하께서 의견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출석하여 진술한 것으로 봅니다.
2. 귀하는 행정절차법 제30조의 규정에 따라 청문의 공개를 신청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일 전 까지 청문주재자에게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른 공개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동법 제32조에 규정에 따라 별지 제16호 서식에 따라 청문의 병합 또는 분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또한, 청문주재자에게 공정한 청문을 진행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경우 귀하는 행정청에 별지 제14호 서식에 따른 기피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4. 귀하께서 정당한 사유없이 청문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별지 제11호 서식에 의한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문을 마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하거나 의견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청에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5. 귀하는 청문이 끝날 때까지 「행정절차법」 제37조에 따라 당해 처분의 조사결과에 관한 문서 그 밖에 당해 처분과 관련되는 문서의 열람 또는 복사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6.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인천광역시교육청 복지재정과 (☎032-420-8490, 김화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b>과징금 부과 신청서</b>		
계 약 명 (입찰명)				
신 청 인	성 명 (대표자명)		주민(사업자) 등록번호	
	상 호 (법인명)		전화번호	
	주 소 (소재지)			
신청 사유				
<p>위와 같이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갈음하는 과징금 부과를 신청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19. . .</p> <p style="text-align: center;">신청인 <span style="float: right;">인</span></p> <p style="text-align: center;">인천광역시교육감 귀하</p>				
첨부서류	과징금을 신청하게 된 원인과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예 규

## 인천광역시예규(발령)

제 명 :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정

개정이유

상위법률 개정(법률 제14718호, 2017. 3. 21. 일부개정되어 2017. 9. 22. 시행)에 따라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변경하여 인천광역시 스마트도시 대행사업의 계약, 사업관리, 정산에 대한 합리적인 기준 정비로 객관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고, 스마트도시 대행사업에 대한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른 투명하고 공정한 예산 집행을 도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상위법률 개정에 따라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유비쿼터스”를 “스마트”로 변경함(제명, 제1조, 제2조, 제3조 및 제7조)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인천광역시장 박남춘

201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예규 제466호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 일부개정규정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인천광역시 유시티 대행사업 관리 지침을” “인천광역시 스마트 도시 대행사업 관리 지침”으로 한다.

제1조 중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2조 중 “유시티”를 “스마트도시”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유시티 사업: 「유비쿼터스도시의 건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6호의 유비쿼터스도시건설사업”을 “스마트도시 사업: 「스마트 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의 스마트도시건설 사업”으로 한다.

제7조제1항, 제2항 및 제4항 중 “유시티 사업”을 각각 “스마트도시 사업”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입법예고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1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 1. 7.

## 인천광역시장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가. 다양한 계층의 생활체육 인구가 증가하여 수요를 충족시키고자 설치한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에 대하여
- 나. 체육시설 이용료 및 전용사용료를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제도적이고 안정적인 요금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함.

### 2. 주요내용

- 가.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명칭 및 위치 관련 내용을 정비함(안별표 1)
- 나.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전용사용료 내용을 정비함(안 별표 2)
- 다. 남동다목적 실내체육관의 체육시설이용료 내용을 정비함(안 별표 3)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참조 : 체육진흥과, 전화 : 032-440-4093, 이메일 [jinpan55@korea.kr](mailto:jinpan5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및 전화번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20호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20	남동체육관 /남동아시아드 럭비경기장	체육관	주경기장	체 조 · 럭 비 배드민턴 · 탁구 각종 경기 및 행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540
			보조경기장		
		럭비장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다목적실내체육관					

별표 2의 남동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남동체육관	주경기장 (보조경기장)	주간	200,000 (130,000)	300,000 (200,000)	500,000 (300,000)	750,000 (400,000)
	다목적실내 체육관	주간/야간				

별표 3의 체육관란을 다음과 같이 한다.

체육관	송림체육관	1회 3시간	일반 3,300 군인· 청소년 어린이 1,100	일반 2,600 군인· 청소년 어린이 900
	계양체육관			
	남동체육관			
	강화고인돌체육관			
	선학체육관			
	인천장애인국민체 육센터			
	장애인체육관			
	다목적실내체육관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2호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를 폐지함에 있어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입법예고

## 1. 폐지이유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의 내용이 2019년 1월 7일 공포된 「인천광역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에 포함됨에 따라 존속 필요성이 없어져 이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을 폐지 함.

## 3. 의견제출

- 이 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광역시장(참조 : 안전정책과,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29, 팩스 : 032-440-8845, 전자메일 : lkjong71@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 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4. 자치법규안 : 별첨

인천광역시규칙 제 호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 폐지규칙(안)

인천광역시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규칙을 폐지한다.

부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3호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 1. 14.

## 인천광역시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과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 및 위원회 기능 추가 등 생활임금 운영을 위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생활임금 제도의 목적과 취지에 적합하게 개념 정비(안 제1조~제2조)

나. 「공무원 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시,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까지 생활임금 적용대상 확대(안 제3조)

다. 생활임금 결정기한 명시(안 제4조)

라. 생활임금위원회 심의대상 조항 신설(안 제5조)

마. 2019년 1월 1일부터 소급 시행(부칙)

####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나 개인은 2019년 2월 8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참조 : 일자리경제과, 전화 : 032-440-4274, 전자우편 : jjk0775@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사항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생활임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인천광역시 소속”을 “기존 최저임금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 하여”로 한다.

제2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정의)** ② “산하기관”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시가 설립한 지방 공사·공단, 「지방자체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아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대상)** 생활임금의 적용대상은 「공무원보수규정」 및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산하기관 소속의 직접 고용 근로자로서 한다. 다만, 공공근로, 지역공동체 사업 등과 같이 국비 또는 시비 지원으로 일시적으로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한다.

제4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조(생활임금의 결정 등)** ③ 시장은 제5조의 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생활임금을 매년 9월 10일까지 결정하여야 하며, 위원회가 기한 내에 생활임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경우에는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5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생활임금위원회 설치 등)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생활임금의 수준 및 산정근거 등에 관한 사항. 2. 생활임금 적용대상의 범위 및 단계적 적용에 관한 사항. 3. 생활임금제도의 운영실태 및 개선사항 발굴을 위한 연구 및 건의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생활임금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부 칙

이 조례는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인천광역시입법예고 제2019-4호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 인천광역시장

###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 1. 개정사유

- 가.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 외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9조에 의한 자치사무로써 건축의 공공적 가치구현을 위해 조례(목적)을 개정하여 운용하고자 함
- 나. 여성가족부장관이 「특정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성평등 실현을 위한 「건축기본조례」 일부 개정을 권고함에 따라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물을 이용하는 다양한 시민의 공간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 모색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고, 시민 참여 시 성별·연령별 고른 참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다. 「건축기본법」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과 「인천광역시 건축기본계획」에 따라 분야별로 운영 중인 ‘민간전문가 참여제도’의 취약한 운영근거(정의, 업무범위 등)을 조례로 명확히 규정하여 ‘공공건축가 제도’에 대한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목적(안 제1조)
-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 외의 인천광역시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조)

- 나.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문화진흥관련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 참여 방안이 포함되도록 개정 (안 제4조제6호)
- 다. 건축기본계획 수립 시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신설 (안 제4조제9호)
- 라.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 등 규정 신설 (안 제11조)
- 시장이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등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를 위촉·운영
  - 비상근직 근무, 임기 2년(연임 가능)
  - 인천총괄건축가 업무범위
    - 시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업무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 총괄건축가 사무 지원조직 신설 및 운영
  - 정보·자료의 유출금지, 시 공공사업 참여제한
  - 인천총괄건축가 업무방법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해 운영 가능
- 마. 민간전문가(“공공건축가”)의 명칭 및 업무범위 등 규정 신설 (안 제12조)
- 인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민간전문가를 위촉·운영
  - 공공건축가 임기 2년(연임 가능)
  - 공공건축가 업무범위
    -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수립에 대한 자문
  -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그밖에 시장이 필요를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 공공건축가 업무 방법 및 절차 등은 따로 정해 운영 가능
- 바. 민간전문가(‘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규정 신설 (안 제13조)
-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해 민간전문가로서 적합하지 않은 경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장 (참조: 건축계획과장, 전화: 032-440-4742)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이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 또는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 4. 참고자료

-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 별첨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축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제6호 중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건축문화 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을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건축문화 진흥관련 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으로 한다.

제4조제9호를 제10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9.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 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 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
  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
  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
- ④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
- ⑤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할 수 없으며, 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⑥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

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
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
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

④ 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축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u>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1조(목적) ----- ----- ----- <u>그 밖에 인천광역시의 건축정책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u></p>
<p>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제4조(건축기본계획의 수립 등) 「건축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이하 “시”이라 한다) 건축기본계획(이하 “건축기본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p>
<p>1. ~5. (생략)</p> <p>6.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건축문화진흥 관련 주민참여 방안에 관한 사항</p> <p>7.~8. (생략)</p> <p><u>&lt;신 설&gt;</u></p>	<p>1.~5. (현행과 같음)</p> <p>6. 건축문화 기반구축 및 건축문화진흥 관련 <u>성별·연령별 고른 주민참여</u> 방안에 관한 사항</p> <p>7.~8. (현행과 같음)</p> <p><u>9. 성별·연령별 건축물 이용 특성 조사 및 반영 방안에 관한 사항</u></p> <p><u>10. (현행 제9호와 같음)</u></p>
<p>9. (생략)</p> <p><u>&lt;신 설&gt;</u></p>	<p><u>제11조(인천총괄건축가 운영 등) ①</u> <u>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지역의 공간정책 및 전략수립에 대한 자문 또는 건</u></p>

현행	개정안
	<p><u>축·도시·디자인 관련 주요공공사업의 총괄조정 등 지역경쟁력 강화 및 지역 현황에 부합한 방향으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민간전문가(이하 ‘인천총괄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u></p> <p><u>② 인천총괄건축가는 비상근직으로 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u>③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시 건축·도시·디자인 관련 정책 수립에 대한 검토 및 자문</u></li> <li><u>2. 시장 등이 발주하는 총사업비 100억 원 이상 또는 설계비 2억 원 이상의 공공건축물 및 공간 환경 사업의 기획·발주·기본설계에 대한 총괄조정 및 자문</u></li> <li><u>3. 건축디자인 시범사업의 지정 및 사업시행에 관한 자문</u></li> <li><u>4. 공공건축 관련 전문가들과 정보 교류 및 협력체계 구축</u></li> <li><u>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업에 대한 중점관리</u></li> </ol> <p><u>④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지원조직을 두고 운영할 수 있다.</u></p> <p><u>⑤ 인천총괄건축가는 직무상 알게 된 정보 또는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해당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u></p>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할 수 없으며, <u>개인 또는 개인이 소속된 법인의 자격으로 시의 공공사업에 참여하여서는 아니 된다.</u></p> <p><u>⑥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의 업무 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12조(공공건축가 운영 등) ①</u> 시장은 영 제21조 또는 이에 준하여 별도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 중에서 인천 지역에 이루어지는 개별 공공사업 등에 대하여 기획 단계부터 설계, 시공 및 유지·관리단계에 이르는 사업 전 과정에 걸쳐 계획의 일관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획, 설계 또는 총괄조정 및 관리하는 전문가(이하 “공공건축가”라 한다)를 위촉·운영할 수 있다.</p> <p><u>② 공공건축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u></p> <p><u>③ 공공건축가의 업무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u></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u>1. 시장 등이 발주하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설계 또는 공공건축물의 기획 및 설계에 대한 조정·자문</u></li> <li><u>2. 시장이 결정하는 정비계획(「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시개발법」·「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의 수립에 대한 자문</u></li> </ol>

현행	개정안
<p>&lt;신설&gt;</p>	<p>3. <u>건축디자인 시범사업 등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u></p> <p>4. <u>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시설사업의 기획·설계에 대한 조정 및 자문</u></p> <p>④ <u>시장은 공공건축가의 업무방법 및 절차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u></p> <p><u>제13조(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의 해촉) 시장은 인천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가를 해촉할 수 있다.</u></p> <p>1. <u>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u></p> <p>2. <u>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총괄건축가 및 공공건축가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u></p>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1호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8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세계 경제 성장의 둔화와 그로인한 우리나라 경제 성장속도의 저속화는 지속적인 청년실업률의 증가를 가져오고 있음. 우리 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청년들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기존 기업 지원 중심의 사업보다 새로운 창업 기업의 육성을 통한 성장이 필요함.

이에 시는 창조경제혁신센터를 통해 혁신적인 창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를 발굴하고 창업 및 사업화 지원을 하는 등 청년 사업가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펼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는 청년창업 경진대회에 대한 내용이 빠져있어 지속적인 창업 지원에 대해 한계가 있는 실정임. 또한, 본 조례에는 청년사업가들의 창업 및 활동에 필요한 자금이 있어 우대적인 금융적 지원에 대한 내용의 부재로 청년 창업의 안정적 자금 지원에 대한 한계도 있음.

이에 청년창업 경진대회의 제도적 근거 마련과 청년창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를 개정함으로써 청년 창업에 대한 안정적 지원을 통해 청년실업률의 해소와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가. 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근거를 마련함(안 제5조의1)

나.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함(안 제 13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18(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 -8765,

이메일 hongjjang66@korea.kr )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창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①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제13조를 제14조로 하고, 제1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를 제15조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u>&lt;신 설&gt;</u></p>	<p><u>제5조의1(청년창업 경진대회 개최) ① 시장은 창의적인 사업 아이디어를 가진 청년 사업가(창업을 하려는 청년을 포함한다)를 선발하는 청년창업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성과 우수자에게 시상금, 사업비 및 특례보증 등을 제공할 수 있다.</u></p> <p><u>② 제①항에 따른 경진대회의 참가 자격, 성과 우수자의 선발 방법, 시상금액 등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정한다.</u></p>
<p><u>&lt;신 설&gt;</u></p>	<p><u>제13조(특례보증) 시장은 청년창업에 필요한 금융지원을 위하여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다.</u></p>
<p><u>제13조 · 제14조 (생략)</u></p>	<p><u>제14조 · 제15조 (현행 제13조 및 제14조와 같음)</u></p>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 법령	<p>□ 지방자치법</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li> <li>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li> </ol> </li> <li>3. 농림·상공업 등 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li> <li>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li> </ol> </li> </ol>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해당사항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 - (추가)비용 미수반

### 3. 미첨부 사유

- 2019년 예산 既 반영

(단위:백만원)

부서명		담당업무	예산			비고
과	팀		시비	국비	기타	
합계			980	-	-	
청년정책과	기술창업지원팀	청년창업챌린지 사업	80	-	-	
소상공인정책과	소상공인지원팀	청년창업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900	-	-	

###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 길교숙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2호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1.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근거 마련과 도서 자원 및 특성을 반영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서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살고 싶고, 가고 싶은 섬 조성에 기여하고자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함(안 제2조)
- 나. 도서 발전의 추진을 위한 도서발전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 다.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추진을 위해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 설치 및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안 제6조 ~ 안 제9조)
- 라.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기준을 정함(안 제10조)
- 마. 도서 발전 사업에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정함  
(안 제11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9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서개발 촉진법」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인천광역시 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 가능한 도서 발전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에 따른 도서를 말한다.
2. “도서 발전”이란 섬의 생태·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주민소득 창출 등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말한다.

제3조(섬의 날) 시장은 「도서개발 촉진법」 제2조의2제2항에 따라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1. 기념행사
2. 부대행사(전시 및 체험 등)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도서 발전관련 계획이나 사업에 관하여 조례에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시장은 5년 마다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 추진과제 및 추진방법
3. 필요한 재원 규모, 투자계획 및 조달방안

4. 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5. 관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6조(위원회 설치) ① 시장은 도서 발전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정책 추진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도서 발전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
3.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
4.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제7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업무 담당 국장으로 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위원은 3명 이내로 한다.

1. 도서 발전 업무 관련 인천광역시 소속 공무원
2. 자연·생태, 역사·문화, 관광, 해양·수산, 경관, 산림·조경 등 섬 관련 전문가
3. 마을공동체 사업에 대하여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섬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지역민의 신망이 있는 사람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④ 시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④ 위원회에 간사를 두고 간사는 도서 발전 업무 담당 사무관으로 한다.

제8조(위원회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반기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9조(수당의 지급)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직 위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른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① 시장은 섬 마을의 자립기반 마련 등 도서 발전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이하 “중간지원조직”이라 한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중간지원조직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도서의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2. 주민역량강화

3. 섬 기초자료 조사 및 관리

4. 사업 지원

5. 네트워크 및 교류·협력 등

6. 그 밖에 도서 발전 지원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③ 시장은 중간지원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인천광역시 산하기관 또는 관련 법인·단체 등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보조금) 시장은 도서 발전을 위한 사업을 하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포상) 시장은 도서 발전에 탁월한 성과를 거둔 군·구와 공무원, 섬 마을, 민간단체, 개인 등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도서개발 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조(목적)</li> <li>○ 제2조(정의)</li> <li>○ 제2조의2(섬의 날)</li> <li>○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li> <li>○ 제10조(사업비의 조성)</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도서개발 촉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島嶼)의 생산·소득 및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함으로써 도서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와 복지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도서"란 만조(滿潮) 시에 바다로 둘러싸인 지역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은 제외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본도(本島)
2. 방파제 또는 교량 등으로 육지와 연결된 때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지난 도서

②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도서 중 제4조에 따라 지정된 개발대상도서로서 제6조에 따라 수립된 개발사업이 완료되지 아니한 도서는 예외로 한다.

**제2조의2(섬의 날)** ① 섬의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의식을 고취하기 위하여 매년 8월 8일을 섬의 날로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섬의 날 취지에 부합하는 행사를 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의 수립)** ① 지정도서를 관할하는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을 작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침과 기준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민소득 증대와 생활수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주거환경 및 시설의 개선에 관한 사항
2. 산업진흥과 자원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반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
3. 도서지역의 교통·통신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운송 및 교통수단과 통신시설의 개선·확충에 관한 사항

4. 풍수해나 재해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파제·방조제 시설과 산림 녹화 등 국토 보전에 관한 사항
5.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후생·의료·문화 및 전기 시설의 설치·개선에 관한 사항
6. 도서지역 환경보전에 관한 사항
7. 생활필수품의 원활한 유통·공급을 위한 지원·보조 등에 관한 사항
8. 국가안전보장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9. 그 밖에 도서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사업비의 조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업계획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사업시행자에게 보조·융자 또는 알선하고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의 보조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비 용 추 계 서 (제3조제1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지원 조례안 제3조(섬의 날),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9조(위원회), 제10조(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의 설치)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 **매년 8월 8일(도서개발촉진법 제2조의2)**

: 1회 × 30,000,000원 = 30,000,000원/년

※ 매년 행정안전부 주최(주관)시 박람회(부스 등) 참가

- 기본계획 수립 용역\*\*

: 1회 × 400,000,000원 = 400,000,000원/년(5년마다 실시)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자문위원회 운영

: 4회 × 600,000원 = 2,400,000원/년

-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 운영(2020년 예정)

: 1회 × 394,000,000원 = 394,000,000원/년(4년간 1,576,000,000원)

※ 운영방식 및 소요인력, 주요사업에 따라 소요 예산 상이

· 인천시 타 중간지원조직 예산 : 500백만원 ~ 750백만원/년

(2018년, 4-5명 인력 기준)

(인천시 섬 활성화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및 운영방안 연구/인천연구원, 2018)

#### 나. 추계 결과

- 섬의 날 행사 개최 등 4건 = 2,138,000,000원/2019년~2023년(5년간)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 4. 작성자 : 해양항공국 해양도서정책과장 윤석관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계
세출	섬의 날 행사	30,000	30,000	30,000	30,000	30,000	150,000
	도서 발전 기본계획 수립 용역		400,000				400,000
	인천광역시 도서발전 자문위원회	2,400	2,400	2,400	2,400	2,400	12,000
	인천광역시 도서 발전 중간지원조직		394,000	394,000	394,000	394,000	1,576,000
	소계	32,400	826,400	426,400	426,400	426,400	2,138,000
재원 조달		시비	시비	시비	시비	시비	
국 비							
시비	소 계						
	일반회계	32,400	826,400	426,400	426,400	426,400	2,138,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3호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를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 내용을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0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제안이유

인천의 청년이 군복무 중 불의의 사고 발생시 현실적인 보장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확보하고, 건강한 삶을 유지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당연직위원의 구성 범위를 수정함.(안 제9조제4항)
- 나. 청년의 생활안정과 의료보장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  
(안 제15조제3항)
- 다. 청년시설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19조제3항)
- 라. 청년네트워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2조)
- 마.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근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함.(안 제23조)
- 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함.(안 제24조)

###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 1. 21(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 (참조: 산업경제전문위원실 전화 440-6232, 팩스 440-8765, 이메일 hongjjang66@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 제출자의 주소·성명 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출자	해당조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나. 비용추계서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 중 “기획, 재정,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관광, 도시계획, 건설교통, 일자리경제”를 “경제·주택·복지·문화”로 한다.

제15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부터 제24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③ (생략)</p> <p>④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u>기획, 재정, 보건복지, 여성가족, 문화 관광, 도시계획, 건설교통, 일자 리경제</u> 등 관련 부서 국장급 이 상 공무원으로 한다.</p> <p>⑤ ~ ⑫ (생략)</p>	<p>제9조(청년정책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경제</u> <u>· 주택 · 복지 · 문화</u> ----- ----- ----- -----.</p> <p>⑤ ~ ⑫ (현행과 같음)</p>
<p>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 ② (생략)</p> <p><u>&lt;신 설&gt;</u></p>	<p>제15조(청년의 생활안정)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 으로 상해보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u></p>
<p>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생략)</p> <p><u>&lt;신 설&gt;</u></p> <p><u>&lt;신 설&gt;</u></p>	<p>제19조(청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 ② (현행과 같음)</p> <p>③ <u>시장은 「인천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에 따라 시설을 민간에 위탁하 여 운영할 수 있다.</u></p>
<p><u>&lt;신 설&gt;</u></p>	<p><u>제22조(청년네트워크) ①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u></p>

<신 설>

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②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3조(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인천광역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 설>

제2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관련법령 검토와 발취사항

관계 법령	<p>□ 헌법</p> <p>제117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p> <p>□ 지방자치법</p> <p>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p> <p>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li> <li>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li> </ul> </li> <li>3. ~ 6. 생략</li> </ol> <p>제22조(조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 비 용 추 계 서

### 1. 비용 발생 요인 및 관련조문

#### 가. 청년의 생활안정 (안 제15조제3항)

시장은 청년이 건강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청년을 대상으로 상해 보험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예 : 군복무 청년)

#### 나. 청년네트워크 (안 제 22조)

시장은 시정에 청년의 소통과 참여를 보장하고 청년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하여 청년들로 구성된 청년네트워크를 둘 수 있다.

청년네트워크 위원에게는 그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 할 수 있다.

### 2. 비용 추계결과

#### 가. 추계의 전제

##### ○ 청년을 대상으로 한 상해보험

- 인천시 청년 (만19세 이상 39세 이하) : 878,860명 (2018.11월 말)
- 군복무 청년 : 약 20,000명 (추정치)
- 상해 보험 가입 예상액 : 1인 37,000원
- 군복무 청년 상해 보험 소요 예상액 : 740,000천원 = 20,000명 × 37,000원
- 청년 상해 보험 소요 예상액 : 32,517,820천원 = 878,860명 × 37,000원

##### ○ 청년활동 생태계 기반조성 : 80,000천원

- 청년활동 생태계 기반 조성(사무관리비) : 52,000천원
  - 인천청년네트워크 활동수당 : 1회 70,000원  
(전체회의 연 2회, 분과회의 4개분과 월 2회 약 80회 개최)
- 청년정책관련 토론회 및 워크숍 개최 : 28,000천원
  - 청년토론회 등(행사운영비) : 18,000천원
  - 청년워크숍 등(행사실비보상금) : 10,000천원

(단위 : 천원)

항 목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계	820,000	820,000	844,000	848,000	872,000	4,204,000
생활안정	740,000	740,000	760,000	760,000	780,000	3,780,000
네트워크	80,000	80,000	84,000	88,000	92,000	424,000

다. 재원조달방안 : 시비 100%

3.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붙임

4. 작성자

일자리경제본부 청년정책과장 길교숙

## 연도별 비용 추계표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계
세입	일반회계						
	소계						
세출	일반회계	820,000	820,000	844,000	848,000	872,000	4,204,000
	소계	820,000	820,000	844,000	848,000	872,000	4,204,000
재원 조달							
국 비							
시비	소 계	820,000	820,000	844,000	848,000	872,000	4,204,000
	일반회계	820,000	820,000	844,000	848,000	872,000	4,204,000
	특별회계						
	기 금						
군·구비							
민 간							
기 타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5호

##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2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1. 제안이유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건설공사에 건설기술을 활용·촉진하여 건설기술선진화 및 품질향상, 영세한 신기술 개발자의 기술 개발 지원과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사용 용어,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한 적용범위를 정함(안 제1조, 제2조, 제3조)
- 나.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한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위원회 기능을 정함(안 제4조 및 제5조)
- 다.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준용규정, 심의·자문사항의 사후 관리에 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제9조)
- 라. 건설신기술활용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의 설계반영의무와 계약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0조 및 제11조, 제12조)

- 마. 건설신기술에 대한 실명제 및 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자료축적 및 활용 사항을 정함(안 제12조 및 제13조, 제14조)
- 바. 우수 신기술개발자에 대한 선정 및 포상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안 제15조)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건설신기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건설신기술의 활용 촉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건설 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관급공사의 품질 확보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신기술"이란 「건설기술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4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고시한 새로운 건설기술로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 내에 있는 기술을 말한다.
2. "신기술개발자"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건설신기술을 개발한 자 또는 업체를 말한다.
3. "신기술협약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34조제3항에 따라 신기술개발자와 협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4. "관급공사"란 「인천광역시 지역 건설 근로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제2조제3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5. "건설공사"란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의 건설공사를 말한다.
6. "발주청"이란 관급공사를 발주한 기관을 말한다.
7. "생애주기비용"이란 시설물의 건설, 사용, 유지관리, 폐기, 처분 등에 이르는 전체 생애주기에 걸쳐 발생하는 총비용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에 적용한다.

## 1. 관급공사

2. 군·구에서 발주하는 건설공사 중 시비 지원 또는 시비 보조금사업을 시행 하는 공사·공단

제4조(위원회의 설치) 시 소속으로 건설신기술 활용·촉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건설신기술 활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5조(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기본 및 실시설계에서 공종별 신기술 적용방안이 제시되었으나 발주청이 이를 건설공사에 반영하지 않을 경우 그 적정 여부
2.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의 적정 여부
3. 설계에 적합한 신기술의 선정(제2항제2호 각 목의 신기술을 포함한다)
4. 신기술 등의 사전성능검증 필요 여부
5. 신기술 적용 건설공사의 신기술분야 분리발주 등 계약방법 적정 여부
6.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시험시공의 실시 여부
7.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발주청에서 건설공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신기술과 관련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2.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되어 건설공사에 적용하고자 하는 아래 각 목의 기술
  - 가.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
  - 나.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산업기술개발사업
  - 다.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른 방재신기술

라.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에 따른 교통신기술

마. 「특허법」에 따른 국내특허 중 건설관련 기술을 받은 것으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술

3. 그 밖에 발주청이 요청하는 사항 중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영 제75조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를 시행하는 건설공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대상에서 제외한다.

제6조(심의·자문 요청) ① 발주청은 제5조의 사항에 대하여 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심의요청서나 자문요청서에 관계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요청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제5조제1항제3호와 관련하여 신기술 선정 심의 의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관계 서류와 별도로 설계에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신기술 후보군(3개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을 선정하여 선정사유와 함께 제출한다.

제7조(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시 건설업무를 담당하는 과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에 따라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건설업무와 관련된 5급 이상 공무원
2. 건설 관련 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3. 건설 관련 단체의 임원 및 투자기관의 임원
4. 해당 분야 대학의 조교수 이상의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5. 해당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3년 이상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그 분야에서 9년 이상 연구 또는 실무 경험이 있는 사람
6.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해당 분야의 기술사 또는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7. 설계경제성 검토에 풍부한 경험이 있는 전문기관의 최고 자격이 있는 자
8. 그 밖에 건설공사의 신기술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추었다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되, 위원장과 제1항에 따른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5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회의에 있어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범위 안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 1명을 위원으로 일시 임명 또는 위촉하여 심의할 수 있다.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없다. 다만, 위촉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 중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8조(준용규정) 위원회의 간사 및 서기, 회의 및 회의록, 비밀유지, 결과처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수당 등은 「인천광역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이하 "기술심의조례"라 한다)에 따른다.

제9조(심의·자문사항의 사후관리)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의 결과를 통지 받은 발주청은 그 결과를 건설공사에 반영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설계반영의무) ① 시장은 건설신기술 등의 활성화 촉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하며,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를 위해 관급공사·주요 민간 건설현장에서 지역 건설신기술 등이 선정 및 활용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발주청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건설공사 설계에 반영하고,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는 공사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신기술개발자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③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된 신기술에 대하여 현장 여건의 변동이 있거나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 제공을 거부하는 등의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위원회의 재심의를 받아 그 신기술을 다른 공법으로 설계변경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1조(계약) ① 발주청은 위원회 심의 등에 따라 적용된 신기술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부터 제32조까지 정하는 한도 내에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경쟁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1. 신기술의 특성상 일반경쟁이 비효율적이거나 경쟁에 부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신기술 단일부문 적용금액이 전체 공사비의 50% 이상인 경우로서 하자 책임 구분이 용이하고 공정관리에 지장이 없어 분리발주가 효율적인 경우

② 발주청은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 신기술개발자가 신기술에 대해 보장하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을 별도로 명시할 수 있다.

제12조(실명제) 시장은 신기술이 적용된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는 사후평가를 위해 시공자로 하여금 신기술이 시공된 위치에 표찰을 부착하여 신기술 명칭 또는 번호, 신기술개발자, 시공자, 시공일자 등의 정보를 표시하여야 한다.

제13조(생애주기비용평가서 반영) 제6조에 따라 심의 또는 자문을 받으려는 자는 신기술개발자로부터 해당 신기술의 생애주기비용평가서를 제출 받아 이를 위원회에 참고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생애주기비용 평가서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연구기관에서 발행한 것이어야 한다.

제14조(자료축적 및 활용) 시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유용한 자료를 축적 하여 위원회 위원과 건설관련 관계공무원 등의 참고자료로 제공할 수 있다.

1. 해당 신기술의 개요 및 품셈
2. 제5조제1항의 제2호 및 제3호에 관한 심의 결과
3. 제1호 및 제2호 외에 신기술 활용 촉진을 위해 유익한 정보

제15조(포상) ① 시장은 우수한 신기술개발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 ② 시장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예산절감 등 활용촉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또는 기관·법인 및 단체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li> <li>○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li> <li>○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건설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정의)</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중소기업기본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산업기술혁신촉진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자연재해대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li> </ul> </li> <li><input type="checkbox"/>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20조 ~ 제32조의2</li> </ul> </li> </ul> <p style="text-align: center; margin-top: 20px;">“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건설기술 진흥법

제7조(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기술을 향상시키고 기본계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체결하여 건설기술 발전에 필요한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 연구·개발 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정부 또는 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이나 그 밖에 기업의 기술개발비로 충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협약의 체결방법과 제2항에 따른 출연금의 지급·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4조(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특정 건설기술을 개발하거나 기존 건설기술을 개량한 자의 신청을 받아 그 기술을 평가하여 신규성·진보성 및 현장 적용성이 있을 경우 그 기술을 새로운 건설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고시할 수 있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다.

③ 기술개발자는 신기술의 활용실적을 첨부하여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2항에 따른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할 수 있고, 국토교통부장관은 그 신기술의 활용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신기술 활용실적의 제출, 검증 및 보호기간의 연장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발주청에 신기술과 관련된 신기술장비 등의 성능 시험이나 시공방법 등의 시험시공을 권고할 수 있으며, 성능시험 및 시험시공의 결과가 우수하면 신기술의 활용·촉진을 위하여 발주청이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게 할 수 있다.

- ⑤ 발주청은 신기술이 기존 건설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의 측면에서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신기술을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 ⑥ 신기술을 적용하는 건설공사의 발주청 소속 계약사무담당자 및 설계 등 신기술 적용 관련 공사업무 담당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증명되지 아니하면 신기술 적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해당 기관의 손실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⑦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호를 받는 기술개발자에게 신기술의 성능 또는 품질의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기술의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 ⑧ 제1항에 따른 신기술 평가방법 및 지정절차 등과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의 보호내용, 기술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 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신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는 신기술을 사용한 자에게 기술사용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기술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발주청에 유사한 기존 기술보다는 신기술을 우선 적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 ③ 발주청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이 기존 기술에 비하여 시공성 및 경제성 등에서 우수하면 그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설계에 반영하여야 하며, 건설공사를 발주하는 경우에 이를 공사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시하고 기술개발자(해당 신기술을 이용하여 건설공사를 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협약을 체결한 자를 포함한다)로 하여금 해당 건설공사 중 신기술과 관련되는 공정에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3항의 경우 발주청은 신기술을 적용하여 건설공사를 준공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 및 절차 등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자금 등이 우선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1.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또는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의 기술개발자금
2.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라 신기술사업금융업을 등록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신기술사업자금
3.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보증기금의 기술보증
4. 그 밖에 기술개발 지원을 위하여 정부가 조성한 특별자금

⑥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신기술의 지정을 받은 자는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 활용실적을 작성하여 다음 해 2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5조(설계의 경제성등 검토) ① 발주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설계 대상 시설물의 주요 기능별로 설계내용에 대한 대안별 경제성과 현장 적용의 타당성(이하 "설계의 경제성등"이라 한다)을 직접 검토하거나 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전문가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1.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2.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인 건설공사의 시공 중 총공사비 또는 공종별 공사비를 10퍼센트 이상 조정(단순 물량증가나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은 제외한다)하여 설계를 변경하는 경우
3. 총공사비 100억원 미만인 건설공사에 대하여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설공사의 설계를 하는 경우

②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시기·횟수·대가기준, 구체적인 검토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③ 발주청은 설계의 경제성등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설계의 개선 제안 내용을 적용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곤란하거나 비용을 과다하게 증가시키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설계내용에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발주청은 제1항에 따라 설계의 경제성등을 검토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정의)

1. "건설산업"이란 건설업과 건설용역업을 말한다.
2. "건설업"이란 건설공사를 하는 업(業)을 말한다.
3. "건설용역업"이란 건설공사에 관한 조사, 설계, 감리, 사업관리, 유지관리 등 건설공사와 관련된 용역(이하 "건설용역"이라 한다)을 하는 업(業)을 말한다.
4.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유지·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 가.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 나.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 다.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 라.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 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신기술인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그 기술이 기존의 기술과 비교하여 신규성과 우수성이 있다고 평가하여 인증한 기술(이하 "신기술"이라 한다)이면 신기술인증을 할 수 있다.

1.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된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2.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

②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대하여 기술검증을 신청받은 때에는 현장평가 등을 통하여 그 성능이 검증된 기술(이하 "검증기술"이라 한다)이면 기술검증을 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받은 신기술
2. 제7조의2제3항 각 호의 기관에서 설치한 환경시설에 적용되는 기술의 성공 여부 판단을 위하여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술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이 모두 필요한 기술로서 하수·폐수처리기술, 정수처리기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기술에 대하여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함께 받아야 한다. 이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동시에 신청하여야 한다. <신설 2013. 7. 16.>

④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를 제2항에 따라 기술검증을 한 때에는 기술검증서를 각각 발급하여야 하고, 제3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모두 한 때에는 신기술인증서와 기술검증서를 같이 발급하여야 한다.

⑤ 환경부장관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신청하는 자에게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한 기술을 평가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⑥ 재원운영자는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의 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시범사업 및 환경기술 실용화에 드는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 6조제3항 각 호의 재원에서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으로서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는 자
  2.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환경기술의 시범사업을 하는 자
  3.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로서 환경부장관이 공공의 목적을 위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환경기술을 실용화하는 자
- ⑦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신청절차, 평가기준, 평가방법, 그 밖에 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제1항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①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혁신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산업기술분야에서 기술개발사업(산업기술개발을 위하여 필요한 기획 및 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산업기술개발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

1. 산업의 공통적인 기반이 되는 생산기반 기술, 부품·소재 및 장비·설비 (플랜트를 포함한다) 기술
2. 산업기술 분야의 미래 유망 기술
3. 산업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공정혁신, 청정생산 및 환경설비 등에 관련된 기술
4. 산업의 핵심기술의 집약에 필요한 엔지니어링·시스템 기술
5. 에너지 절약 및 신·재생에너지 개발 등 에너지·자원기술
6. 항공우주산업기술 및 「민·군기술협력사업 촉진법」 제2조제1호의 군사 부문과 비군사 부문에서 공통으로 활용되는 기술
7. 디자인·브랜드·표준 관련 기술, 유통·전자거래 및 마케팅·비즈니스모델 등 지식기반서비스 산업 관련 기술
8. 지역특화산업의 육성 및 지역산업의 혁신에 필요한 기술

9.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첨단제품의 개발 및 자본재의 시제품 개발
10. 삭제 <2013. 3. 23.>
11. 개발된 산업기술의 사업화에 필요한 연계기술
12.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기술 간 결합을 통한 시장지향형 융합기술
13.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개발이 필요한 기술로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는 기술

## □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

- 제61조(방재신기술의 지정·활용 등) ① 정부는 방재기술평가 결과 우수한 방재기술로 평가된 기술(이하 "방재신기술"이라 한다)에 대하여 방재신기술로 지정·고시하고 방재신기술임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2. 2. 22.>
- ② 정부는 방재시설을 설치하는 공공기관에 대하여 방재신기술을 우선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가 방재신기술의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보호기간이 만료되어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그 방재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④ 방재신기술의 지정 절차, 표시 방법, 보호기간 및 활용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02조

제102조(교통신기술의 지정·보호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국내에서 최초로 개발한 교통기술 또는 외국에서 도입하여 소화·개량한 기술이 국내에서 신규성·진보성 등이 있다고 판단되고 그 기술을 국가교통체계에 보급·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그 기술을 개발한 자(이하 "기술개발자"라 한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기술을 새로운 교통기술(이하 "교통신기술"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된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3. 3. 23.>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교통신기술의 실용화 등에 필요한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기술개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호기간을 정하여 기술개발자에 대하여 교통신기술에 대한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보호할 수 있으며, 기술개발자가 보호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기술의 활용 실적 등을 검증하여 보호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교통신기술의 지정, 보호 내용, 기술 사용료, 보호기간 및 활용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제한입찰에 의한 계약과 제한사항 등) ① 법 제9조 제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와 그 제한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제5호 및 제6호 및 제9호의 제한사항별 제한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로서 추정가격 30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와 그 밖에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3억원) 이상인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시공능력 또는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2. 특수한 기술 또는 공법이 요구되는 공사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공사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그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실적
3. 특수한 설비 또는 기술이 요구되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물품제조에 필요한 설비 및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 이 경우 해당 물품과 같은 종류의 물품제조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물품제조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4. 삭제 <2016. 11. 29.>
5. 특수한 기술이 요구되는 용역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용역수행에 필요한 기술의 보유상황 또는 계약 대상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 이 경우 해당 용역과 같은 종류의 용역수행실적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려면 해당 용역계약의 추정가격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금액 이상이어야 한다.
6. 추정가격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계약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말한다)
7. 제21조에 따른 제한방법으로 공사계약을 하는 경우에는 그 제한기준
8.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 우선적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 경우 및 같은 법 제6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제조·구매하는 경우에는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9.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의 재무상태
10. 특수한 성능 또는 품질이 요구되어 다음 각 목의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을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증 등을 받은 물품인지 여부

가.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인증을 받은 물품

나. 삭제 <2017. 1. 26.>

다.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라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물품

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마.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

1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제한경쟁입찰 방법에 따라 물품 제조·구매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른 공동사업에 참여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에 그 제한사항과 제한기준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공사입찰로서 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함으로써 제2항에 따른 입찰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제21조(공사의 성질별·규모별 제한에 따른 입찰)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공사를 성질별·규모별로 유형화하여 이에 상응하는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고 이를 미리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하여 입찰참가자격자로 하여금 등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20.>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이를 심사하여 유형별·등급별로 입찰참가자격자를 선정하여 등록하고 공사입찰 시마다 해당 입찰참가자격자에게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통지하여 입찰 참가신청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입찰 제한기준을 정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공사현장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등록한 입찰참가자격자를 대상으로 입찰을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지명입찰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지명입찰에 부칠 수 있다.

1.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비추어 특수한 설비·기술·자재·물품 또는 실적이 있는 자가 아니면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로서 입찰 대상자가 10인 이내인 경우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의 경우 추정가격이 3억원(「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전문공사,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의 경우에는 1억원) 이하인 공사를 하거나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계약 또는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
4. 예정임차료의 연액(年額)(보증금이 있는 경우 보증금을 연 임대료로 환산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5천만원 이하인 재산이나 물품을 임차하는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외의 계약으로서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6.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 제2호의 제품
7. 법 제9조 제1항 단서와 이 영 제25조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고,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품질인

증을 받은 재활용제품 또는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9. 제79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단가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10.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중소기업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공고한 물품을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11.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을 활용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12.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요청으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추천하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해당 물품 등을 납품할 수 있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을 말한다)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

제23조(지명입찰대상자의 지명)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22조에 따라 지명입찰에 부치려는 경우에는 5인 이상의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2인 이상의 입찰 참가신청을 받아야 한다. 다만, 지명대상자가 5인 미만일 때에는 대상자를 모두 지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36조 각 호의 사항을 각 입찰대상자에게 통지함으로써 입찰공고를 갈음한다.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통지일로 보며, 통지 시기에 관하여는 제35조를 준용한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입찰대상자를 지명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통지하고 입찰참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4조(유사물품의 복수입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에 차이가 있는 유사한 종류의 물품 중에서 품질·성능 또는 효율 등이 일정 수준 이상인 물품을 지정하여 구매하려는 경우에는 복수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유사한 종류의 물품별로 작성된 예정가격에 대한 입찰금액의 비율이 가장 낮은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 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작전상의 병력이동, 긴급한 행사, 원자재의 가격급등,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경우
2. 입찰에 부칠 여유가 없는 긴급복구가 필요한 재난 등 행정안전부령에 따른 재난복구 등의 경우
3. 국가기관, 다른 지방자치단체(「지방자치법」 제159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조합을 포함한다)와 계약을 하는 경우
4. 특정인의 기술·용역 또는 특정한 위치·구조·품질·성능·효율 등으로 인하여 경쟁을 할 수 없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공사에서 장래 시설물의 하자에 대한 책임구분이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나. 작업상의 혼잡 등으로 하나의 현장에서 2인 이상의 시공자가 공사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다. 마감공사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
  - 라. 접적지역 등 특수지역에서의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마.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신기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기술, 「전력기술관리법」 제6조의2에 따른 새로운 전력기술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방재신기술(각 해당 법률에 따라 지정된 보호기간 또는 유효기간 내의 경우로 한정한다)에 의한 공사로서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
  - 바. 해당 물품을 제조·공급한 자가 직접 그 물품을 설치·조립(시험가동을 포함한다) 또는 정비하는 경우

사. 특허를 받았거나 실용신안등록 또는 디자인등록이 된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하는 경우로서 적절한 대응품이나 대체품이 없는 경우  
 아. 해당 물품의 생산자나 소지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른 물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구매해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자. 특정인의 기술·품질이나 경험·자격이 필요한 조사·설계·감리·특수측량·훈련·시설관리·교육·행사·정보이용·의상(의류)구매 계약을 체결하거나 관련 법령에 따라 디자인공모에 당선된 자와 설계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차. 특정인과의 학술연구를 위한 용역계약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카. 특정인의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특정인의 재산을 임차하는 경우

타. 이미 조달된 물품 등의 부품교환 또는 설비확충 등을 위하여 조달하는 경우로서 해당 물품 등을 제조·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

파. 특정한 장소나 위치에 있는 사업장을 보유한 자와 그 사업장의 이용과 관련한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하.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문화재 발굴(조사)용역으로서 시공 중인 건설공사의 지연이 예상되는 등 긴급한 사유가 있거나 시굴(試掘)조사 후 정밀발굴조사로 전환되는 등 문화재 발굴의 연속성 유지가 필요한 경우

####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가.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는 제외한다)로서 추정가격이 2억원 이하인 공사, 같은 법에 따른 전문공사로서 추정가격이 1억원 이하인 공사 및 그 밖의 공사 관련 법령에 따른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8천만원 이하인 공사에 대한 계약

나.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제30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외의 자와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을 포함한다.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원가계산·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마.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체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다만, 3)부터 6)까지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 1)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 2)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3)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 4)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5)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 6)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임대차 계약(연액 또는 총액을 기준으로 추정가격을 산정한다) 등으로서 공사계약 또는 물품의 제조·구매계약이나 용역계약이 아닌 계약

6. 다른 법률에 따라 특정사업자로 하여금 특수한 물품·재산 등을 매입하거나 제조하도록 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 가. 「방위사업법」에 따른 방산물자를 방위산업체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 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새마을공장을 포함한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

다.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23에 따른 지방중소기업 특별 지원지역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구매하는 경우

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는 경우로서 주무부장관으로부터 인증 또는 지정된 유효기간[해당 물품에 대한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이 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하며, 주무부장관이 인증 또는 지정 유효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연장된 기간(3년을 넘는 경우에는 3년을 말한다)을 포함한다]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
- 2)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13조에 따라 품질인증을 받은 받은 제품
-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신제품으로 인증된 제품
- 4)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의2,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 또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1조에 따라 인증 또는 지정·고시된 신기술을 이용하여 제조한 제품으로서 주무부장관이 상용화 단계에서 성능을 확인한 제품
- 5)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고시된 제품
- 6)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라 지정·고시된 우수조달공동상표의 물품(「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3호바목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미만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 7)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제9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개발이 완료된 제품으로서 당초의 수요와 연계된 자가 구매하기로 협약한 제품

7. 특정연고자, 지역주민 및 특정물품 생산자 등과 계약할 필요가 있거

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비상재해가 발생한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는 복구용 자재를 재해를 당한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나. 지역사회의 개발을 위하여 그 지역주민의 다수를 참여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추정가격이 2천만원 미만인 공사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묘목재배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그 지역의 주민 또는 대표자와 직접 계약하는 경우

다. 국가보훈처장이 지정하는 국가유공자 자활용사촌의 복지공장에서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그 생산자로부터 제조·구매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7의2. 국가유공자 또는 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나 보훈·복지서비스 등을 제공하기 위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에 따라 설립된 단체 중 상이(傷痍)를 입은 사람들로 구성된 단체가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의 제조·구매 또는 직접 수행하는 용역계약을 하거나 이들에게 직접 물품을 매각 또는 임대하는 경우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외사무소에서 사용하는 물품을 현지에서 구매하는 경우

나. 물품의 가공·하역·운송 또는 보관을 하게 할 때 입찰에 부치는 것이 불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삭제 <2011. 9. 15.>

라. 삭제 <2013. 11. 20.>

마. 삭제 <2013. 11. 20.>

바. 삭제 <2013. 11. 20.>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아. 시험지와 비밀문서의 인쇄 등 지방자치단체가 그 행위를 비밀리에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항제6호나목, 같은 항 제7호나목 및 같은 항 제7호의2에 따라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요건

2. 수의계약대상 물품의 직접 생산 및 용역의 직접 수행 가능 여부

제26조(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제19조 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제95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대안입찰, 같은 항 제5호에 따른 일괄입찰 또는 제127조 제2호·제3호에 따른 기술제안입찰로 발주되었으나 재공고입찰 결과 입찰자가 1인뿐인 경우에는 해당 입찰참가자가 제출한 기본·실시설계서 또는 기술제안서에 대하여 제98조 제4항 제3호, 제132조 제2항 제2호 및 제134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 및 설계점수 평가를 거친 후 가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입찰자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7조(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의 수의계약)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체결 후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을 해제하거나 해지한 경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28조(분할수의계약) 제25조 제1항 제6호 가목, 제26조 및 제27조의 경우에는 예정가격 또는 낙찰금액을 분할하여 계산할 수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가격이나 금액보다 불리하지 아니한 금액의 범위에서 수인(數人)에게 분할하여 계약을 할 수 있다.

제29조(계속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시의 계약금액) 계속공사(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직전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수의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공사를 말한다)의 경우 그 공사 이후의 계약금액은 예정가격에 제1차공사의 낙찰률(예정가격에 대한 낙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비율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이하로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수의계약대상자의 선정절차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인으로부터 받은 견적서에 의할 수 있다.

1. 제25조 제1항 각 호(제5호는 제외한다), 제26조 제1항 및 제27조에 따른 계약의 경우
2.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의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과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 가.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여성기업 또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장애인기업
  - 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또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기업. 이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여야 한다.

3. 제2항에 따라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2인 이상으로부터 견적서를 제출받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품질확인 및 예산절감의 필요성이 큰 경우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제출받은 견적서에 적힌 견적가격이 예정가격(제8조제2항에 따라 예정가격 작성을 생략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말한다)의 범위에 들지 아니하는 경우 등 계약상대자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아 제5항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견적서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

제31조(수의계약 내역의 공개)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계약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개 사항 및 기간 등에 관하여는 제124조를 준용한다.

제32조(입찰에 관한 규정의 준용) 수의계약대상자의 자격에 관하여는 제13조 제1항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09. 8. 5.]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공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법 제9조의2 제1항 본문에 따라 구매규격을 사전공개 하는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하여 5일간 공개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3일간 공개한다.

② 법 제9조의2 제1항 단서에서 "긴급 수요물자·비밀물자 또는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용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이나 용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나 용역을 말한다.

1. 긴급한 수요로 구매하는 물품 또는 용역

2. 구매를 비밀로 하여야 하는 물품 또는 용역
  3. 추정가격이 5천만원 미만인 물품 또는 용역
  4. 해당 연도에 1회 이상 구매규격 사전공개를 실시한 물품 또는 용역
  5. 제25조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하여 구매할 수 있는 물품 또는 용역
  6. 음식물(재료 또는 가공품인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농·축·수산물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관련 업체가 구매규격 사전공개와 관련하여 법 제9조의2 제1항에 따라 의견을 제출하는 경우, 그 의견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내용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의견을 제출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출된 의견이 제108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에 관한 것이면 법 제32조에 따른 계약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을 제출받은 날부터 5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 발생 요인

- 위원회 참석 수당

### 2. 미첨부 근거 규정

-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33,480천원)  
 - 30건(1년 예상) × {186,000원(1건당) × 6명} = 33,480천원

※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 심의수당 지급기준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 제19조 및 [별표])

구 분	심 의 수 당 (인/일)			
	계	참석수당 (4시간 미만 기준)	여 비	사전 검토비 (원/건)
PQ,SOQ,TP 기준평가	<b>186,000원</b>	136,000원	10,000원	40,000원(단순)
* 참석수당(4시간 미만) : 기술사노임단가(363,289원/18년 노임) × 3/8 ≒ 136,000원				

###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건설심사과장 김 성 훈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6호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을 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 예고합니다.

2019년 1월 12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1. 제안이유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불법운행 등 위반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을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을 확립하려는 것임.

#### 2. 주요내용

- 가. 조례의 제정 목적 및 신고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를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 신고 및 지급절차를 정함  
(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및 환수 대상을 정함(안 제5조 및 제6조)

라. 신고인의 보호 및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마.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을 정함(안 별표)

바.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서식 마련  
(안 별지 서식)

### 3.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 등록, 자동차 관리사업 등록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자동차관리사업과 관련한 불법행위와 불법운행 자동차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확립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고포상금 지급대상)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1개월 이상 인천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 또는 고발한 경우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자동차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 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3조(신고포상금 지급기준)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신고포상금은 신고자가 신고한 위반행위 건별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하되, 지급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신고자 1명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신고포상금은 한 달 100만원, 연간 3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③ 동일한 위반행위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이 중복되었을 경우, 최초로 신고 또는 고발한 자에 한하여 신고포상금을 지급한다.

제4조(신고 및 포상금 지급절차) ① 제2조 각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이하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를 접수한 시장은 그에 대한 사실을 확인한 후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이를 신고자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지급결정을 통보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인에게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연도의 신고포상금 예산이 부족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에 지급할 수 있다.

④ 신고포상금은 신고자 명의로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개설한 예금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⑤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해당 미성년자의 법정 대리인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신고포상금 지급제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또는 고발 당시 수사 또는 조사 중이거나, 처벌 또는 행정처분이 완료된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2.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3. 교통행정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경찰공무원 및 자동차관리사업 조합의 관계자가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5. 법 제53조의2에 따라 자동차소유자가 신고를 한 경우
6. 그 밖에 포상금을 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또는 고발을 한 경우

제6조(신고포상금의 환수)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제5조의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제7조(신고인 보호) ① 시장은 신고인의 보호를 위하여 신고인의 인적사항 등이 누설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② 신고포상금 관련 업무를 담당하거나 담당하였던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권한의 위임)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한다.

1. 제4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접수
2. 제4조제2항에 따른 위반행위 신고사실 확인, 신고포상금 지급 여부 결정 및 통지

##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별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 (제3조 관련)

위반행위별	포상금액(원)
1. 법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2. 법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100,000
3. 법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100,000
4.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5. 법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200,000
6. 법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200,000

[별지 서식]

##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 및 신고포상금 지급 신청서

신 고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전 화 번 호		이 메 일	
	주 소			
	금융기관·체신관서 (계좌번호)			
피신고자	상 호(법인명)		생 년 월 일 (법인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자 동 차 등 록 번 호	
	소 재 지			
신고내용	자 동 차 정 보	발견장소 및 일시		
		기 타 (차종, 색상 등)		
	신 고 내 용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	※ 6하 원칙에 의거 상세하게 작성		
	기 타 증 병			
처리결과 수령방법		<input type="checkbox"/> 서면 <input type="checkbox"/> 이메일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 및 「인천광역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제4조에 따라 위반행위를 신고하고, 이에 대한 신고포상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 고 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장 귀하

※첨부 : 위반행위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사진·동영상 등)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자동차관리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li> <li>○ 제79조(벌칙)</li> <li>○ 제80조(벌칙)</li> <li>○ 제81조(벌칙)</li> <li>○ 제84조(과태료)</li> </ul>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사항 없음”
특이사항	“해당사항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포상금의 지급)**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79조제13호, 제80조제1호, 제80조제5호의3, 제81조제2호, 제81조제7호의2 또는 제84조제3항제20호에 해당하는 자를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제80조제1호, 제81조제2호 및 제81조제7호의2의 경우 자동차 소유자가 신고한 때에는 제외한다)할 수 있다.

**제7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3.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제53조(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 등)** ① 자동차관리사업을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5조를 위반하여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5조(등록)**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부터 제47조의11까지의 규정에서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이하 "등록원부"라 한다)에 등록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다. 다만, 제27조제1항에 따른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허가 기간 내에 운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의3. 제57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한 자

**\*제57조(자동차관리사업자 등의 금지 행위)** ③ 자동차매매업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광고를 하는 행위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12조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자

**\*제12조(이전등록)** ①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이하 "이전등록"이라 한다)을 신청하여야 한다.

7의2.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동차를 운행한 자

**\*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① 자동차는 제2조제3호에 따른 자동차사용자가 운행하여야 한다.

**제84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0. 제53조제1항을 위반하여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자동차관리사업을 한 자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관련)

### 1. 비용발생요인

- 200만원 소요 예상(1년 10건 기준)

### 2. 미첨부 근거 규정

「인천광역시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3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

### 3. 미첨부 사유

본 제정조례안은 자동차관리법 제53조의2의 신설(2015. 8. 11개정, 2016. 2. 12. 시행) 및 2017. 10. 24 개정으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 포상금제도를 마련하여 불법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자동차관리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도입하는 것으로서, 포상금 세출로 예상되는 비용이 발생하나 연간 세출 예상비용이 2백만원 정도이므로 미첨부 1호 사유에 해당함.

### 4. 작성자 : 교통국 교통관리과장 김영미

인천광역시의회공고 제2019-7호

##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를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인천광역시의회 회의규칙』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19년 1월 12일

### 인천광역시의회의장

#### 1. 제안이유

보도구역 내 차량 진·출입을 위한 횡단차도의 폭을 확대하여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유도하고 보도의 훼손을 방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보행할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안 별표)

#### 2. 의견제출

이 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21일(18:00)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인천광역시의회의장(참조: 시의회 건설교통전문위원실, 전화 032-440-6245, 팩스 032-440-8766, 이메일: budu74@korea.kr)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의견제출자의 주소·성명(단체 또는 법인의 경우에는 단체명 또는 법인명과 그 대표자 성명) 및 전화번호

제 출 자	해당사항	찬반여부 및 사유	비 고
○ 주 소 :			
○ 성 명 :			
○ 연락처 :			

※ 다른 서식 사용 가능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도로법」 제61조, 「도로법 시행령」 제54조, 제55조

나. 예산조치:

다. 합 의:

라. 규제심사: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보도구역 및 횡단차도 설치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평면도 중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를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로하고, 나.를 삭제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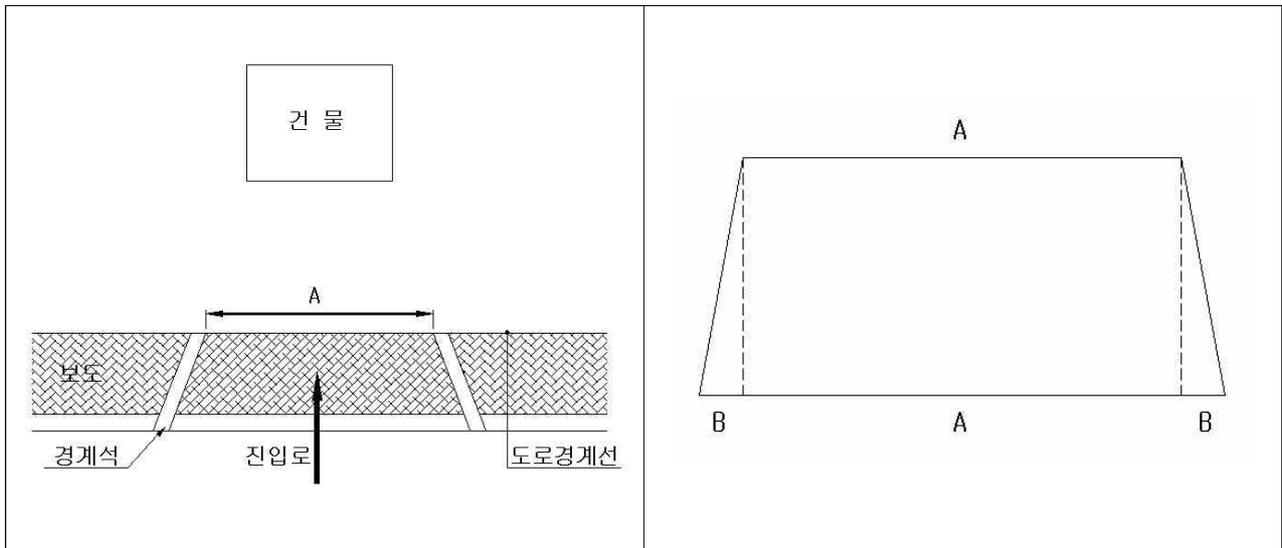
[별표]

시 공 기 준

(1) 평면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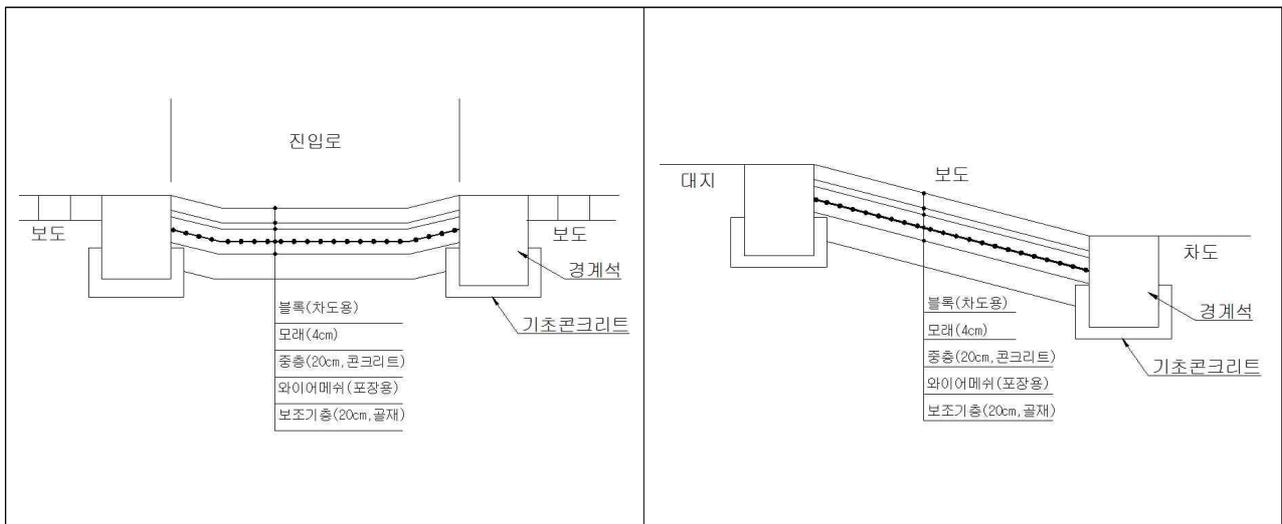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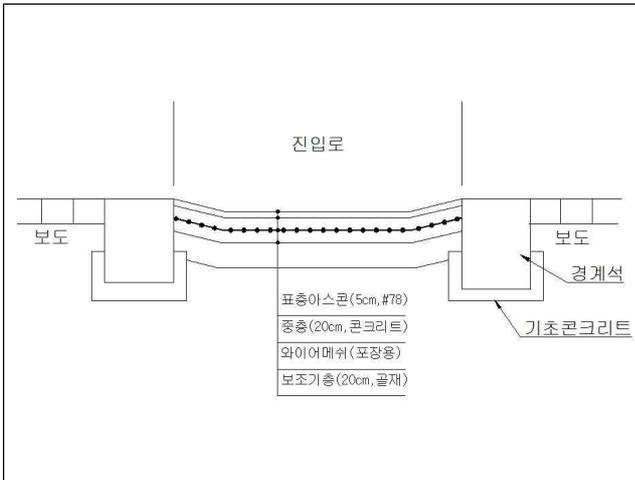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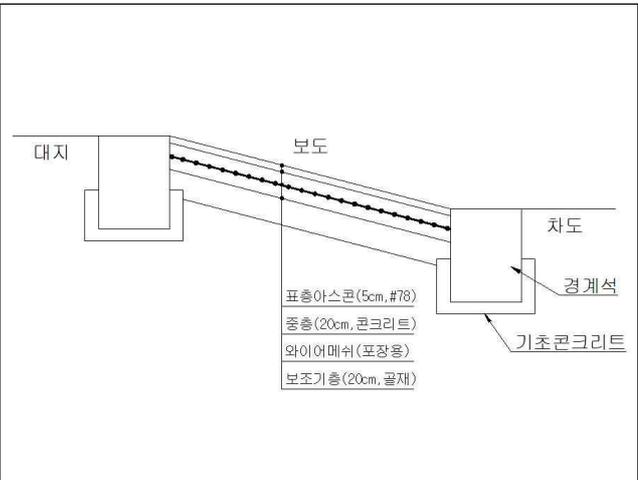
[횡단면]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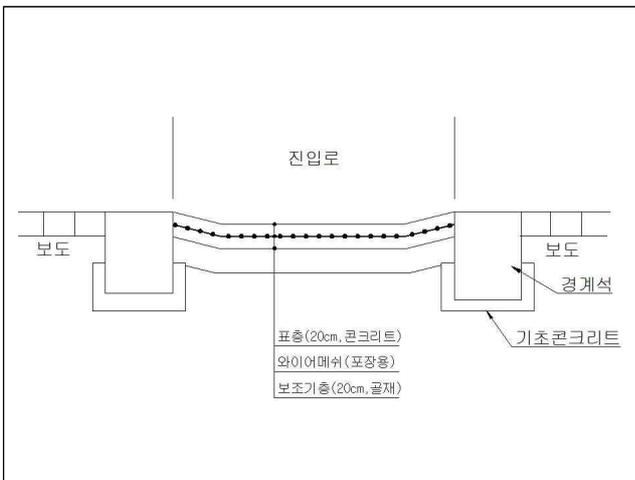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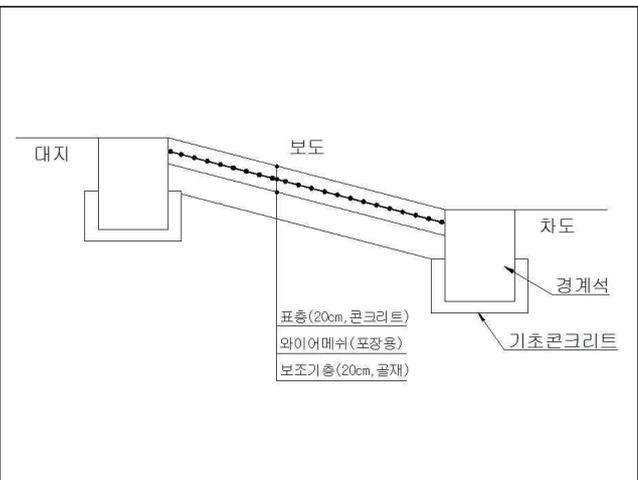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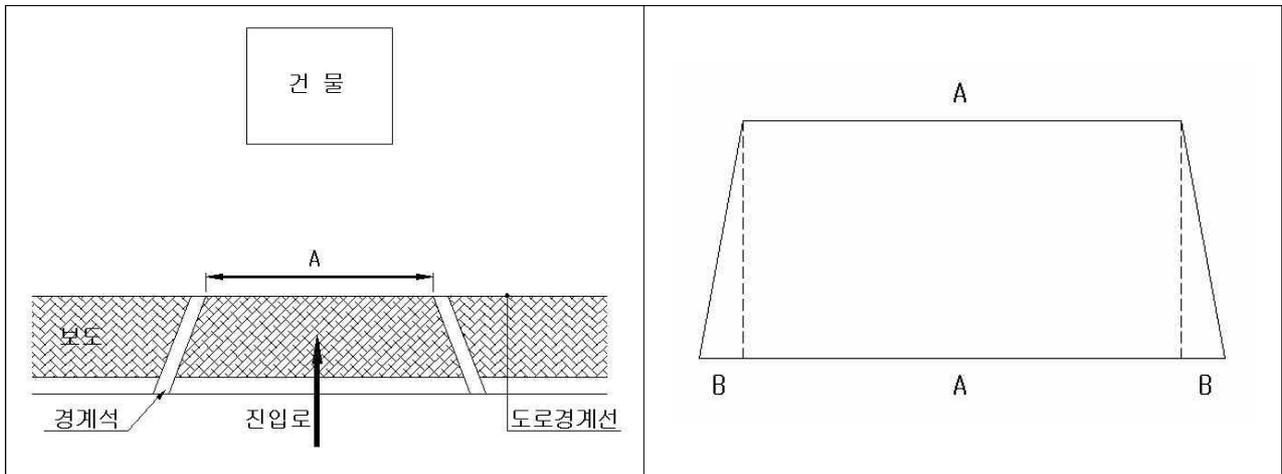
[별표](현행)

시 공 기 준

(1) 평면도

가. 차도폭에 따른 가각규정표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5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10m이하
- B : A 의 10% 이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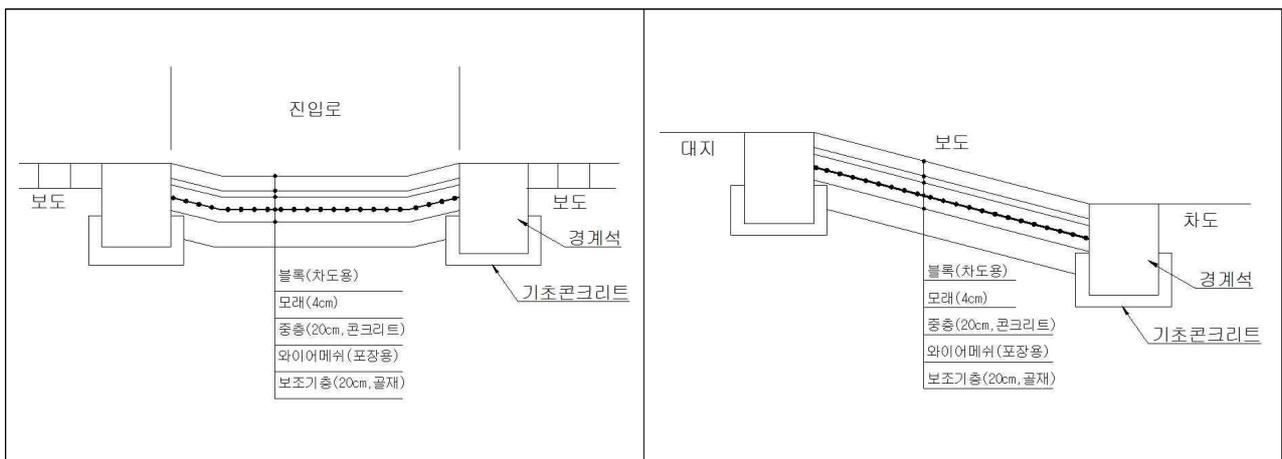


나. 주유소, 주차장 등 출입구 분리 설치 시

- A : 도로폭 15m 미만 - 4m이하, 도로폭 15m 이상 - 5m이하
- B : A 의 10% 이하

(2) 단면도

가. 블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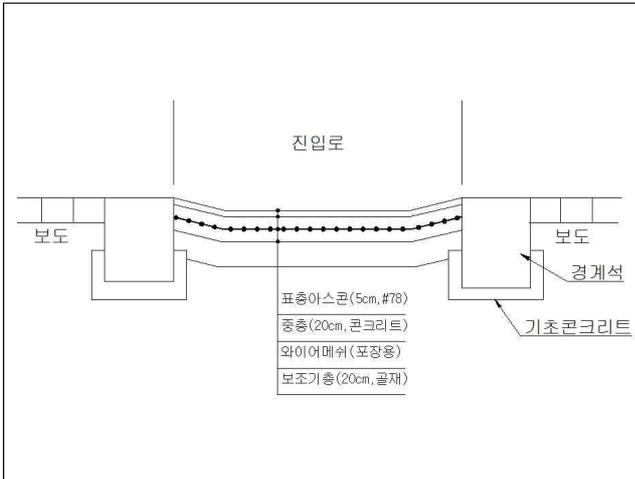
[표준단면]

[횡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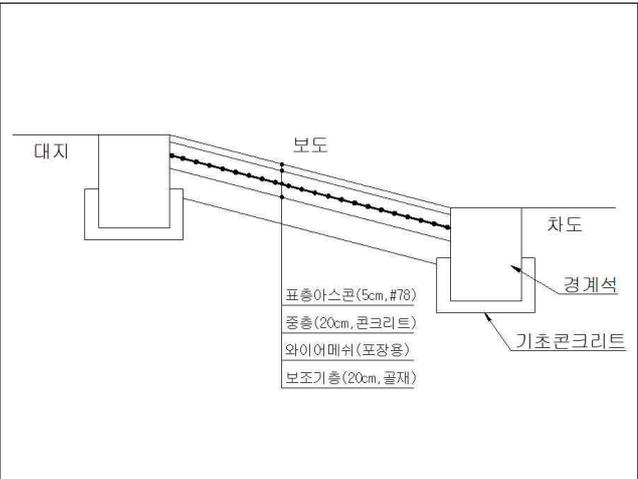
나.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 아스팔트콘크리트 시공 시 미관을 고려하여 기존 보도블럭과 조화를 이루도록

시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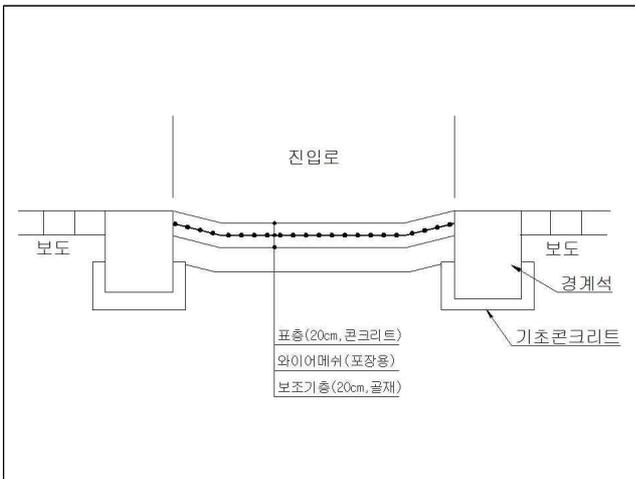


[표준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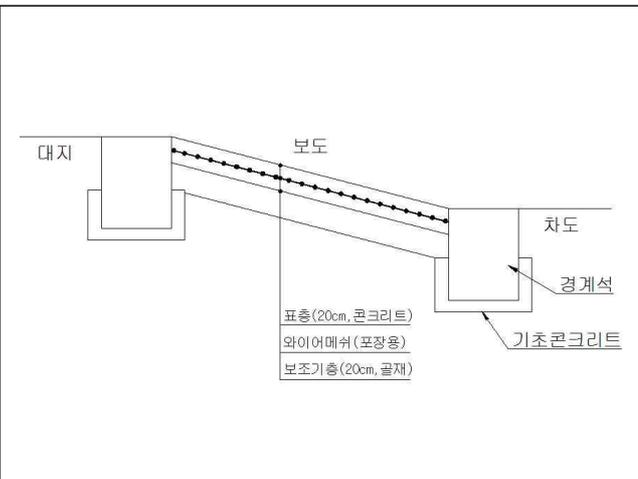


[횡단면]

다. 콘크리트 시공



[표준단면]



[횡단면]

## 관계법령 검토와 발췌사항

관계법령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  <input type="checkbox"/> 도로법 시행령 - 제54조(도로의 점용허가 신청 등) -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p style="text-align: center;">“내용은 별지 작성”</p>
관련법규 정비대상	“해당 없음”
관련자료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췌사항

### □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 허가) ①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을 신설·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도로(도로구역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를 점용하려는 자는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기간을 연장하거나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허가받은 사항 외에 도로구조나 교통안전에 위험이 되는 물건을 새로 설치하는 행위를 포함한다)하려는 때에도 같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와 허가의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도로관리청은 같은 도로(토지를 점용하는 경우로 한정하며, 입체적 도로구역을 포함한다)에 제1항에 따른 허가를 신청한 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일반경쟁에 부치는 방식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는 경우의 기준,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을 자의 선정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로법 시행령

제54조(도로의 점용 허가 신청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도로구역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의 점용 허가(이하 "도로점용허가"라 한다)를 받으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도로관리청에 제출(「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에는 설계도면(전자도면으로 한정한다)을 첨부하여야 한다.

1. 점용의 목적
2. 점용의 장소와 면적
3. 점용의 기간
4. 점용물의 구조
5. 공사의 방법
6. 공사의 시기
7. 도로의 복구방법

②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56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업계획서대로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제56조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사업계획서 제출시 첨부한 설계도면 및 주요지하매설물(법 제62조제2항 후단에 따른 주요 지하 매설물을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자의 의견서의 첨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주요지하매설물 관리자의 의견서
2. 주요지하매설물의 사후관리계획(신청인이 주요지하매설물의 관리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3. 제62조에 따른 도로관리심의회의 심의·조정 결과를 반영한 안전대책 등에 관한 서류

③ 도로관리청이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인에게 허가증서를 발급하고, 허가내용을 공고하여야 하며, 허가대장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도로의 점용이 도로의 굴착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허가내용의 공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④ 도로굴착공사를 수반하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기간 중에 사람들이 보기 쉬운 장소에 그 허가내용을 내걸어야 한다.

⑤ 법 제61조제1항에 따른 도로점용허가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주·전선, 공중선, 가로등, 변압탑, 지중배전용기기함, 무선전화기지국, 종합유선방송용단자함, 발신전용휴대전화기지국, 교통량검지기, 주차측정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태양광발전시설, 태양열발전시설, 풍력발전시설, 우체통, 소화전, 모래함, 제설용구함, 공중전화, 송전탑,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2. 수도관·하수도관·가스관·송유관·전기관·전기통신관·송열관·농업용수관·작업구(맨홀)·전력구·통신구·공동구·배수시설·수질자동측정시설·지중정착장치(어스앵커)·암거,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3. 주유소·수소자동차 충전시설·주차장·여객자동차터미널·화물터미널·자동차수리소·승강대·화물적치장·휴게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4. 철도·궤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5. 지하상가·지하실(「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1조제1호에 따라 설치하는

- 경우만 해당한다)·통로·육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6. 간판(돌출간판을 포함한다), 표지, 깃대, 현수막, 현수막 게시시설 및 아치. 다만, 현수막 게시시설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7. 버스표판매대·구두수선대·노점·자동판매기·현금자동입출금기·상품진열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9. 고가도로의 노면 밑에 설치하는 사무소·점포·창고·자동차주차장·광장·공원, 체육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유류·가스 등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사무소·점포·창고 등은 제외한다)
  10.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편의시설 중 높이차이 제거시설 또는 주출입구 접근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11.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공작물·물건 및 시설의 설치를 위하여 일시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과 이를 위한 진입로 및 출입로
  12. 제1호부터 제11호까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도로관리청이 도로구조의 안전과 교통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한 공작물·물건(식물을 포함한다) 및 시설로서 국토교통부령 또는 해당 도로관리청이 속해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것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1. 비용 발생 요인

- 횡단차도(진입로)에 대하여 민원인 인·허가 신청(규정 범위 내 폭 결정)시 결정됨에 따라 추가 비용이 발생된다고 볼 수 없음

### 2. 미첨부 근거 규정

- 횡단차도(진입로) 설치는 원인자 시공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됨에 따라 공공예산 미 투입

#### ※ 관련 법 및 조례 발췌

##### ○ 도로법

- 제91조(원인자의 비용 부담 등)

① 도로관리청은 타공사나 타행위로 인하여 도로공사를 시행하게 된 경우 타공사나 타행위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할 자에게 그 도로공사의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시킬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용의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 또는 도로관리청이 속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91조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에 대한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3조(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

① 타공사나 타행위에 따른 도로의 굴착으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된 경우 예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1조에 따라 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이하 “원인자부담금”이라 한다)을 징수한다.

### 3. 미첨부 사유

- 횡단차도(진입로) 설치는 원인자 시공 및 원인자 부담금 징수됨에 따라 공공예산 미 투입

※ 도로법 제91조 및 인천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징수 조례 제1조, 제3조

### 4. 작성자

도시재생건설국 도로과장 유세종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5호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 1. 개정이유

본청, 교육지원청, 직속기관, 각급학교 등에서 수행하는 행정의 전문성 및 지속성에 대한 요구가 확대됨에 따라 승진 임용자도 소속기관에서 계속해서 관련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정책추진의 연속성 및 예측 가능성과 정책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보 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 2. 개정근거

- 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 3. 주요내용

- 가. 기관 간 전보 삭제(안 제3조제4항제1호)
  - 5급 및 6급으로의 승진 임용자에 대한 기관 간 전보 조항 삭제(다목)
- 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8조의 2에 따라 개정 규정의 시행은 발령한 날부터 하되 5급 승진 임용자에 대한 시행은 1년의 유예기간을 둠(부칙)

#### 4. 의견제출

본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2월 8일까지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 1)를 인천광역시교육감(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기타 참고사항 등
- 4) 보내실 곳
  - 주소: (우편번호 21554), 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총무과
  - ※ 우편제출 시 당일 마감 소인일까지 유효함
  - 전화 및 팩스: 전화) 032-420-8384 팩스) 032-420-8381
  - E-mail: [hhelibe@ice.go.kr](mailto:hhelibe@ice.go.kr)

#### 5.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붙임 1

#### 6. 개정훈령안: 붙임 2

&lt; 붙임 1 &gt;

##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민원인 인적 사항	성명		단체명	
	주소			
	(휴대)전화번호			
의견내용 및 찬반여부	관련조항	의견 내용 및 그 이유		찬반 여부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19년      월      일

제출자: 성명

(서명)

< 붙임 2 >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개정훈령안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5급 승진 임용자에 대해서는 발령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p>제3조(전보) ① ~ ③ (생략)</p> <p>④ 전보 시 직렬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고려한다.</p> <p>1. <u>기관 간 전보</u></p> <p>가. 삭제</p> <p>나. 삭제</p> <p>다. <u>5급 및 6급으로의 승진 임용자</u></p> <p>2. (생략)</p> <p>⑤·⑥ (생략)</p>	<p>제3조(전보) ① ~ ③ (현행과 같음)</p> <p>④ ----- ----- --.</p> <p>&lt;삭제&gt;</p> <p>2. (현행과 같음)</p> <p>⑤·⑥ (현행과 같음)</p>

##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발취

관계법령  
및  
참고사항

**지방공무원법**

- 제8조(인사위원회의 기능 등)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공무원법]

#### 제30조의5(보직관리의 원칙)

- ① 임용권자는 법령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소속 공무원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하여 그 직급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항제1호에 따라 계급 구분 및 직군·직렬의 분류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그에 상응하는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 ② 소속 공무원을 보직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의 전공분야·훈련·근무경력·전문성 및 적성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직관리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방공무원 임용령]

#### 제7조(보직관리의 기준)

- ②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속 공무원을 적재적소에 임용하여야 한다.
1. 직위의 직무요건
    - 가. 직위의 주요 업무활동
    - 나. 직위의 성과책임
    - 다. 직무수행의 난이도
    - 라. 직무수행요건
  2. 공무원의 인적요건
    - 가. 직렬 및 직류
    - 나. 윤리의식 및 청렴도
    - 다. 보유 역량의 수준
    - 라. 경력, 전공분야 및 훈련 실적
    - 마. 그 밖의 특기사항

③ 임용권자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도에 따라 직위를 등급화하고, 소속 공무원의 경력과 실적 등에 따라 능력을 적절히 발전시킬 수 있도록 보직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법 제30조의5와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공무원에 대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 제8조의2(승진임용 기준 등의 사전의결 대상 등)

① 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사전의결의 대상이 되는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2. 보직관리 기준 및 전보임용 기준의 사전의결 대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경우는 5급 이상 공무원, 시·군 및 자치구의 경우는 6급 이상 공무원

② 임용권자는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소속 공무원이 알 수 있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반드시 예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이후부터 적용한다.

인천광역시교육청공고 제2019-8호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인천광역시 교육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14일  
인천광역시교육감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 규칙안 입 법 예 고

### 1. 개정이유

가. 민선3기 교육감 공약 이행 추진동력 확보 및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조직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청 각 부서,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조직을 개편한 바,

나. 이에 따른 각 기관(부서) 사무 정비를 통해 업무구분을 명확히 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2019.3.1.자 조직개편에 따른 사무분장 조정

나. 규칙 본문 규정 정비: 사무분장 항목 ⇨ '별표'를 신설하여 정비

다. 사문화 된 업무 삭제 또는 용어에 대한 현행화

라. 분장사무의 용어 통일 및 기타 사항 정비 등

###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붙임1)를 작성하여, 2019년 1월 26일(토)까지 인천광역시교육감(참조: 노사협력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1) 전자우편(이메일): pug92@korea.kr

2) 주소: (21554)인천광역시 남동구 정각로 9,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

※우편제출 시, 마감전 우체국 소인일까지 유효함

3) 팩스: 032-420-8456

마.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교육청 노사협력과(☎032-420-84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law.ice.go.kr>) “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입법예고에 따른 의견서 : “붙임1”

### 5. 전부개정규칙안 : “붙임2”



< 붙임2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인천광역시교육청  
(노 사 협 력 과)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안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전부개정규칙안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제2항, 제10조, 제11조, 제12조제2항 및 제21조제2항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부터 제4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의 설치 및 그 사무분장 등 조례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당관 · 과장 · 부장의 직무) 담당관·과장·부장은 소속기관의 장을 보좌하고, 그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 제2장 본청

제3조(보좌기관) 교육감 밑에 소통협력담당관을 두고, 부교육감 밑에 감사관과 마을교육지원단을 둔다.

**제4조(소통협력담당관)** 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소통협력담당관은 「지방자치단체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임용되는 개방형직위로서 지방서기관 또는 4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제5조(감사관)** ① 감사관은 개방형 직위로서 지방부이사관 또는 3급 상당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한다.

**제6조(마을교육지원단)** 마을교육지원단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7조(정책국)** ① 정책국에 정책기획과, 민주시민교육과, 예산복지과, 노사협력과, 안전총괄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 또는 장학관으로, 정책기획과장 ·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예산복지과장 · 노사협력과장 · 안전총괄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8조(교육국)** ① 교육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체육과, 창의인재교육과, 학교생활교육과를 둔다.

② 국장 및 각 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9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총무과, 학교설립과, 교육재정과, 정보지원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총무과장 · 학교설립과장 · 교육재정과장 · 정보지원과장은 지방서기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기술서기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3장 직속기관

## 제1절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제10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1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에 교육정보자료부, 과학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② 교육정보자료부장·과학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2절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제12조(원장)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에 기획평가부, 연수운영부, 세계시민교육부, 행정연수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평가부장·연수운영부장·세계시민교육부장은 교육연구관으로, 행정연수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3절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제14조(관장)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장은 도서관의 규모에 따라 지방부이사관 또는 지방서기관으로 보한다.

**제1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북구도서관·인천광역시중양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평생교육운영과, 관리과를 두며, 인천광역시부평도서관·인천광역시주안도서관·인천광역시화도진도서관·인천광역시서구도서관·인천광역시계양도서관 및 인천광역시연수도서관에 독서문화과, 정보자료과, 관리과를 둔다.

② 독서문화과장·정보자료과장은 지방사서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주사로, 평생교육운영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사서사무관으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제4절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

**제16조(장장)** 인천광역시학생수영장장은 동인천중학교장이 겸임한다.

#### 제5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제17조(원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18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교학과, 관리과를 두며, 관찰수련시설로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서사체험학습장, 흥왕체험학습장, 국화리학생야영장을 둔다.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② 교학과장은 교육연구관 또는 교육연구사로,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6절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제19조(관장)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0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에 운영부, 총무부를 둔다.

② 운영부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7절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

제21조(원장) 인천광역시교직원수련원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 제8절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제22조(관장)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장은 지방부이사관으로 보한다.

제23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에 기획·정보부, 평생교육부, 총무부를 둔다.

② 기획·정보부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평생교육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총무부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9절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제24조(원장)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한다.

제25조(하부조직) ①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에 기획연구과, 운영지원과, 관리과를 둔다.

② 기획연구과장, 운영지원과장은 장학관 또는 교육연구관으로 보하고, 관리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주사로 보한다.

## 제4장 교육지원청

### 제1절 하부조직

제26조(하부조직) 교육지원청 중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국, 행정지원국을 두며,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에는 교육지원과, 행정지원과, 미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27조(교육지원국) ① 교육지원국에 초등교육과, 중등교육과, 평생교육건강과를 둔다.

② 국장·초등교육과장·중등교육과장은 장학관으로, 평생교육건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보건사무관·지방식품위생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8조(행정지원국) ① 행정지원국에 학교운영지원과, 복지재정과, 교육시설과를 둔다.

② 국장은 지방서기관 또는 지방기술서기관으로, 학교운영지원과장 및 복지재정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교육시설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지방시설사무관·지방공업사무관으로 보한다.

제29조(교육지원과) 교육지원과장은 장학관으로 보한다.

제30조(행정지원과) 행정지원과장은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제31조(미래교육지원센터) 미래교육지원센터장은 장학관 또는 지방교육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 제2절 소속기관

제32조(소속기관) ①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교육지원청의 소속기관으로 과학교육관,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둔다.

제33조(과학교육관) ① 과학교육 활성화를 위해 과학교육관을 두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석암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진산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만수북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장은 인천심곡초등학교장이,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관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2와 같다.

제34조(특수교육지원센터) ① 특수교육발전을 위해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두되 인천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동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서부교육지원청 초등교육과장이,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인천광역시강화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이 겸임한다.

② 특수교육지원센터장은 교육장의 명을 받아 소관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③ 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3과 같다.

## 제5장 사무분장

제35조(부서별 사무분장) 본청의 과·단·담당관별, 직속기관의 부(과)·장별, 교육지원청의 과 및 소속기관별 세부 분장 사무는 별표 4와 같다.

### 부칙

이 규칙은 201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에 두는 수련시설의 위치

명 칭	위 치
해양환경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2463
서사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양사면 서사길 159
홍왕체험학습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화도면 해안남로 1854
국화리학생야영장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고비고개로282번길 48

[별표 2]

## 인천광역시과학교육관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인천광역시남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동로 46(주안동)
인천광역시북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부평구 굴포로 194-10(삼산동)
인천광역시동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180-25
인천광역시서부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서구 심곡로 114(심곡동)
인천광역시강화과학교육관	인천광역시 강화군 불은면 중앙로 607

[별표 3]

## 인천광역시특수교육지원센터의 명칭과 위치

명 칭	위 치
인천 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계양구 장제로1304(장기동)
인천광역시남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동구 샛골로189(송림동)
인천광역시북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대로 88 , 19 (부평동초교내) (부평동)
인천광역시동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고개로334번길 21 (도림동)
인천광역시서부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서구 승학로599번길 45 (검암동)
인천광역시강화특수교육지원센터	인천광역시 강화군 강화읍 동문안길 20 , 16 (강화읍)

[별표 4]

## 사무분장표 (제35조 관련)

### 1. 본 청

[소통협력담당관]

과·담당관	분장사무
소통협력담당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교육 홍보 기본 계획 수립·추진·평가</li> <li>2. 인천교육 언론동향 분석</li> <li>3. 언론 브리핑 운영 및 언론 인터뷰·취재활동 지원</li> <li>4. 인천교육 홍보물(영상물, 간행물등)제작·보급 및 데이터베이스(D/B) 관리</li> <li>5. 인천교육 학생·학부모기자단 운영</li> <li>6.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를 통한 홍보망 구성·운영</li> <li>7. 인천교육소식 홈페이지 운영</li> <li>8. 기자실 운영</li> <li>9. 교육 관련 보도기사 스크랩 관리 업무</li> <li>10. 그 밖에 소통협력담당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감사관]**

과·담당관	분장사무
감사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감사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2.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 수감 및 감사 결과 처리</li> <li>3. 직속기관·교육지원청 및 공·사립 각급 학교에 대한 감사 실시 및 처리(중학교 이하 각급 학교 제외)</li> <li>4. 조사, 감사결과에 따른 징계의결 요구(지도감독결과에 따른 징계의외 사항 포함)</li> <li>5. 국정감사,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결과 처리</li> <li>6. 공무원범죄 통보 사항 조사 및 처리</li> <li>7.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사항</li> <li>8.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등) 관련 사항</li> <li>9. 교육부조리(부패방지, 공무원행동강령 등) 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li> <li>10. 시민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1. 교육지원청의 자체감사 실시계획 검토·조정</li> <li>12. 그 밖에 감사관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마을교육지원단]**

과·담당관	분장사무
마을교육지원단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마을교육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교육혁신지구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교육기부에 관한 사항</li> <li>4. 교육협동조합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학부모지원정책 수립</li> <li>6. 학부모 학교참여 지원 및 운영</li> <li>7. 학부모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li> <li>8. 유치원 및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및 지원</li> <li>9. 학부모지원센터 운영</li> <li>10. 그 밖에 마을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li> </ol>

## □ 정 책 국

## [정책기획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정책기획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정책 기획,개발·관리,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인천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조정</li> <li>3. 교육균형발전계획 수립·관리 및 총괄</li> <li>4. 학교업무 정상화 대책 등에 관한 사항</li> <li>5. 일하는 방식 개선 등 교육행정 혁신 및 정부혁신에 관한 사항</li> <li>6. 교육지표·시책 수립</li> <li>7. 주요업무계획의수립·평가·조정</li> <li>8. 교육감 공약사항 관리</li> <li>9. 국정과제 추진 기획·조정</li> <li>10. 교육정책모니터링</li> <li>11. 제안제도 운영</li> <li>12. 인천미래교육위원회 운영</li> <li>13. 시의회·국회 주요업무 보고</li> <li>14. 시·도교육감 및 부교육감회의 업무</li> <li>15. 교육감·부교육감 지시사항 관리</li> <li>16. 시·도교육청 평가</li> <li>17. 교육지원청 평가</li> <li>18. 학교평가 관리</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정책기획과	19. 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20. 직무성과계약제 운영 21. 교육의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 22. 교육정책이론 및 방법 연구에 관한 사항 23. 현직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24. 지방의회와 관련한 사항(행정사무감사 제외) 25. 교육행정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법령·지침 등 발굴·정비 26. 조례·규칙·훈령(안)의 심사 및 공포·발령 27. 소송사무의 총괄 및 수행 28. 법제심의위원회 운영 29.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30. 교육소청심사위원회 운영 31. 고문변호사 운영 32. 교육규제완화위원회 운영 33. 법령 등 질의에 대한 회신의 총괄 34. 자치단체간 교육지원·연계 강화 협력 35. 정책국 업무 기획·조정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정책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민주시민교육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민주시민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li> <li>2. 미래교육 전반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혁신지원센터 운영</li> <li>4. 행복배움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국제교육 교류 업무에 관한 사항</li> <li>6. 교육국제화특구 업무</li> <li>7. 학교혁신을 위한 전문적학습공동체 운영에 관한 사항</li> <li>8.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의 운영 및 지도·감독</li> <li>9.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유치원·특수학교(급) 제외)</li> <li>10. 학생의 조기진급 및 조기졸업에 관한 사항</li> <li>11. 교재·교구 기준 관리</li> <li>12. 교과교실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고교학점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지도</li> <li>15. 정규교육과정 외 학습선택권 업무</li> <li>16. 자유학기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소수선택과목 개설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8. 교과중점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9. 공교육 정상화법 관련 업무</li> <li>20. 평가방법개선(서술형, 논술형, 수행평가) 추진</li> <li>21.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li> <li>22. 인천학술진흥재단 운영·지원</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민주시민교육과	23. 초·중·고 학사일정 및 학사선진화 운영 관리 24.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운영 지원 25. 인정도서 승인에 관한 사항 26. 교과서 선정·주문·공급 27. 다문화교육지원 28. 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29.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30. 나라·국토사랑에 관한 사항 31. 인천사랑교육 32. 독도교육 업무 33.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34. 강화 생태·평화·역사교육지구 운영 35.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 36. 교권 존중 프로젝트 37.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 38.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인권보호관 운영) 39.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개발·보급 40. 학교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41. 학생 사회참여 활동 운영 42. 청소년단체 업무에 관한 사항 43. 학생봉사활동 기본계획 수립 44. 학생봉사프로그램 개발·보급·지원 45. 그 밖에 민주시민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예산복지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예산복지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및 관리</li> <li>2. 공립학교 학교기본운영지원비 관리 지도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li> <li>3. 중·단기 지방교육재정운영계획 수립 및 지도·점검</li> <li>4. 지방교육재정 집행관리 계획 수립·시행</li> <li>5.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li> <li>6.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관한 사항</li> <li>7. 학생교육복지 정책을 위한 행·재정체제 강화 기본계획 수립·추진</li> <li>8. 학생교육복지 관련 대외협력 강화 및 민간참여 활성화 계획 수립·추진</li> <li>9.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li> <li>10. 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지원</li> <li>11. 방과후학교 지원(자유수강권, 보육료 지원,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농어촌방과후학교 운영)</li> <li>12. 누리과정지원비 편성 및 관리</li> <li>13. 교과용도서 무상지원(도서 선정업무 제외)</li> <li>14. 저소득층 학비(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15. 저소득층 자녀 교육비 지원(교육정보화, 중식비, 체험학습비, 졸업앨범비 등)</li> <li>16. 고등학교 무상교육 추진에 관한 사항</li> <li>17. 급식학교 운영 관리</li> <li>18. 학교급식 위생 및 안전 관리(유치원 포함)</li> <li>19. 학생의 영양관리 및 식생활 개선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li> <li>20. 학교급식관련 경비 지원</li> <li>21. 학교우유 급식 관리</li> <li>22. 지방자치단체 급식지원에 관한 사항(무상급식 포함)</li> <li>23. 학교급식시설 개선 및 확충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4. 학교급식 연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5. 유치원 급식지도 관리 및 급식비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6.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사항</li> <li>27. 그 밖에 예산복지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노사협력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노사협력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교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li> <li>2. 교원단체연합회와의 교섭에 관한 사항</li> <li>3.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 공무원노동조합과 관련한 사항</li> <li>4.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업무의 조정·총괄에 관한사항</li> <li>5.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정원 및 배치기준 수립</li> <li>6.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채용 및 전보 등 인사업무</li> <li>7.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인사위원회 및 인력관리협의회 운영</li> <li>8.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총액인건비 관리</li> <li>9.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교육훈련 및 복무관리</li> <li>10.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및 무기계약전환 운영</li> <li>11.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등에 관한 업무</li> <li>12.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장애인 고용 업무</li> <li>13. 노사협의회 운영</li> <li>14. 노동관련 법령 해석 및 교육, 상담, 노무관리 운영실태 개선 등에 관한 사항</li> <li>15. 그 밖에 노사협력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안전총괄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안전총괄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 및 학교안전에 대한 총괄기획 및 조정</li> <li>2. 안전관리 통합매뉴얼 마련 및 운영실태 점검</li> <li>3. 안전대책상황반 운영</li> <li>4. 학교안전공제회 법인 업무 지원 및 관리</li> <li>5. 안전한국훈련 및 안전점검의 날 운영</li> <li>6. 재난안전관리 세부집행 계획 수립</li> <li>7. 학교안전사고 예방 기본계획 수립</li> <li>8. 학교재난예방활동 계획 수립</li> <li>9. 재난 및 재해관리</li> <li>10.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지원</li> <li>11. 학생안전관리 업무 기획 및 총괄</li> <li>12. 학생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에 관한 사항</li> <li>13.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에 관한 사항</li> <li>14. 학생소풍, 수학여행 및 학생수련에 관한 사항</li> <li>15. 안전체험관 운영 등에 관한 사항</li> <li>16. 초등학생 안전한 등하굣길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미세먼지 예방에 관한 사항</li> <li>18. 배움터지킴이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9. CCTV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0. 보안관리 업무</li> <li>21. 비상대비업무(총무계획의 수립·종합)</li> <li>22. 직장예비군 및 민방위대 운영</li> <li>23. 사회복무요원 배정, 근무지 지정 및 복무 관리</li> <li>24. 그 밖에 안전총괄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 교 육 국

## [초등교육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초등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실수업개선계획 수립 및 자료개발 보급</li> <li>2. 기초학력 향상 지원</li> <li>3.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li> <li>4. 인성(효)교육 기본계획 수립</li> <li>5. 방과후 학교 운영·지도(기본계획 등 교육과정 관련 사항)</li> <li>6. 교과(교육)연구회 기본계획 수립</li> <li>7.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li> <li>8.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운영</li> <li>9. 초등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li> <li>10. 연구학교 기본계획 수립</li> <li>11. 각종 연구대회 운영 총괄·조정</li> <li>12. 자율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초등학습준비물지원 업무</li> <li>14. 초등교육실습협력학교 선정 및 운영 지원</li> <li>15. 인성교육중심수업 지원</li> <li>16. 공립 초등교원(특수학교·유치원 교원포함, 이하 같다)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li> <li>17. 공립 초등교원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li> <li>18. 초등 교육전문직원 인사관리</li> <li>19. 초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li> <li>20. 초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초등교육과	21. 교원 관련 각종위원회(인사, 명예퇴직 및 공적심사 등) 운영 22. 초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23. 초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24. 초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25. 초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26. 초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27. 초등 수석교사제 선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 28. 유아교육 기본계획 수립 29. 유치원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0. 유치원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31. 유치원 방과 후 과정 및 돌봄교실 운영 지원 32.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운영 지원 33. 특수교육운영계획 수립 34.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운영 35. 특수교육대상학생 진로·직업교육에 관한 사항 36. 특수교육대상학생 교수·학습 지원 37. 특수학교(급) 설립 기본계획 수립 38. 특수학교(급)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원 39.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총괄 40. 교육국 업무 기획·조정 관련 사항 41. 그 밖에 교육국 내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등교육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중등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실수업개선계획 및 자료개발 보급</li> <li>2. 원어민교사활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외국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사항</li> <li>4. 진로·진학교육에 관한 사항</li> <li>5. 대학입학전형 및 대학진학관련 업무</li> <li>6. 전국연합학력평가, 대입수능관련 업무</li> <li>7. 컨설팅장학 계획 수립·실시에 관한 사항</li> <li>8. 학생 자율동아리 지원</li> <li>9. 교과(교육)연구회 기본계획 수립</li> <li>10. 중등 현장교육 연구지도에 관한 사항</li> <li>11. 교육활동 유공학교 및 교원·학생 표창 등에 관한 사항</li> <li>12. 수업개선선도교사제 운영</li> <li>13. 문화예술교육 지원</li> <li>14. 인천교육연수원 운영 지원</li> <li>15. 사교육비 경감 대책 수립·추진</li> <li>16. 고교 재학생 병영 사무에 관한 사항</li> <li>17. 방송 및 미디어교육활용에 관한 사항</li> <li>18. 특성화중·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li> <li>19. 중등 수석교사제 선발·운영·평가에 관한 사항</li> <li>20. 방송통신중·고등학교 운영 지도에 관한 사항</li> <li>21. 자율고 및 기숙형 고교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li> <li>22. 예술계열 학교 설립 기본계획 수립</li> <li>23. 학생문화예술축제 발표회 지원</li> <li>24. 예술고교 및 예술교육중점학교 운영 지원</li> <li>25.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운영 지원</li> <li>26. 공립 중등교원의 인사, 연수, 징계 및 정원 관리</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중등교육과	27. 공립 중등교원의 수급계획 수립(교원인사제도의 탄력적 운영계획 포함) 28. 중등 교육전문직원 관리 29. 중등교원 명예퇴직 및 학교장·교사초빙제 실시에 관한 사항 30. 중등 퇴직교원 및 모범공무원 표창에 관한 사항 31. 교원 징계위원회 운영 32. 중등 사립학교 교원의 교육공무원 특별채용에 관한 사항 33. 강사, 기간제교사 등 계약제 교사 관리 34. 중등교원 임용후보자 연수에 관한 사항 35. 중등교원 연수, 연구실적 등의 학점화에 관한 사항 36. 중등교원 복무, 공무국외여행 심의에 관한 사항 37. 중등 교원능력개발평가 관리에 관한 사항 38. 교원성과상여금 업무에 관한 사항 39. 교육전문직원 선정경쟁시험 관리 40. 교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 관리 41. 사립교원의 인사관리 42. 학생 재입학 및 편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43. 학생 전입학 관리(특성화고등학교 제외) 44. 고등학교 입학전형 업무 45.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46. 일반고 교육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47. 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에 관한 사항 48. 교원자격 검정에 관한 사항 49. 교원자격증 재교부 50. 그 밖에 중등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평생교육체육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평생교육체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사항</li> <li>2. 학점은행제에 관한 사항</li> <li>3. 평생교육시설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li> <li>4. 제3호에 해당하는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li> <li>5. 학원의 설립·폐지 및 지도에 관한 사항</li> <li>6. 공공도서관의 설치·폐지 및 운영·지도</li> <li>7. 공익법인의 설립·폐지 및 운영·지도</li> <li>8. 평생학습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9. 평생학습도시에 관한 사항</li> <li>10. 문해교육에 관한 사항</li> <li>11. 체육관련 교육기관(학교포함)의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li> <li>12. 체육계열학교 체육교육과정 편성·운영 컨설팅 및 초·중·고등학교 체육교육과정 운영 컨설팅</li> <li>13.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li> <li>14. 체육특기자 심사</li> <li>15. 학생운동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6. 전국(소년,동계)체육대회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학교체육연구대회에 관한 사항</li> <li>18. 운동부 지도자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9. 학생건강증진 및 학교보건교육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li> <li>20.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유치원 포함)</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평생교육체육과	21.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 22.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관리 23. 학교 먹는 물 위생 관리(유치원 포함) 24. 학교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유치원 포함) 25. 학교보건실 운영 및 시설에 관한 사항 26. 학교보건 연구학교 운영 지원 27. 학교설립용지 및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축에 대한 교육환경 평가 승인 28. 독서·토론·논술교육에 관한 사항 29.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30.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에 관한 사항 31. 인문학 및 인문소양 교육 32. 청소년문화쉼터 및 사람책도서관 운영 지원 33. 그 밖에 평생교육체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창의인재교육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창의인재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특성화고(산업수요맞춤형고, 각종학교포함, 이하같다)의 교육과정 편성·운영 지도</li> <li>2. 특성화고의 컨설팅 장학지도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li> <li>3. 특성화고의 실험실습 기자재 활용지도</li> <li>4. 산학협동, 현장실습 및 취업지도</li> <li>5. 특성화고의 기술인력 양성계획 수립 및 운영·지도</li> <li>6. 각급 학교 경제교육에 관한 사항</li> <li>7. 특성화고의 실험실습시설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li> <li>8. 특수목적고(산업수요 맞춤형고, 과학고) 설립·폐지 기본계획수립 및 운영·지도</li> <li>9. 고등기술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li> <li>10. 근로청소년 교육을 위한 특별학급 및 산업체부설학교의 설립·폐지 기본계획 수립 및 장학협의 등 운영·지도</li> <li>11. 일반고 직업과정 위탁교육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2. 특성화고등학교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li> <li>13. 정보교육 추진계획 수립 및 운영</li> <li>14. 교육정보자료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15. 교육정보화 관련 교육과정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6. 교원 교육정보화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대회운영 포함)</li> <li>17. 소프트웨어 교육 및 디지털 교과서 등 정보교육 관련 미래교육에 관한 사항</li> <li>18. 교류협력 대상국 교육정보화 지원</li> </ol>

과·담당관	분장사무
창의인재교육과	19. 정보통신윤리교육에 관한 사항 20. 학생 지식정보처리 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21. ICT교수학습 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22. 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관한 사항 23.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운영·지원 24.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 25. 학교의 과학전용교실 확보 및 지원 26. 융합인재교육(STEAM) 활성화 지원 27. 과학고등학교 및 과학중점학교 운영 지원 28. 환경교육에 관한 사항 29. 체험중심 생태환경교육 지원 30. 영재교육에 관한 사항 31. 영재교육 관련 위원회 운영 32. 영재교육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33.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 34. 해양교육에 관한 사항 35.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 36. 그 밖에 창의인재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

**[학교생활교육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학교생활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생생활지도 관련 업무</li> <li>2. 학교폭력 예방 계획 및 교육에 관한 사항</li> <li>3. 학교폭력발생 사안조사 및 민원처리(성폭력 사안처리 포함)</li> <li>4. 학교 주관 교복 구매에 관한 사항</li> <li>5. Wee 프로젝트(학생상담활동 포함) 정책 관련 업무</li> <li>6. 대안학교 운영 및 지도·감독</li> <li>7. 학교 내 대안교실 운영 지원</li> <li>8. 학생징계조정위원회 업무</li> <li>9. 학생선도위원회(협의회) 업무</li> <li>10. 학생상담 자원봉사자회 지원 업무</li> <li>11.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교육업무</li> <li>12. 학업중단 예방업무</li> <li>13. 학업중단학생 학력인정</li> <li>14. 재입학생 적응교육</li> <li>15. 대안교육위탁기관 지정·운영</li> <li>16. 무등록 대안 교육 시설 단속</li> <li>17. 대안교육지원센터 운영</li> <li>18.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 학생 학습 지원</li> <li>19. 학생정신건강에 관한 사항</li> <li>20. 성 평등에 관한 사항</li> <li>21. 성별영향평가에 관한 사항</li> <li>22. 성교육에 관한 사항</li> <li>23. 성인식 개선에 관한 사항</li> <li>24. 그 밖에 학교생활교육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 행정국

## [총무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총무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관수</li> <li>2. 당직관리</li> <li>3. 청사 관리</li> <li>4. 관용차량 정수관리 및 본청배정차량 운영·관리</li> <li>5. 부설주차장 운영·관리</li> <li>6. 직장 내 공동보육시설 운영</li> <li>7. 교직원 맞춤형 복지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li> <li>8. 교직원수련원운영·지도</li> <li>9. 연금,대여장학금,국민건강보험,임대주택 등에 관한 사항</li> <li>10. 지방직 공무원 인사, 연수, 상훈 및 복무관리</li> <li>11. 공무원증 발급</li> <li>12. 회계직 공무원 임명·해임</li> <li>13. 각급기관 특수운영직군 운영 및 관리(청소 및 당직근로자 등)</li> <li>14. 인사위원회, 공적심사위원회 및 공무원외여행심사위원회 등 운영</li> <li>15.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16. 기록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7. 지방교육기능분류체계(BRM) 운영</li> <li>18. 정보공개제도 운영</li> <li>19.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li> <li>20. 인천교육사료보관소 운영</li> <li>21. 민원제도 개선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시행 지도</li> <li>22. 민원상담 및 제증명 등 민원처리</li> <li>23. 민원의 접수 및 관리</li> <li>24.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li> <li>25. 문서 접수·발송·배부</li> <li>26. 그 밖의 다른 국·담당관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학교설립과]**

과 · 담당관	분 장 사 무
학교설립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지방교육행정조직 관리</li> <li>2. 지방직 공무원 정원 관리</li> <li>3. 공무원 총액인건비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조직진단 및 직무분석에 관한사항</li> <li>5. 행정권한의 위임·위탁 및 위임전결에 관한 사항</li> <li>6. 사무분장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7. 교육행정 업무편람 발간</li> <li>8. 지식관리(시스템)에 관한 사항</li> <li>9. 지방교육행정기관 기능 재배분</li> <li>10. 지방이양·지역균형발전 및 분권에 관한 업무</li> <li>11.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초,중,고,특수) 학생배치계획 및 학급편제</li> <li>12. 의무취학 관리</li> <li>13. 학교군·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4. 개발지역 학생배치계획 및 학교설립 협의</li> <li>15. 개발사업지역의 학교용지 조성에 관한 사항</li> <li>16. 학교용지 선정 업무에 관한 사항</li> <li>17.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공립학교)에 관한 사항</li> <li>18. 신설학교 개교추진사항 점검 및 보고</li> <li>19. 교명심의위원회와 개교심의위원회 구성·운영</li> <li>20. 시립학교 설치 조례에 관한사항</li> <li>21. 유치원 설립·폐지와 변경인가에 관한 지도감독</li> <li>22.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사립유치원, 방송통신중·고등학교 및 고등기술학교·산업체부설학교 제외, 이하 같다)의 설립(또는 설치)·폐지(변경사항 포함)</li> <li>23.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이전·재배치 기획</li> <li>24. 사실상 학교형태로 운영되는 무인가 교육기관 단속</li> <li>25. 그 밖에 학교설립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교육재정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교육재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및 결산 관리</li> <li>2. 자금관리와 차입금 및 상환</li> <li>3. 세입세출외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관리</li> <li>4. 교육금고 지도감독</li> <li>5. 공립유치원 및 고등학교 입학금 및 수업료 책정</li> <li>6. 채권관리</li> <li>7. 세출예산의 집행</li> <li>8. 물품, 용역 계약 및 관리</li> <li>9. 물품관리 및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계획 수립·시행</li> <li>10. 통합급여 관리</li> <li>11. 공사계약 및 관리</li> <li>12. 계약심의위원회 운영</li> <li>13. 신기술, 친환경 장애인 중소기업(여성기업) 생산품 구매관리</li> <li>14.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및 관리</li> <li>15. 국·공유재산의 취득, 처분 및 교환 등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16. 도시·군 관리계획 시설 결정(학교제외)에 관한 사항</li> <li>17. 학교용지 등의 취득 및 손실 보상(지장물 보상 등)에 관한 사항</li> <li>18. 공유재산 실태조사</li> <li>19. 공유재산심의회 운영</li> <li>20. 사립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의 설립·해산 및 예·결산에 관한 사항</li> <li>21. 학교법인에 관한 사항</li> <li>22. 사립학교의 학교회계 관리지도(사립유치원 포함)</li> <li>23. 사립학교의 재정결합보조금 등 각종 재정보조</li> <li>24.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li> <li>25.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관한 사항</li> <li>26. 그 밖에 교육재정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정보지원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정보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교육정보화 기본·시행 계획 수립 및 조정</li> <li>2. 교육통계 및 교육정보통계시스템(EDS) 운영</li> <li>3. 인천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구축·운영</li> <li>4. 나이스시스템 구축·운영</li> <li>5. 지방교육행·재정통합시스템 구축·운영</li> <li>6.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운영</li> <li>7. 교육부 전자서명인증서 발급·관리</li> <li>8. 정보기술아키텍처(범정부EA) 구축에 관한 사항</li> <li>9. 공공데이터 개방 및 활용 지원</li> <li>10. 지방공무원 정보화 역량 강화</li> <li>11. 학교홈페이지 통합 구축·운영</li> <li>12. 교육정보화 기기보급에 관한 사항</li> <li>13. 업무용 소프트웨어 보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li> <li>14. 학내전산망(유무선) 구축 지원</li> <li>15. 정보시스템 통합재해복구시스템 구축·운영</li> <li>16. 인천교육종합정보센터 구축·운영</li> <li>17. 인천교육융합통신망 구축·운영</li> <li>18.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대책 수립·시행</li> <li>19. 개인정보보호</li> <li>20. 정보보안</li> <li>21. 정보보호시스템 구축·운영</li> <li>22. 그 밖에 정보지원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교육시설과]**

과·담당관	분장사무
교육시설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기획업무(표준 설계 포함)</li> <li>2. 각종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li> <li>3. 교육시설물 안전점검</li> <li>4. 교육환경개선사업계획 수립·조정·지도</li> <li>5. 위험시설물 판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학교시설사업의 민간자본투자 유치에 관한 사항</li> <li>7. 민간투자사업 기획·고시·협약·시공 및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8. 분청 및 사업소에서 집행하는 각종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li> <li>나. 지도</li> <li>다. 하자검사 및 보수</li> </ol> </li> <li>9. 학교 시설 지원 총괄</li> <li>10.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 포함)의 신설 및 전면개축·이전 재배치 시설공사에 관한 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시행계획 협의 및 승인</li> <li>나. 건축 승인 및 협의</li> <li>다. 지도 감독 및 검사</li> </ol> </li> <li>11.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li> <li>12. 시설복합화사업 추진</li> <li>13. 그 밖에 교육시설과 업무와 관련한 사항</li> </ol>

## 2. 직속기관

## [인천광역시교육과학연구원]

부서명	분장사무
교육정보자료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연구원 업무 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li> <li>2. 교육정보 자료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li> <li>3. 전산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교육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교육망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교수학습지원센터 운영</li> <li>7. 사이버가정학습 인천 e학습터 운영</li> <li>8. 소프트웨어교육지원센터 운영</li> <li>9. 영상제작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문헌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1. 지역 교과용도서 편찬</li> <li>12. 초등교과보완교재 개발에 관한 사항</li> <li>13. 연구·시범학교 운영지도에 관한 사항</li> <li>14. 그 밖의 교육정보 자료 제작에 관한 사항</li> </ol>
과학교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과학기술정보 제공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2. 과학교육 조사연구 및 분석에 관한 사항</li> <li>3. 과학실험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과학기교재 개발 및 선정에 관한 사항</li> <li>5. 과학교육지도 및 평가에 관한 사항</li> <li>6. 과학탐구교실 및 과학동아리 지도에 관한 사항</li> <li>7. 각종 과학교육 관련 행사에 관한 사항</li> <li>8. 인천학생과학관 운영·관리 및 전시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9. 과학관련 교원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10. 그 밖의 과학교육에 관한 사항</li> </ol>

부서명	분장사무
총무부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 4. 예산·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5.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청사 및 차량관리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인천광역시교육연수원]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평가부	1. 연수기획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초등교원 및 교수요원 연수(수요조사와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 3. 혁신교육 연수에 관한 사항 4. 연수원 발전계획 수립·추진에 관한 사항 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
연수운영부	1. 중등교원 및 보건·영양교사 연수(수요조사와 선발 포함)에 관한 사항 2. 제1호 및 제3항제2호와 제3항제3호 이외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원격교육 연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4. 전산실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세계시민교육부	1. 교육과정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원어민교사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3.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을 위한 정보수집에 관한 사항 4. 소관 특별실 운영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관리에 관한 사항 5. 학생 세계시민교육 및 외국어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사항 6. 그 밖의 세계시민교육연수 및 외국어연수에 관한 사항
행정연수부	1. 지방공무원 연수 및 교육연수생 선발(기본교육, 위탁교육, 타 교육훈련기관 교육 제외)에 관한 사항 2. 사립학교 직원의 연수에 관한 사항 3. 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 4. 인천광역시교육감 소속 근로자 연수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행정 연수에 관한 사항
총무부	1. 관인 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식당 및 기숙사 등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 5. 의무실 운영 및 원내 위생에 관한 사항 6. 특별실 운영 관리 및 각종 교육기자재 활용 관리에 관한 사항

## [인천광역시공공도서관]

부서명	분장사무
독서문화과	1. 도서관 자료의 열람·대출 2. 순회문고 운영 3. 도서관주간, 독서의 달 행사 등 각종 문화활동에 관한 사항 4. 장서관리·보존·통계에 관한 사항 5. 도서관운영위원회에 관한 업무 6. 도서관 자료 및 정보의 상호교환 7.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
정보자료과	1. 도서관 자료의 선정 및 수집 2. 도서관 자료의 정리분류 및 목록 작성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발간하는 자료의 수집 4. 도서관 자료의 조사 연구 5. 학교도서관 운영 지원·협력에 관한 사항 6. 도서관 전산화 추진에 관한 사항 7. 디지털정보 및 학술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에 관한 사항 9. 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운영과	1. 평생교육운영계획 수립 추진 2.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 3. 평생학습 정보수집 4. 지식정보취약계층의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5. 각급학교 평생교육 지원
관리과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물품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5. 청사관리에 관한 사항 6.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7.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 단, 인천광역시부평·주안·화도진·서구·계양·연수도서관의 독서문화과장은 평생교육 운영과 업무를 포함하여 분장한다.

**[인천광역시학생교육원]**

부서명	분장사무
교학과	1. 기본운영계획수립 및 조정에 관한 사항 2. 교육과정·교육자료 개발에 관한 사항 3. 교육생 관리·지도에 관한 사항
관리과	1. 관인관수 및 일반서무에 관한 사항 2. 인사·복무 및 보안에 관한 사항 3.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4. 학생교육원 시설 및 차량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다른 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해양환경체험 학습장	1. 해양 환경 및 생태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서사체험학습장	1. 통일 평화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홍왕체험학습장	1. 역사 문화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국화리학생 야영장	1. 숲 생태 체험활동 2. 야영 및 공동체활동

**[인천광역시학생교육문화회관]**

부서명	분장사무
운영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운영계획 수립 및 홍보</li> <li>2. 연극·영화·음악·미술활동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3. 심신수련을 위한 각종 체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4. 여가 선용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li> <li>5. 학교축제 문화 지원</li> <li>6. 학생클럽활동 지원 및 문화교실 운영</li> <li>7. 청소년 예능·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li> <li>8. 청소년 상담</li> <li>9. 예술꿈학교 및 학생자치문화예술동아리 운영</li> <li>10. 그 밖에 학생 및 지역사회 교육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li> </ol>
총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관수 및 일반사무</li> <li>2. 인사·복무 및 보안</li> <li>3. 예·결산 및 회계</li> <li>4. 청사 및 차량운영 관리</li> <li>5.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물품 및 재산관리</li> <li>7. 도서실 운영</li> <li>8. 정보화 관련 업무</li> <li>9.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 [인천광역시평생학습관]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정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계획 수립 및 평가</li> <li>2. 평생교육기관 상호간 연계 체제 구축</li> <li>3. 대외협력 업무 및 홍보</li> <li>4. 어린이 도서관 및 디지털 자료실 운영</li> <li>5. 사이버학습관 운영 및 전산 시스템 관리</li> <li>6. 학습자료 수집 및 정리</li> <li>7. 독서 프로그램 운영</li> <li>8. 문화예술공연 및 전시회 기획·운영</li> <li>9.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li> </ol>
평생교육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평생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li> <li>2. 학부모교육센터 운영</li> <li>3. 교직원 교육 프로그램 운영</li> <li>4. 평생학습 계좌제 운영</li> <li>5. 학습동아리 운영</li> <li>6. 평생교육 담당자 연수</li> <li>7. 평생교육 상담 및 취업 지원</li> <li>8. 학점은행제</li> </ol>
총무부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관수 및 보안관리</li> <li>2. 인사·복무관리</li> <li>3. 급여, 연금 및 국민건강보험 등 직원후생 관리</li> <li>4. 예·결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li> <li>5. 청사 및 차량 운영관리</li> <li>6. 기록물관리</li> <li>7. 물품, 재산 및 시설관리</li> <li>8. 그 밖의 다른 부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부서명	분장사무
기획연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인천광역시유아교육진흥원 기본운영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li> <li>2. 유아교육 관련 연구 수행 및 교원 연구 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유치원 교원 및 학부모 연수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유치원 평가에 관한 사항</li> <li>5. 각종 홍보에 관한 사항</li> <li>6. 그 밖에 기획연구 및 다른 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li> </ol>
운영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유아체험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li> <li>2. 유아교육관련 프로그램과 교재·교구 자료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li> <li>3. 유아교육 교육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유아교육 정보자료실 운영에 관한 사항</li> <li>5. 홈페이지 운영에 관한 사항</li> <li>6. 자원봉사자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그 밖의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li> </ol>
관리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 예·결산 및 회계 관리에 관한 사항</li> <li>3. 물품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인사 및 복무에 관한 사항</li> <li>5. 청사 및 차량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li> <li>6. 기록물 관리에 관한 사항</li> <li>7. 연금 및 의료보험 등 직원 복지에 관한 사항</li> <li>8. 그 밖의 관리에 관한 사항</li> </ol>

## 3. 교육지원청

## [교육지원국]

부서명	분장사무
초등교육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교조직문화 혁신에 관한 사항</li> <li>2. 혁신학교 운영에 관한 사항</li> <li>3. 교육혁신지구 운영에 관한 사항</li> <li>4.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 지원</li> <li>5. 특수교육에 관한 사항</li> <li>6. 인성교육에 관한 사항</li> <li>7. 취학전 교육</li> <li>8. 초등 독서·토론·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li> <li>9. 공사립 유치원 및 초등학교 교원의 인사,연수,복무,상훈 및 국외 여행에 관한 사항</li> <li>10.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원징계의결 요구 신청</li> <li>11. 유치원, 초등학교 교원의 자격검정 및 제증명 발급</li> <li>12. 초등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li> <li>13. 초등학교 및 유치원(과학포함) 교구설비 확보계획 수립 및 조정</li> <li>14. 계기교육(통일,경제,에너지)에 관한 사항</li> <li>15. 초등학교,유치원 교육방송 활용 및 교육기자재 활용 지원</li> <li>16.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과연구회 운영</li> <li>17. 초등학교 및 유치원 컨설팅장학 및 연구·실험·연구학교(유치원) 운영 지도</li> <li>18. 초등학교 및 유치원 방과후학교 운영(교육과정 포함) 및 사교육비 경감 관련 업무</li> <li>19. 청소년 단체활동 권장 및 지원</li> <li>20. 유치원 재정지원 및 관리에 관한 사항</li> <li>21. 그 밖의 유치원 관리 운영 지원</li> <li>22. 초등학교 및 유치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li> <li>23.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사항</li> </ol>

부서명	분 장 사 무
초등교육과	24. 교권 존중 프로젝트 25. 학생·교직원 인권 보호 업무 26. 마을교육공동체 지원에 관한 사항 27. 학부모지원, 교육 및 상담 프로그램 운영 28. 지역사회 협력 29. 학부모회 운영 30.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31. 초등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32. 그 밖에 중등교육과 주관 업무의 유·초등학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33. 그 밖에 교육지원국내 다른과의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중등교육과	1. 중학교 교육과정 운영 지원 2. 중학교 컨설팅 장학 및 연구·실험·시범학교 운영 지원 3. 중학교 무시험 입학배정 4. 입학, 전·편입학 관리 5. 중학교 교수학습지원 자료의 개발·보급 6. 재입학생 적응 교육에 관한 사항 7. 중학교 학업성적관리 및 평가 관리 8. 중학교 기초학력 보장에 관한 사항 9. 수준별 수업 및 교과교실제 운영 지원 10. 중학교 교육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11. 공·사립중학교 교원의 인사·연수·복무·상훈 및 국외여행 12. 중학교 교사 징계에 관한 사항 13. 학생진로·진학 관련업무 14. 중학교 교과연구회 및 교과연구활동 지원 15. 생활교육 관련 업무 16. 학생봉사활동에 관한 사항 17. 학생 표창에 관한 사항 18. 장학생 선발 및 장학금 관리

부서명	분장사무
중등교육과	19.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사항 20. 부적응 학생 지원 21. Wee 센터 운영 22. 학생상담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3. 학생안전통합시스템 운영 지원 24. 학교폭력, 성폭력 예방에 관한 사항(성교육 포함) 25. 현장교육 및 학생수련활동 26. 과학교육관 운영 및 과학교육행사 지원 27. ICT 교육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28.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에 관한 사항(영재교육원 운영 포함) 29. 지속가능발전교육에 관한 사항 30. 교육행정정보화 및 전산관련 업무 31. 개인정보 및 정보보안 업무 32. 교육행정정보시스템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33. 원어민 보조교사 관리 34. 체육교육과정의 운영 35. 체력검사, 체육행사에 관한 사항 36. 체육특기자 심사 37. 운동부 지도자 관리 38. 중학교 방과후학교 운영 및 사교육경감 관련 업무 39. 중학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지원 40. 노동인권교육 및 보호에 관한 사항 41. 학교 및 학생자치에 관한 사항 42. 학생 사회참여 활동 운영 43.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43. 성인식 개선 및 성평등 교육에 관한 사항 44. 탈북학생 교육지원 업무 45. 다문화교육지원 46. 중등 독서·토론·논술교육 및 학교도서관 지원에 관한 사항 47. 중등 역사 및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48. 그 밖에 초등교육과 주관 업무의 중학교 업무 지원에 관한 사항 49. 그 밖에 중등교육에 관한 사항

부서명	분장사무
평생교육건강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학원의 설립·등록과 그 변경 및 폐원(독서실 포함)에 관한 사항</li> <li>2. 과외교습소의 신고 수리와 그 변경 및 폐지</li> <li>3. 평생교육시설의 설치·폐지 및 지도·감독</li> <li>4. 학원 및 과외교습소의 지도·감독(독서실 포함)</li> <li>5. 평생교육시설 무등록 교육기관의 단속</li> <li>6. 학교법인이 아닌 공익법인의 지도·감독</li> <li>7. 개인과외교습자의 신고 수리 및 변경 및 폐지</li> <li>8.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li> <li>9. 학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li> <li>10. 교육환경보호구역 관리</li> <li>11. 흡연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li> <li>12. 학생 건강검사 및 건강에 관한 사항</li> <li>13. 보건실 환경개선 지원</li> <li>14. 학생(유치원생 포함) 건강증진 및 감염병 예방 관리</li> <li>15. 학교(유치원 포함) 먹는 물 위생 관리</li> <li>16. 학교(유치원 포함) 교사 내 공기 질 유지 관리</li> <li>17. 그 밖에 보건위생에 관한 사항</li> <li>18. 교육환경평가 심의 및 이행사항 확인</li> <li>19. 학생 정서행동특성 검사 및 관리</li> <li>20. 교직원 응급처치교육</li> <li>21. 어린이 활동공간 지도 관리</li> <li>22. 학교(유치원 포함) 공기정화장치 관리</li> <li>23. 식생활 안전관리</li> <li>24. 유치원·학교 급식 및 위생 안전관리</li> <li>25. 영양교육 및 식생활 개선</li> </ol>

## [행정지원국]

부서명	분장사무
학교운영지원과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요업무계획의 수립·평가</li> <li>2. 관인관수 및 보안 관리</li> <li>3. 기록물관리에 관한 사항</li> <li>4. 민원에 관한 사항</li> <li>5. 교육정책 홍보 및 공보지원에 관한 사항</li> <li>6.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관한 사항</li> <li>7. 지방공무원의 인사, 징계, 상훈 및 복무관리</li> <li>8. 지방공무원의 국외여행</li> <li>9. 회계직 공무원의 임명·해임</li> <li>10. 비상대비업무 및 민방위 훈련</li> <li>11. 직장예비군·민방위대운영 및 사회복지요원 관리</li> <li>12. 청사 및 차량관리</li> <li>13. 행정권한의 위임전결, 보고통제, 간행물 발간 조정</li> <li>14. 행정정보공개제도 관련 사항</li> <li>15. 공직기강(비위,진정,청원 등 제외)확립 및 추진</li> <li>16. 상급기관 및 감사원 등 다른 기관에 의한 감사의 수감 준비 및 결과 처리</li> <li>17. 국정감사, 국회요구자료, 지방의회 관련 사항</li> <li>18. 교육부조리(부패방지,공무원행동강령 등)근절대책 수립 및 지도관리</li> <li>19. 감사계획의 수립·실시 및 결과 처리</li> <li>20. 징계의결 요구 신청</li> <li>21. 교육행정혁신, 일하는 방식 개선 등 혁신 추진</li> <li>22. 교육통계의 작성 및 분석</li> <li>23. 제안제도 운영</li> <li>24. 지방교육 행·재정통합시스템 관리</li> <li>25. 성과관리·지식관리시스템 운영</li> <li>26. 업무관리시스템 운영</li> <li>27. 교육비특별회계의 예산관리에 관한 사항</li> <li>28. 학교회계 예·결산에 관한 사항</li> <li>29. 사립 각급 학교의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사립유치원 포함)</li> <li>30. 사립 중학교 재정 보조</li> </ol>

부서명	분장사무
학교운영지원과	31. 학교발전기금에 관한 사항 32.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총괄 33. 의무취학과 학교군 및 학구의 운영 34. 사립유치원의 설립·폐지에 관한 사항 35. 중학교 이하 각급학교(유치원포함)를 유지 경영하는 법인에 대한 지도감독 36. 교육감 소속 근로자 관리에 관한 사항 37. 유치원 및 초·중등학교 정보공시제 운영 38. 그 밖에 청내 다른국, 다른과 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
복지재정과	1. 세출예산 집행 2. 사용료 및 수수료 기타 세입 징수 3. 학비감면 및 대여장학금 관리 4. 물품관리와 재물조사 및 물품수급 5. 세입·세출외 현금 및 유가증권의 출납·보관 6. 세출예산 집행의 원인 행위 7. 공사, 제조, 용품 구입 수선의 검사 및 입회 8. 급여 관리 9. 물자절약, 에너지절약 10. 교과용 도서 수급 11.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포함)의 국·공유재산 관리지원 업무 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운영 나. 재난 및 재해 관리 다. 공유재산 실태 조사 라. 일반재산(폐교재산 등)의 유지 관리 12. 공유재산심의회 지원 업무 13. 학교 용지의 시설 결정 14. 교육지원청 재산의 취득·처분 및 교환(학교제외) 15. 교직원복지에 관한 사항 가. 공무원연금 관련 업무 나. 공무원 건강보험 관련 업무 다. 공무원 맞춤형복지 관련 업무 라. 직장어린이집 관련 업무

부서명	분장사무
복지재정과	16. 학생복지에 관한 사항 가. 누리과정 지원 나. 저소득층 중식비 지원 다. 방과후자유수강권 지원 라. 저소득층 정보화 지원 마. 장애유아 무상교육비 바. 초등학교돌봄교실 운영 사. 교복비 및 저소득층 앨범비 지원 17. 학교안전관리공제회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1. 시설계획의 수립 및 조정 2.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유치원 포함)의 시설 증축 및 보수에 관한 사항 가. 시행계획 및 승인(설계포함) 나. 건축 승인 및 협의 다. 지도·감독 및 검사 라. 하자 검사 및 보수 3. 학교시설물의 안전진단 및 관리 4. 지장물(전기, 통신 등 공공시설물)의 이설에 관한 사항 5. 학교시설 지원에 관한 사항 6. 책결상 및 사물함 지원·관리 7. 민간투자사업 정부지급금·성과평가·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8. 유치원 어린이놀이시설 관리 및 점검

**[강화교육지원청]**

부서명	분장사무
교육지원과	타 지원청 교육지원국 소관 사항
행정지원과	타 지원청 행정지원국 소관 사항
미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2. Wee센터 운영 3. 학부모지원센터 운영(학부모지원 및 교육 포함) 4. 학원 및 평생교육 관리

**[소속기관]**

부서명	분장사무
과학교육관	1. 과학 관련 각종 교사연수 지원 2. 학생과학탐구능력 신장 활동 지원 3. 학교과학교육 지원에 관한 사항 4. 과학관 안전 및 시설 관리
특수교육지원센터	1. 특수교육대상자의 진단·평가 지원 2. 교수·학습 전략 및 방법 지원 3.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제공 4. 장애인 및 장애학생 가족 상담 지원 5. 통합교육 및 특기적성교육 지원 6. 치료교육 및 직업전환교육 지원 7. 특수교육에 관한 정보 수집 및 자료 제공 8. 그 밖에 특수교육 정책 지원

## 관계법령 발취

관계법령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제2항
-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제1항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제2항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 제3조(담당관·과·한시기구의 설치 등)
-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 관계법령 발췌

### 【지방교육행정기관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제9조(보조·보좌기관의 직급기준 등)

② 제1항에 따라 본청에 두는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과·담당관 등의 설치) 본청에 두는 과·담당관의 설치와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교육지원청 기구의 설치기준 등) ① 교육지원청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사무분장은 해당 시·도의 교육규칙으로 정하되, 국·과(담당관)·센터의 설치기준 및 국장·과장(담당관)·센터장의 직급기준은 별표 3에 따른다.

#### 제12조(직속기관 등의 하부조직 설치)

②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 기관의 장의 직급, 하부조직 및 그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 또는 조례의 위임에 따른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인천광역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제2조(국장·담당관·과장 등 보조·보좌기관의 직급 등) 본청과 교육지원청에 두는 국장·담당관 및 과장의 직급과 직속기관과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장 및 보조기관의 직급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3조(담당관·과·한시기구의 설치 등) 본청의 담당관·과·한시기구 및 직속기관의 부·과 등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교육지원청 하부조직의 설치 등) 교육지원청 하부조직 설치와 사무분장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의 설치와 그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기 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9-1호

공 고 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중산초등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조각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사용인

인천중산초등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분임재무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공고 제2019-2호

# 공 고 문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등록), 제39조(공고) 및 인천광역시교육청 공인조례 제8조(공고)의 규정에 의거 우리교육지원청 관내 2019년 3월 1일 개교예정인 인천중산중학교의 회계관계공무원직인을 조각하여 2019년 1월 7일부터 사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년 1월 7일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교육장

## ○ 사용인

인천중산중학교분임징수관인



인천중산중학교분임재무관인



인천중산중학교물품관리관인



인천중산중학교수입금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세입세출외현금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회계출납원인



인천중산중학교물품출납원인



인천중산초등학교공고 제2019-1호

### 관인등록 공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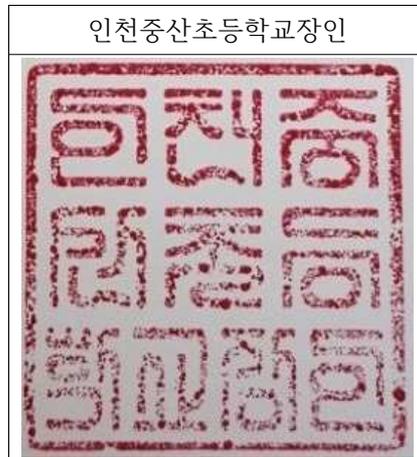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중산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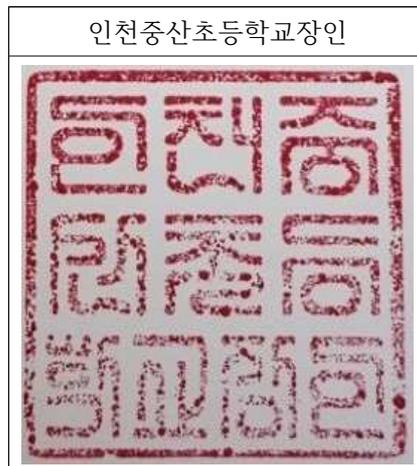
인천중산초등학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19. 1. 7

[관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공고 제2019-2호

### 관인등록 공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6조 및 인천광역시교육청공인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천중산초등학교의 관인 및 전자이미지관인을 등록하고,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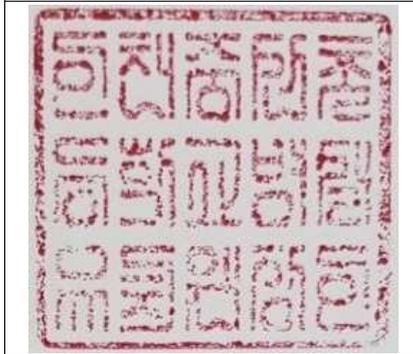
2019. 1. 7.

인천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

최초 사용 개시일 : 2019. 1. 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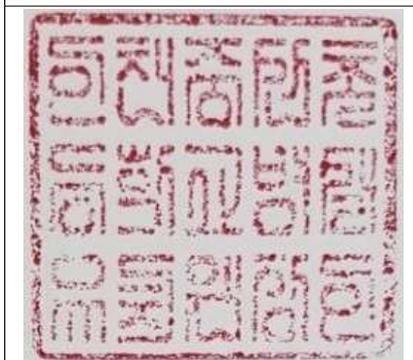
[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전자이미지관인]

인천중산초등학교병설유치원장인



인천교통공사 공고 제2019-003호



## 『역무도급 수급인 모집』 공고

인천교통공사에서는 역무도급역을 운영할 참신하고 역량있는 수급인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19. 1. 9

인천교통공사 사장

### 1. 모집내용

대상역	모집대상	도급방법	모집인원	계약기간	비고
임학역 경인교대입구역 지식정보단지역	도급역 운영 책임자 (수급인)	수급인이 직원을 고용하여 역무수행	3명	2019. 3. 1 ~ 2021. 2. 28 (2년)	1인1역

※ 운영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1년 연장 가능하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계약이 종료해지될 수 있음

### 2. 선정방법

- 가. 제1차 : 서류심사
- 나. 제2차 : 1차 서류심사 통과자에 한해 면접심사

### 3. 도급업무

- 가. 도급역 운영인력 배치
- 나. 도시철도 이용고객 안내
- 다. 역 시설물 점검 및 관리
- 라. 이례상황 발생시 긴급조치 및 이용고객 안전 확보

- 마. 수입금 관리, 역무자동화 설비 일상점검 및 응급조치
- 바. 역사 안전 및 청소 관리
- 사. 그 밖에 역 운영과 관련된 일반적인 사항

#### 4. 지원자격

- 가. 연 령 : 1960. 1. 1. 이후 출생자
- 나. 거주지 : 2019. 1. 1.부터 면접심사 최종일까지 계속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같은 기간 중 주민등록상 말소 사실이 없어야 함)가 인천광역시로 되어 있는 자
- 다.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결격사유) 각 호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인천교통공사 인사규정 제11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이나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7.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와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0. 채용비위가 적발되어 합격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 면직자 등의 취업제한을 받는 사람
12. 「형법」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라. 도시철도(수도권 전철 포함) 10년 이상 유경험자

- 마. 재무 및 신용상태가 건전한 자
- 바. 업무수행에 있어 건강상 문제가 없는 자
- 사. 공적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회적 신뢰성이 있는 자

## 5. 서류제출

### 가. 제출서류

- 1) 역무도급 운영지원서 1부(소정양식 : 붙임 1)
- 2) 역무도급 운영 종합계획서 1부(소정양식 : 붙임 2)
- 3) 자기소개서 1부(소정양식 : 붙임 3)
- 4) 경력 또는 재직증명서 1부(해당 세부경력이 표시되어야 함)
- 5) 주민등록등본 1부
- 6) 채용신체검사서 1부(공무원 채용신체검사규정에 따른 채용신체검사서)
- 7) 제출용 신용보고서 1부
- 8) 역무도급계약 중도해지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4)
- 9) 개인정보 수집 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1부(붙임 5)

※ 채용신체검사서 및 제출용 신용보고서 제출은 최종 선정자에 한함

나. 제출처 :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인천광역시 남동구 경인로 674)

※ 접수기간내 제출처에 직접 제출(우편접수 불가)

## 6. 심사일정

서류접수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면접심사	수급계약 대상자 발표
2019.1.21.(월)~1.25(금) (09:00~18:00)	2019.1.31.(목)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시 알림	2019.2.13.(수)

※ 1)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2) 서류심사 통과 및 최종선정자 발표는 공사 홈페이지(www.ictr.or.kr)에 공고합니다.

3) 소정 양식은 공사 홈페이지에서 내려받아 사용하기 바라며, 면접심사 일시 및 장소는 서류심사 통과자 발표 시 알립니다.

## 7. 유의사항

- 가.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된 서류에 허위가 있을 경우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 최종 선정된 후라도 제출서류가 허위이거나 응시자격에 결격사유가 확인된 경우와 신체검사 결과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규정 판정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선정을 무효로 합니다.
- 나. 수급인으로 선정된 자는 안정적인 역무운영을 위해 기존 도급역 직원이 계속 근로를 희망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고용이 보장되도록 하여야하며, 직원 보수지급은 공사가 설계한 기준에 부합되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 다. 서류 및 면접심사 결과 공사가 원하는 수준의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발 예정인원에도 불구하고 합격자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 라. 최종 수급인으로 선정된 경우 계약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산정된 연간 도급수수료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현금을 납부하거나 이행보증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마. 최종 수급인으로 선정된 자로서 현직에 재직 중인 자는 도급계약체결 즉시 현직에서 사퇴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이후에라도 새로운 직업을 가져서는 아니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계약을 무효로 하거나 해지할 수 있습니다.
- 바.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보험료(국민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사.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정부 및 공사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정책에 따라 계약은 중도해지 될 수 있습니다.
- 아.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교통공사 운수기획팀(☎032-451-214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